

제 2 편

산 재 보 험 통 계

통계 이용자를 위한 일러두기

1. 본 편에 수록된 통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으로 생성되는 행정통계 자료를 집계한 것입니다.
2. 본 편에서 사용한 업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3. 통계표 중 전호의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호에서 정정된 것이니 최근호의 수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4. 통계표 중 보험급여 수급자수는 세목별로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적 용

제 1-1 표 연 도 별

연도	적용기준	적용 사업장수	근로자수 (천명)	적용확대업종및규모
'64	500인이상	64	82	· 광업, 제조업
'65	200 "	289	161	· 전기가공업, 운수보관업 신설
'66	150 "	594	222	-
'67	100 "	1,142	336	· 유기사업 : 연간 연인원 25,000명 이상
'69	50 "	3,696	683	· 건설업, 수도·위생시설 서비스업, 상업 서비스업(정부 및 사회서비스업 제외), 통신업 추가 · 유기사업 : 연간 연인원 13,000인 이상 · 건설업 :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72	30 "	9,375	1,078	· 유기사업 : 연간 연인원 8,000명 이상
'73	16 "	13,924	1,320	· 유기사업 : 연간 연인원 4,200명 이상 · 건설업 : 총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76	16 " (5)	28,445	2,270	· 광업, 제조업중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5인 이상)
'82	10 " (5)	54,159	3,465	· 유기사업 : 연간 연인원 2,700인 이상 · 건설업 :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83	10 " (5)	60,213	3,941	· 농수산물 위탁판매 및 중개업 신설 · 벌목업 신설(벌목재적량 1,700㎡ 이상)
'86	10 " (5)	70,865	4,749	· 베니어판 제조업 · 제재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시멘트 원료채굴 및 제조업 · 비금속광물 및 석제품 제조업 · 금속재료품 제조업 ·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도금업 · 수상운수업 · 화물자동차 운수업 · 화물취급업 · 항만하역업 · 중기관리사업 (14개 업종 : '86.09.01.부터 5인 이상 적용확대)
'87	10 " (5)	83,536	5,357	· 목재품 제조업 · 기계기구 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식료품 제조업 · 인쇄 또는 제본업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도자기 제조업 · 유리 제조업 · 시멘트 제조업 · 금속제련업 · 계량기·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제조업 · 시계 등의 제조업 · 목재악기 제조업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 기타 제조업 · 자동차야객 운송업 · 소형자동차 운수업 · 항공운수업 · 창고업 (20개 업종 : '87.01.01.부터 5인 이상 적용확대)

적 용 확 대 현 황

연도	적용기준	적 용 사업장수	근로자수 (천명)	적 용 확 대 업 종 및 규 모
'88	5인 이상	101,445	5,744	· 벌목업 : 벌목재적량 800㎥ 이상 · 유기사업 : 연간 연인원 1,350인 이상 ·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 경인쇄업 · 전자제품 제조업 · 수제품 제조업 · 신문업 또는 출판업 · 정비 등 제조업 · 전기업 · 가스업 · 수도업 · 철도궤도 및 석도 운수업 · 통신업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운수관련서비스업 ·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기타의 각종사업 (16개 업종 : '88.01.01.부터 5인 이상 적용확대)
'91	5 " (10)	146,284	7,923	·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도·소매업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1.07.01.부터 10인 이상 적용확대)
'92	5 "	154,820	7,059	· ('92.07.01.부터 5인 이상 적용확대)
'93	"	163,152	6,943	"
'94	"	172,871	7,273	"
'95	"	186,021	7,894	"
'96	"	210,226	8,157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96.01.01.부터 5인 이상 적용확대)
'97	"	227,564	8,237	"
'98	"	215,539	7,582	· 금융·보험업 ('98.07.01.부터 5인 이상 적용확대)
'99	"	249,405	7,441	"
'00	1 " (5)	706,231	9,486	· ('00.07.01.부터 1인 이상 적용확대)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은 5인 이상] · 건 설 업 :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00.07.01.부터 적용확대)
'01	"	909,461	10,58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02	"	1,002,263	10,571	"
'03	"	1,006,549	10,599	"
'04	"	1,039,208	10,473	"
'05	"	1,175,606	12,070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이하의 건축 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
'06	"	1,296,696	11,689	"

제 1-2 표 '06년도

사업종류		구 분	'05		'06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합		계	1,175,606	12,069,599	1,292,696	11,688,797
금 융 및 보험업	소	계	24,703	378,574	26,776	399,638
	금 융 및 보 험 업		24,703	378,574	26,776	399,638
광 업	소	계	1,299	16,014	1,267	15,656
	석 탄 광 업		19	5,344	20	5,237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43	233	45	306
	채 석 업		126	832	108	740
	석 회 석 광 업		107	1,519	103	1,480
	제 염 업		27	252	24	146
	기 타 광 업		915	7,315	904	7,186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62	519	63	561
제 조 업	소	계	222,779	3,053,545	236,429	3,032,667
	식 료 품 제 조 업		10,877	185,244	12,183	187,006
	담 배 제 조 업		18	3,310	17	3,177
	섬유또는석유제품제조업(갑)		13,311	122,574	12,794	113,001
	섬유또는석유제품제조업(을)		7,516	119,699	7,430	107,577
	제 재 및 베 니 어 판 제 조 업		1,099	8,649	1,033	7,999
	목 재 품 제 조 업		7,183	39,447	7,336	38,669

업 종 별 적 용 현 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사업종류		'05		'06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제 조 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3,707	49,013	4,037	49,671
	신문·화폐발행및출판업	7,911	81,583	8,305	79,447
	인쇄업	4,715	40,273	4,907	41,552
	화학제품제조업	20,683	276,429	21,930	279,855
	의약품및화장품향료제조업	1,090	39,880	1,161	39,680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10	95	13	92
	고무제품제조업	2,882	53,356	3,008	52,319
	도자기제품제조업	596	10,137	596	9,387
	유리제조업	1,549	27,509	1,601	27,516
	요업또는토석제품제조업	2,524	32,091	2,529	31,773
	시멘트제조업	195	7,374	195	7,284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26,450	194,972	28,173	198,036
	금속제련업	165	29,775	168	30,145
	금속재료제품제조업	2,836	55,550	2,962	57,303
	도금업	3,101	30,646	3,313	33,913
	기계기구제조업	37,041	326,390	40,884	336,53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0,002	145,530	10,740	144,843
	전자제품제조업	13,101	480,194	14,293	497,328

사업종류		구 분		'05		'06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제조업	선 박 건 조 및 수 리 업			2,079	159,042	2,552	118,55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3,031	175,543	13,736	175,51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6,882	169,702	7,493	177,165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 구 제 조 업			5,150	59,240	5,395	57,899
	수 제 품 제 조 업			3,932	28,326	3,948	28,270
	기 타 제 조 업			13,143	101,972	13,697	101,145
전기가 스	소 계			883	52,842	925	53,796
수도업	전 기 · 가 스 및 상 수 도 업			883	52,842	925	53,796
건설업	소 계			166,173	3,137,860	149,874	2,547,754
	건 설 업			166,173	3,137,860	149,874	2,547,754
운수 창고 통신 업	소 계			34,277	669,107	38,199	676,725
	철 도 궤 도 및 삭 도 운 수 업			55	55,486	135	55,102
	자 동 차 여 객 운 수 업			5,693	275,625	7,143	273,839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업			4,764	17,519	5,053	17,262
	수 상 운 수 업 , 항 만 화 역 및 화 물 취 급 사 업			5,524	89,857	5,832	92,978
	항 공 운 수 업			99	26,751	115	28,583
	운 수 관 련 서 비 스 업			13,059	95,056	14,236	102,116
	창 고 업			1,727	25,924	2,014	26,659
	통 신 업			3,356	82,889	3,671	80,186

(단위 : 개소, 명)

사업종류		구 분		'05		'06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임 업	소 계			5,709	81,956	5,781	73,381
	별 목 업			419	986	298	463
	기 타 의 임 업			5,290	80,970	5,483	72,918
어 업	소 계			75	304	148	352
	어 업			75	304	148	352
농 업	소 계			2,904	32,763	3,281	31,781
	농 업			2,904	32,763	3,281	31,781
기 타 의 사 업	소 계			716,804	4,646,634	830,016	4,857,047
	농 수 산 물 위 탁 판 매 업			360	5,580	332	4,260
	건 물 등 의 종 합 관 리 사 업			31,353	415,477	50,097	425,668
	위 생 및 유 사 서 비 스 업			8,396	146,919	8,666	158,219
	건 설 기 계 관 리 사 업			4,597	10,291	4,669	10,339
	골 프 장 및 경 마 장 운 영 업			444	21,518	496	23,428
	기 타 의 각 종 사 업			520,626	2,997,811	601,948	3,099,443
	해 외 파 견 사 업			798	39,871	945	26,345
	컴 퓨 터 운 용 및 법 무 회 계 관 련 서 비 스 업			33,754	290,625	35,873	310,967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78,647	472,094	85,241	519,879
	교 육 서 비 스 업			37,700	229,085	41,615	261,315
	주 한 미 군			129	17,363	134	17,184

제 1-3 표 '06년도 지역

구 분 지 사					사 업 장 수		근 로 자 수	
						신 규 적 용		신 규 적 용
합 계					1,292,696	779,543	11,688,797	4,922,785
서울특별시 자치 본부	서울본부				54,260	21,060	501,044	140,620
	서울강남				87,407	31,548	861,898	201,435
	서울동부				51,127	21,832	378,889	117,933
	서울서부				38,731	14,956	297,751	87,802
	서울남부				44,651	17,667	386,724	127,769
	서울북부				32,023	13,394	216,378	89,415
	서울관악				40,847	15,004	331,525	102,635
	의정부				34,562	19,799	240,198	118,427
	춘천				15,184	15,349	118,188	84,545
	강릉				13,039	11,387	87,714	63,983
	원주				9,093	6,524	80,558	38,451
	태백				3,730	3,597	35,604	20,161
	영월				5,425	6,646	53,776	48,890
부산광역시 본부	부산본부				42,463	18,321	315,656	90,375
	부산동부				21,545	11,413	186,396	79,378
	부산북부				21,382	8,290	187,721	74,498
	창원				30,614	20,885	352,572	158,446
	울산				23,591	20,093	335,042	139,387
	양산				22,713	12,790	238,289	83,745
	진주				19,336	20,529	137,740	92,661
	통영				10,152	9,539	118,617	52,942
대구	대구본부				33,198	20,410	271,537	112,591
지역	대구서부				14,999	7,655	137,748	51,674
본부	대구북부				21,736	10,623	149,690	62,147

본부 및 지사별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지 사			사 업 장 수		근 로 자 수	
				신 규 적 용		신 규 적 용
대구	포	항	19,809	18,297	235,143	120,985
지역	구	미	11,505	12,330	188,198	89,569
본부	영	주	7,520	8,824	45,322	32,007
	안	동	7,749	8,999	48,136	34,189
	경	인	37,290	18,842	350,206	127,785
	인	천	29,698	14,782	251,906	89,255
	수	원	34,455	19,253	419,176	192,575
	부	천	29,605	11,854	217,154	77,592
	안	양	31,676	16,336	246,239	79,567
	안	산	34,126	16,944	304,856	109,208
	성	남	45,641	23,777	396,701	172,000
	평	택	30,020	23,707	400,318	204,692
	고	양	26,858	15,279	209,977	92,240
광	광	주	41,794	31,950	353,020	173,813
주	전	주	23,325	19,115	176,051	95,020
지	익	산	10,079	6,270	77,028	34,558
역	군	산	9,065	8,406	81,458	52,148
본	목	포	16,670	18,529	141,749	81,040
부	여	수	18,957	17,793	212,428	157,329
	제	주	14,345	10,335	98,563	53,543
	대	전	38,833	26,443	383,659	151,507
대전	청	주	25,599	21,470	265,881	140,597
지역	천	안	25,145	19,816	322,468	164,791
본부	총	주	15,665	13,666	114,826	61,726
	보	령	15,459	17,215	127,079	95,139

제 1-4 표 '06년도 월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사 업 장	1,186,122	1,197,713	1,203,425	1,220,842	1,295,653
	근 로 자	12,187,589	12,295,301	12,474,166	12,589,288	12,761,427
금 보 험 업	사 업 장	24,690	24,741	24,725	24,526	25,182
	근 로 자	378,883	381,480	381,574	377,681	382,003
광 업	사 업 장	1,301	1,299	1,276	1,258	1,262
	근 로 자	15,801	15,788	15,603	15,501	15,594
제 조 업	사 업 장	222,841	223,322	223,655	223,452	226,692
	근 로 자	3,050,783	3,041,810	3,044,464	3,007,473	3,013,339
전 기 수 도 업	사 업 장	881	896	904	900	908
	근 로 자	52,713	54,539	55,871	53,773	53,891
건 설 업	사 업 장	176,377	186,128	193,155	210,632	246,337
	근 로 자	3,245,799	3,345,447	3,450,938	3,594,314	3,792,584
운 수 창 통 신 업	사 업 장	34,329	34,348	34,442	34,466	35,429
	근 로 자	669,350	668,033	668,801	668,639	665,071
임 업	사 업 장	5,548	5,434	4,730	4,548	4,416
	근 로 자	80,244	80,257	77,099	82,082	78,741
어 업	사 업 장	76	73	72	69	70
	근 로 자	308	278	274	248	270
농 업	사 업 장	2,966	2,962	2,967	3,092	3,199
	근 로 자	32,726	32,622	32,818	33,565	34,494
기 타 의 사	사 업 장	717,113	718,510	717,499	717,899	752,158
	근 로 자	4,660,982	4,675,047	4,746,724	4,756,012	4,725,440

업종별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87,431	1,208,561	1,232,517	1,213,608	1,268,476	1,307,524	1,292,696
11,394,662	11,513,609	11,678,699	11,479,107	11,749,469	11,947,425	11,688,797
25,527	25,748	25,938	26,102	26,589	26,641	26,776
387,454	389,670	392,321	395,367	398,143	398,831	399,638
1,258	1,266	1,256	1,260	1,277	1,282	1,267
15,518	15,571	15,540	15,543	15,589	15,711	15,656
227,483	228,849	229,503	231,456	234,951	235,911	236,429
3,020,201	3,029,582	3,025,495	3,026,998	3,036,678	3,036,003	3,032,667
918	923	922	927	927	932	925
53,759	53,743	53,757	53,861	53,658	53,684	53,796
125,645	134,762	151,289	120,254	142,934	172,194	149,874
2,396,070	2,479,620	2,628,199	2,401,396	2,580,860	2,760,518	2,547,754
36,151	36,436	36,640	37,238	37,848	38,109	38,199
664,558	667,294	669,328	671,462	674,804	673,823	676,725
4,104	4,688	5,103	5,353	5,975	6,921	5,781
73,623	72,772	77,500	78,233	81,988	90,995	73,381
72	85	85	109	123	136	148
294	289	261	297	317	328	352
3,195	3,318	3,342	3,355	3,439	3,432	3,281
33,223	35,367	35,038	35,063	35,472	35,196	31,781
763,078	772,486	778,439	787,554	814,413	821,966	830,016
4,749,962	4,769,701	4,781,260	4,800,887	4,871,960	4,882,336	4,857,047

제 1-5 표 '06년도 월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사 업 장	1,186,122	1,197,713	1,203,425	1,220,842	1,295,653
	근 로 자	12,187,589	12,295,301	12,474,166	12,589,288	12,761,427
건 설 업	사 업 장	176,377	186,128	193,155	210,632	246,337
	근 로 자	3,245,799	3,345,447	3,450,938	3,594,314	3,792,584
5인 미만	사 업 장	719,261	721,764	719,776	716,811	748,628
	근 로 자	1,317,185	1,323,900	1,322,909	1,317,212	1,370,670
5~9인	사 업 장	144,356	143,751	142,708	142,888	147,104
	근 로 자	930,780	927,603	922,195	924,642	951,289
10~29인	사 업 장	103,552	103,459	104,319	106,384	109,271
	근 로 자	1,638,051	1,636,756	1,653,240	1,689,104	1,733,196
30~49인	사 업 장	18,643	18,617	19,185	19,606	20,073
	근 로 자	705,633	704,894	725,136	740,787	757,869
50~99인	사 업 장	13,132	13,127	13,284	13,546	13,602
	근 로 자	909,689	909,675	918,933	934,758	937,675
100~299인	사 업 장	8,406	8,478	8,594	8,665	8,487
	근 로 자	1,356,884	1,367,201	1,387,968	1,398,772	1,363,262
300~499인	사 업 장	1,249	1,246	1,248	1,194	1,125
	근 로 자	476,530	474,803	474,211	450,040	423,465
500~999인	사 업 장	756	752	765	740	681
	근 로 자	518,677	515,492	523,050	503,940	464,327
1000인 이상	사 업 장	390	391	391	376	345
	근 로 자	1,088,361	1,089,530	1,095,586	1,035,719	967,090

규모별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87,431	1,208,561	1,232,517	1,213,608	1,268,476	1,307,524	1,292,696
11,394,662	11,513,609	11,678,699	11,479,107	11,749,469	11,947,425	11,688,797
125,645	134,762	151,289	120,254	142,934	172,194	149,874
2,396,070	2,479,620	2,628,199	2,401,396	2,580,860	2,760,518	2,547,754
758,708	767,945	774,029	784,057	811,651	820,238	829,250
1,389,944	1,405,302	1,414,789	1,430,098	1,472,685	1,484,872	1,496,396
148,530	150,128	150,957	152,349	155,372	156,086	155,923
960,208	969,988	975,289	983,756	1,002,233	1,006,624	1,005,302
110,094	111,077	111,575	112,198	113,573	114,025	113,129
1,745,489	1,759,976	1,766,802	1,775,544	1,795,721	1,802,214	1,787,635
20,203	20,325	20,363	20,455	20,576	20,600	20,396
762,299	766,998	768,174	771,399	775,823	776,644	769,071
13,679	13,717	13,720	13,738	13,785	13,815	13,673
942,771	945,195	945,220	946,550	949,679	951,620	941,313
8,431	8,472	8,455	8,442	8,472	8,461	8,360
1,354,238	1,359,414	1,355,690	1,352,821	1,355,762	1,353,439	1,338,138
1,131	1,130	1,127	1,117	1,118	1,114	1,099
426,115	425,844	424,801	420,982	421,320	419,976	414,477
670	669	665	663	659	656	660
456,737	456,378	453,597	453,025	450,146	447,951	450,675
340	336	337	335	336	335	332
960,791	944,894	946,138	943,536	945,240	943,567	938,036

제 1-6 표 연도별 업종별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업 종	'01		'02		'03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합 계	909,461	10,581,186	1,002,263	10,571,279	1,006,549	10,599,345
금 융 및 보 험 업	7,145	385,890	23,055	336,202	23,505	348,698
광 업	1,086	19,111	1,089	17,331	1,138	16,674
제 조 업	187,253	2,922,342	194,150	2,857,592	198,424	2,839,681
전 기 가 스 수 도 업	805	49,390	811	49,250	817	49,329
건 설 업	143,200	2,438,649	183,309	2,769,470	164,096	2,633,341
운 수 창 고 통 신 업	26,952	660,374	27,873	660,768	29,180	655,289
임 업	3,283	86,550	4,204	94,489	6,145	85,883
어 업	289	1,958	371	1,864	405	1,866
농 업	1,839	24,312	2,113	31,093	2,196	28,321
기 타 의 사 업	537,609	3,992,610	565,288	3,753,220	580,643	3,940,263

업 종	'04		'05		'06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합 계	1,039,208	10,473,090	1,175,606	12,069,599	1,292,696	11,688,797
금 융 및 보 험 업	24,201	365,912	24,703	378,574	26,776	399,638
광 업	1,261	16,135	1,299	16,014	1,267	15,656
제 조 업	213,940	2,929,451	222,779	3,053,545	236,429	3,032,667
전 기 가 스 수 도 업	828	50,606	883	52,842	925	53,796
건 설 업	97,937	2,009,686	166,173	3,137,860	149,874	2,547,754
운 수 창 고 통 신 업	31,872	654,776	34,277	669,107	38,199	676,725
임 업	5,308	73,033	5,709	81,956	5,781	73,381
어 업	88	355	75	304	148	352
농 업	2,343	31,134	2,904	32,763	3,281	31,781
기 타 의 사 업	661,430	4,342,002	716,804	4,646,634	830,016	4,857,047

제 1-7 표 연도별 사업규모별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규 모	'01		'02		'03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합 계	909,461	10,581,186	1,002,263	10,571,279	1,006,549	10,599,345
건 설 업	143,200	2,438,649	183,309	2,769,470	164,096	2,633,341
5 인 미 만	538,011	1,080,458	571,442	1,102,404	580,725	1,112,860
5 ~ 9 인	115,351	742,606	122,412	791,835	130,084	842,603
10 ~ 29 인	77,508	1,229,697	87,869	1,395,180	92,870	1,466,661
30 ~ 49 인	15,335	580,990	16,568	626,961	17,114	647,925
50 ~ 99 인	10,687	740,016	11,267	777,556	11,856	821,286
100 ~ 299 인	7,156	1,168,610	7,273	1,186,959	7,647	1,249,575
300 ~ 499 인	1,106	419,677	1,087	410,809	1,117	422,882
500 ~ 999 인	654	450,381	643	441,324	657	446,547
1000 인 이 상	453	1,730,102	393	1,068,781	383	955,665

규 모	'04		'05		'06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합 계	1,039,208	10,473,090	1,175,606	12,069,599	1,292,696	11,688,797
건 설 업	97,937	2,009,686	166,173	3,137,860	149,874	2,547,754
5 인 미 만	660,930	1,251,668	718,924	1,316,157	829,250	1,496,396
5 ~ 9인	142,921	921,497	144,383	931,211	155,923	1,005,302
10 ~ 29인	97,080	1,532,423	103,566	1,638,050	113,129	1,787,635
30 ~ 49인	17,707	670,403	18,601	704,061	20,396	769,071
50 ~ 99인	12,338	851,908	13,144	911,095	13,673	941,313
100 ~ 299인	7,993	1,297,233	8,421	1,359,801	8,360	1,338,138
300 ~ 499인	1,195	450,734	1,245	475,253	1,099	414,477
500 ~ 999인	718	487,397	760	521,372	660	450,675
1000인 이 상	389	1,000,141	389	1,074,739	332	938,036

2. 보 험 료 율

료 율 변 동 현 황

(단위 : 천분율)

87/67	88/61	89/59	90/59	91/66	92/67	93/74	94/67	95/67	96/67	97/67	98/68	99/68	00/64	01/62	02/58	03/59	04/60	05/61	06/61
17.8	16.4	15.5	16.4	16.4	19.4	22.1	19.4	15.0	15.2	16.8	15.5	16.5	17.6	16.7	14.9	13.6	14.8	16.2	17.8
183	178	177	212	227	286	335	355	272	303	288	244	271	283	297	311	317	377	436	4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135	160	195	146	182	175	178	109	142	178	158	197	226	237	248	266	278	313	316
68	68	65	73	66	79	85	88	71	77	91	85	111	121	116	121	121	143	155	167
59	44	39	36	38	53	67	64	50	55	59	58	74	85	88	82	74	60	56	68
3	3	3	3	6	8	9	7	7	9	12	14	18	21	22	23	23	27	32	37
14	139	-	-	-	-	-	-	-	-	-	-	-	-	-	-	-	-	-	-
27	29	33	44	42	46	48	43	36	38	44	42	55	60	59	61	55	64	60	71
-	-	-	-	-	26	30	31	26	30	35	35	39	45	41	43	43	51	61	76
11	10	9	10	11	13	14	13	11	12	14	13	16	16	15	15	15	17	20	24
-	-	-	-	-	-	24	-	-	-	-	-	-	-	-	-	-	-	-	-
4	3	3	3	4	6	8	7	6	6	7	6	7	8	8	7	6	7	8	10
6	5	5	5	6	8	9	6	5	6	7	7	8	8	8	8	7	8	9	11
-	-	-	-	-	-	14	12	10	13	17	12	15	16	15	16	15	17	20	24
-	33	31	34	33	38	40	36	29	31	34	32	41	42	44	46	48	57	59	65
32	-	-	-	-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	-	-	-	-
24	24	23	26	26	29	34	31	25	25	27	25	32	35	35	37	35	41	43	47
22	20	18	19	19	21	23	20	16	17	18	16	20	21	20	17	17	20	23	26
-	2	2	2	3	4	5	5	4	5	6	5	6	6	6	6	5	5	6	7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13	13	13	12	12	14	17	-	-	-	-	-	-	-	-	-	-	-	-	-
-	-	-	-	-	-	-	14	11	12	13	12	14	15	15	15	13	15	18	19
-	-	-	-	-	-	-	20	15	15	16	15	18	18	17	-	-	-	-	-

[illegible]

(단위: 천분율)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3	5	6	7	7	7	7	8	6	8	8	7	8	8	8	-	-	-	-	-
19	17	17	17	16	17	18	16	13	14	15	14	16	17	15	16	14	16	19	21
2	3	3	3	4	5	6	6	5	6	7	6	7	8	8	8	7	8	9	11
27	23	21	24	24	-	-	-	-	-	-	-	-	-	-	-	-	-	-	-
-	-	-	-	-	24	23	15	12	16	22	26	34	39	33	30	26	22	26	32
8	8	8	8	9	11	12	11	10	12	14	13	15	16	15	16	16	19	22	27
6	7	6	7	9	11	14	13	11	12	15	14	18	19	20	21	19	22	26	232
8	8	7	8	8	10	12	11	9	10	12	12	14	14	14	15	15	17	20	24
19	19	19	21	22	25	27	23	18	19	22	21	25	27	27	27	26	30	31	33
12	8	6	7	10	13	17	17	13	15	16	15	18	21	22	23	22	26	26	28
16	14	16	16	17	23	29	28	21	22	23	20	24	24	-	-	-	-	-	-
-	36	35	37	33	36	39	36	28	30	32	30	39	42	43	43	39	46	45	51
38	-	-	-	-	-	-	-	-	-	-	-	-	-	-	-	-	-	-	-
39	-	-	-	-	-	-	-	-	-	-	-	-	-	-	-	-	-	-	-
6	5	5	5	5	6	8	8	7	7	8	7	8	8	7	7	6	7	8	10
30	29	25	26	25	28	32	29	23	24	27	24	30	33	32	33	30	35	36	39
34	33	31	35	35	39	38	33	26	28	31	29	37	40	40	-	-	-	-	-
-	-	-	-	-	-	87	93	82	107	147	123	149	-	-	-	-	-	-	-
21	19	16	19	21	26	27	24	17	18	20	18	22	24	21	20	18	21	24	26
18	17	16	17	17	20	23	21	16	17	19	18	21	23	22	22	21	24	28	30
-	-	-	-	-	-	-	-	-	-	-	-	-	-	-	-	-	-	-	-
10	9	9	10	10	11	12	10	8	9	11	10	11	11	11	11	10	11	13	16
-	-	-	-	-	-	-	-	-	-	-	-	-	-	-	-	-	-	-	-
2	2	2	2	3	4	6	5	4	5	5	5	6	6	5	5	5	5	6	7

연 도 별 사업종류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제조업	선 박 건 조 및 수 리 업	14	14	18	20	18	17	15	15	15	15	15	17	20	24
	수 송 용 기 계 기 구 제 조 업(갑)	9	9	12	12	11	11	11	10	10	11	12	13	14	15
	수 송 용 기 계 기 구 제 조 업(을)	-	-	-	-	-	-	-	-	-	-	-	-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	-	-	-	-	-	-	-	-	-	-	-	-
	계량기·광학기계·시계등의 제조업	3	3	2	2	3	5	5	5	6	7	9	9	9	-
	기 타 정 밀 기 구 제 조 업	-	-	-	-	6	9	7	7	7	10	7	9	11	17
	목 재 악 기 제 조 업	-	-	-	-	8	8	9	9	10	7	8	8	9	9
	수 제 품 제 조 업	2	2	2	2	2	2	4	4	5	4	4	5	6	7
	수 제 품 제 조 업(을)	-	-	-	-	-	-	-	-	-	-	-	-	-	-
	기 타 제 조 업	5	5	7	6	6	5	5	6	7	7	7	7	9	11
전기·가스 및 수도업	전 기 및 가 스 업(갑)	-	-	-	-	-	-	-	-	-	-	-	-	-	-
	전 기 및 가 스 업(을)	-	-	-	-	-	-	-	-	-	-	-	-	-	-
	전 기 업	7	7	7	7	6	6	6	6	6	7	6	6	5	5
	가 스 업	5	5	4	3	2	5	6	3	2	4	3	2	3	4
	수 도 법	7	7	7	7	8	8	8	6	8	7	7	2	6	5
	전 기 · 가 스 및 상 수 도 업	-	-	-	-	-	-	-	-	-	-	-	-	-	-
건설업	일 반 건 설 공 사(갑)	-	-	-	-	-	15	16	15	15	16	17	17	21	24
	일 반 건 설 공 사(을)	-	-	-	-	-	-	-	-	-	-	-	-	-	-
	건 축 건 설 공 사	17	17	17	18	16	-	-	-	-	-	-	-	-	-
	포 장 공 사	12	-	-	-	-	-	-	-	-	-	-	-	-	-
	토 목 건 설 공 사	15	16	16	-	-	-	-	-	-	-	-	-	-	-
	도 로 신 설 공 사	20	-	-	-	19	17	-	-	-	-	-	-	-	-
	기 타 공 사	13	17	17	17	14	13	-	-	-	-	-	-	-	-
	중 건 설 공 사	-	-	-	-	-	61	47	46	37	27	28	37	48	58
	수 력 발전 시설 등 신 설 공 사	66	85	85	84	70	-	-	-	-	-	-	-	-	-
	철 도 또 는 궤 도 신 설 공 사	47	61	79	60	64	52	36	22	17	24	23	25	35	38
	기 계 장 치 공 사	15	20	26	35	27	29	18	26	27	31	33	32	36	33

연 도 별 사업종류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운수창고 및 통신판매업	철도·도로 및 선박 운수업	-	-	-	-	2	4	3	3	3	5	3	2	2	2
	자동차 여객 운수업	14	14	14	13	11	11	7	8	7	7	7	7	8	8
	소형자동차 운수업	13	13	13	20	9	7	6	7	8	9	9	9	10	11
	화물자동차 운수업	19	25	25	34	32	30	29	26	25	24	24	25	29	32
	수상 운수업	10	13	17	20	14	12	10	11	12	22	21	25	38	51
	항만 하역업	21	21	21	21	20	20	21	20	20	20	20	20	22	24
	해상 하역업	35	35	35	31	-	-	-	-	-	-	-	-	-	-
	항공 운수업	7	5	4	2	5	4	5	2	2	5	5	5	7	11
	신화물 취급업	20	20	20	20	18	20	18	18	18	18	19	21	23	26
	운수 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2	2	2	2
임업	창고업	23	16	11	8	6	5	8	7	6	4	5	7	9	9
	통신업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임업	벌목업	-	-	-	-	-	-	-	-	-	22	103	26	60	107
	기타의 임업	-	-	-	-	-	-	-	-	-	-	-	-	-	-
어업	해면어업	-	-	-	-	-	-	-	-	-	-	-	-	-	-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양식업	-	-	-	-	-	-	-	-	-	-	-	-	-	-
	기타의 어업	-	-	-	-	-	-	-	-	-	-	-	-	-	-
	어업	-	-	-	-	-	-	-	-	-	-	-	-	-	-
농업	일반농업	-	-	-	-	-	-	-	-	-	-	-	-	-	-
	기계화농업	-	-	-	-	-	-	-	-	-	-	-	-	-	-
	농업	-	-	-	-	-	-	-	-	-	-	-	-	-	-
기타의 사업	농수산물 위탁 판매업	-	-	-	-	-	-	-	-	-	-	4	9	7	7
	건물 등의 종합 관리 사업	-	-	-	-	3	2	2	3	2	2	2	3	3	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	-	-	-	-	-	-	-	-	-	-	11	14	16
	건설 기계 관리 사업	-	-	-	-	6	5	6	7	9	9	11	12	15	16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	-	-	-	-	-	-	-	-	-	-	-	-	-
	기타의 각종 사업	2	-	-	-	2	2	2	2	2	2	2	2	2	2
	컴퓨터 및 법무회계서비스업	-	-	-	-	-	-	-	-	-	-	-	-	-	-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	-	-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	-	-	-	-	-	-	-	-	-	-	-	-	-
금융 및 보험업		-	-	-	-	-	-	-	-	-	-	-	-	-	-

※ 해외파견업 : 17/1000(2005:16/1000)

(단위: 천분율)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2	2	2	2	3	4	5	4	4	5	6	5	6	6	6	6	5	5	6	7
8	8	7	8	9	13	15	13	10	11	13	12	14	14	15	16	15	17	20	25
11	9	8	9	11	13	15	14	12	13	16	14	17	17	-	-	-	-	-	-
35	33	33	36	35	40	44	38	29	32	36	33	43	49	51	55	48	57	61	68
44	40	30	25	20	28	26	24	17	19	21	18	23	26	27	28	27	32	32	35
24	22	21	22	23	30	33	32	24	26	28	26	30	30	29	-	-	-	-	-
-	-	-	-	-	-	-	-	-	-	-	-	-	-	-	-	-	-	-	-
8	5	7	6	6	5	7	7	6	6	7	6	8	9	9	8	7	8	7	8
25	24	23	27	27	33	34	-	-	-	-	-	-	-	-	-	-	-	-	-
2	2	2	2	3	4	6	5	4	5	6	5	6	6	6	6	5	5	6	7
9	8	8	10	13	17	18	16	12	13	15	13	15	16	15	16	15	17	19	21
3	3	3	3	4	5	6	5	5	6	7	7	8	8	8	8	7	8	9	11
178	179	169	244	218	272	182	292	351	320	299	258	319	304	319	319	343	408	489	611
-	-	-	-	3	4	6	8	9	12	16	18	19	19	20	21	21	24	28	35
-	-	-	-	17	19	29	-	-	-	-	-	-	-	-	-	-	-	-	-
-	-	-	-	17	19	47	-	-	-	-	-	-	-	-	-	-	-	-	-
-	-	-	-	3	4	18	-	-	-	-	-	-	-	-	-	-	-	-	-
-	-	-	-	-	-	-	28	35	46	63	60	78	90	95	99	105	124	148	185
-	-	-	-	3	4	10	-	-	-	-	-	-	-	-	-	-	-	-	-
-	-	-	-	17	19	12	-	-	-	-	-	-	-	-	-	-	-	-	-
-	-	-	-	-	-	-	9	8	10	13	14	16	17	15	16	14	16	19	23
7	8	7	10	10	16	18	14	9	9	11	10	13	15	16	16	16	19	22	27
5	5	5	7	8	9	11	10	8	9	11	10	12	13	13	13	13	15	18	22
20	21	24	27	26	29	31	27	20	21	22	21	25	26	26	27	24	28	31	35
20	19	21	25	25	27	30	27	22	29	40	41	50	47	49	51	54	64	76	92
-	-	-	-	8	8	12	10	9	9	9	8	9	10	11	11	10	11	13	16
2	2	2	2	3	4	5	5	4	5	6	5	6	6	6	6	5	5	6	7
-	-	-	-	-	-	-	-	-	-	-	-	-	-	-	-	4	4	4	5
-	-	-	-	-	-	-	-	-	-	-	-	-	-	-	-	-	4	4	5
-	-	-	-	-	-	-	-	-	-	-	-	-	-	-	-	-	-	7	8
-	-	-	-	-	-	-	-	-	-	-	2.5	3	3.5	4	4	4	4	4	5

제 2-2 표 '06년도 개별

구 분 지 사		개별요율 사업장수	금융 및 보험업				제 조 업				건 설 업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합 계		32,361	1,059	119	932	8	13,918	2,850	10,639	429	849	194	604	51
서울 지 역 본 부	서울 본부	1,289	113	2	111	0	100	15	83	2	38	7	29	2
	서울 강남	2,839	71	2	69	0	142	11	129	2	91	28	57	6
	서울 동부	1,013	20	1	19	0	179	20	157	2	20	4	13	3
	서울 서부	816	14	2	12	0	83	8	74	1	26	8	16	2
	서울 남부	1,143	93	6	83	4	115	15	96	4	24	7	16	1
	서울 북부	533	6	1	5	0	70	9	61	0	3	0	2	1
	서울 관악	1,029	8	0	8	0	286	41	239	6	13	2	10	1
	의 정 부	638	34	2	32	0	348	77	253	18	20	5	14	1
	춘 천	180	20	5	15	0	25	4	20	1	8	1	6	1
	강 릉	207	18	1	17	0	53	22	31	0	7	4	3	0
	원 주	195	9	2	7	0	79	19	58	2	13	2	10	1
	태 백	54	5	1	4	0	4	3	1	0	4	1	3	0
	영 월	62	8	3	5	0	14	4	9	1	2	0	2	0
부산 지 역 본 부	부산 본부	992	23	3	20	0	315	78	224	13	36	15	17	4
	부산 동부	459	8	1	7	0	160	30	123	7	15	7	7	1
	부산 북부	531	6	0	6	0	366	88	268	10	3	0	3	0
	창 원	1,063	31	9	22	0	655	226	393	36	27	8	18	1
	울 산	801	19	6	13	0	478	112	345	21	18	9	9	0
	양 산	812	20	2	18	0	629	148	457	24	9	5	4	0
	진 주	317	33	8	24	1	115	41	70	4	16	5	10	1
	통 영	161	13	4	9	0	60	25	31	4	7	1	6	0
대구 지 역 본 부	대구 본부	823	26	4	22	0	339	72	263	4	32	7	24	1
	대구 서부	549	9	1	8	0	385	94	278	13	4	0	3	1
	대구 남부	552	9	0	9	0	346	71	266	9	7	1	6	0
	포 향	609	11	1	10	0	349	94	242	13	23	3	20	0
	구 미	523	7	1	6	0	390	44	343	3	8	0	8	0
	영 주	109	11	3	7	1	44	15	29	0	3	0	3	0

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천분율)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전기·가스업				광업·임업·어업·농업				기타의 사업				최고 요율	최저 요율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3,334	925	2,306	103	256	37	215	4	261	78	175	8	12,684	2,162	10,352	170	541.6	2.5
174	20	150	4	4	1	3	0	1	1	0	0	859	97	756	6	52.5	2.5
100	9	90	1	3	1	2	0	0	0	0	0	2,432	272	2,140	20	52.5	2.5
97	30	64	3	4	0	4	0	0	0	0	0	693	137	543	13	108.6	2.5
123	28	90	5	3	0	3	0	1	0	1	0	566	78	481	7	52.5	2.5
175	42	130	3	8	2	6	0	0	0	0	0	728	108	614	6	52.5	2.5
132	42	85	5	3	0	3	0	0	0	0	0	319	62	253	4	52.5	2.5
78	14	63	1	3	0	3	0	1	0	1	0	640	80	552	8	71.4	2.5
70	32	38	0	5	1	4	0	6	1	4	1	155	46	107	2	259.1	2.5
38	11	27	0	7	0	7	0	4	1	3	0	78	17	59	2	106.5	2.5
46	10	31	5	5	1	2	2	3	1	2	0	75	18	57	0	64.4	2.5
27	11	16	0	4	1	3	0	1	0	1	0	62	12	50	0	60.2	2.5
13	6	7	0	2	0	2	0	12	3	8	1	14	8	6	0	541.6	2.5
8	3	5	0	0	0	0	0	8	3	5	0	22	6	16	0	183.3	2.5
196	60	128	8	7	2	5	0	1	0	1	0	414	98	308	8	108.6	2.5
56	13	42	1	5	1	4	0	1	1	0	0	214	32	179	3	72.4	2.5
34	9	25	0	4	1	3	0	1	0	1	0	117	20	95	2	76.7	2.5
94	42	48	4	5	3	2	0	10	4	6	0	241	81	155	5	76.5	2.5
105	28	74	3	10	1	9	0	4	1	3	0	167	47	115	5	106.5	2.5
45	20	23	2	5	2	3	0	4	1	3	0	100	26	71	3	88.4	2.5
47	17	30	0	7	1	6	0	14	4	10	0	85	15	69	1	106.9	2.5
21	9	12	0	3	0	3	0	4	2	2	0	53	28	23	2	76.5	2.5
104	40	61	3	5	0	5	0	10	4	5	1	307	59	239	9	63.2	2.5
46	17	28	1	0	0	0	0	4	2	2	0	101	21	79	1	79.5	2.5
49	17	27	5	2	0	2	0	2	0	2	0	137	24	110	3	72.4	2.5
69	25	41	3	9	1	8	0	6	4	2	0	142	30	107	5	76.5	2.5
22	4	17	1	4	0	4	0	6	1	5	0	86	11	74	1	76.5	2.5
15	6	9	0	0	0	0	0	6	3	3	0	30	7	23	0	58.5	2.5

구 분 지 사		개별요율 사업장수	금융 및 보험업				제 조 업				건 설 업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안 동	120	5	1	4	0	25	9	16	0	5	0	5	0
경 인 지 역 본 부	경인 본부	1,086	15	3	12	0	691	145	521	25	19	8	9	2
	인천 북부	677	10	2	8	0	433	88	329	16	12	4	7	1
	수 원	1,053	20	3	17	0	642	93	540	9	32	2	29	1
	부 천	646	10	3	7	0	461	82	366	13	19	5	13	1
	안 양	771	9	3	6	0	336	59	273	4	27	5	21	1
	본 안 산	1,327	4	0	4	0	1,129	233	859	37	8	0	8	0
	부 성 남	1,037	32	1	31	0	426	60	349	17	36	7	26	3
	평 택	1,089	24	1	22	1	704	120	568	16	14	2	12	0
	고 양	493	15	0	14	1	237	40	193	4	12	3	7	2
광 주 지 역 본 부	광주 본부	901	38	2	36	0	321	77	238	6	58	10	48	0
	전 주	471	30	4	26	0	184	41	139	4	28	2	24	2
	익 산	257	8	1	7	0	152	33	109	10	4	0	3	1
	군 산	168	9	2	7	0	84	24	53	7	3	1	1	1
	목 포	180	23	1	22	0	53	20	33	0	6	0	5	1
	여 수	373	22	3	19	0	150	27	119	4	6	2	4	0
	제 주	260	30	3	27	0	25	7	17	1	13	1	12	0
대 전 지 역 본 부	대전 본부	1,010	36	5	31	0	352	67	273	12	28	4	19	5
	청 주	733	23	3	20	0	454	77	359	18	17	2	14	1
	천 안	821	21	1	20	0	588	88	485	15	18	5	12	1
	충 주	368	16	3	13	0	248	50	189	9	1	0	1	0
	보 령	221	14	3	11	0	94	24	68	2	6	1	5	0

(단위 : 개소, 천분율)

운수·창고 및 통신업				전기·가스업				광업·임업·어업·농업				기타의 사업				최고 요율	최저 요율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계	인상	인하	불변		
18	4	13	1	4	0	4	0	7	4	2	1	56	12	44	0	66.3	2.5
135	37	93	5	8	2	6	0	3	1	2	0	215	45	167	3	138.0	2.5
60	19	38	3	9	1	8	0	3	0	3	0	150	45	102	3	103.0	2.5
84	24	54	6	3	0	3	0	8	3	4	1	264	46	213	5	76.5	2.5
28	9	17	2	4	2	2	0	1	0	1	0	123	30	91	2	76.5	2.5
72	22	48	2	6	2	4	0	1	0	1	0	320	57	258	5	59.8	2.5
35	11	22	2	8	1	7	0	0	0	0	0	143	42	100	1	76.5	2.5
83	17	65	1	11	0	11	0	8	2	6	0	441	68	371	2	114.1	2.5
84	14	69	1	7	0	7	0	10	4	6	0	246	43	201	2	79.5	2.5
38	11	25	2	6	1	5	0	2	0	2	0	183	34	147	2	61.1	2.5
121	31	86	4	12	2	10	0	18	4	13	1	333	65	264	4	459.0	2.5
63	18	45	0	6	1	5	0	4	0	4	0	156	30	124	2	52.5	2.5
29	9	18	2	6	0	6	0	7	0	7	0	51	10	41	0	126.9	2.5
26	7	17	2	5	0	4	1	2	1	1	0	39	15	24	0	69.9	2.5
29	14	13	2	1	0	1	0	10	2	8	0	58	10	47	1	76.7	2.5
78	18	56	4	7	1	6	0	7	2	5	0	103	22	79	2	76.5	2.5
58	5	53	0	5	0	5	0	6	2	3	1	123	10	110	3	45.5	2.5
133	32	100	1	7	1	6	0	9	5	4	0	445	72	365	8	106.5	2.5
63	30	32	1	6	3	3	0	10	2	8	0	160	29	126	5	348.8	2.5
52	12	38	2	8	0	7	1	12	4	8	0	122	23	96	3	76.5	2.5
27	7	19	1	2	1	1	0	8	1	7	0	66	6	59	1	69.4	2.5
34	9	24	1	8	0	8	0	15	4	10	1	50	8	42	0	75.5	2.5

3. 정 수

제 3-1표 연도별 징수

구 분 연 도	합 계		보 험 료		가 산 금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70	3,691,602,624	3,104,020,708	3,328,244,088	2,836,051,603	283,245,281	187,855,850
'71	4,730,408,007	3,805,605,180	3,828,390,110	3,119,060,504	434,004,941	218,531,720
'72	6,485,905,519	5,379,676,399	4,860,269,374	4,136,725,202	859,946,941	477,261,993
'73	7,347,192,621	6,474,053,714	5,821,529,611	5,300,945,326	975,952,829	623,398,207
'74	10,842,576,010	9,331,029,404	9,176,586,852	8,001,360,549	755,881,511	419,561,208
'75	16,230,728,729	14,338,053,180	13,997,329,022	12,698,357,195	1,117,147,367	523,443,645
'76	23,218,669,736	21,347,471,538	19,966,038,769	18,708,868,829	1,433,292,395	819,264,137
'77	32,056,454,798	30,186,301,482	27,548,842,869	26,344,801,028	1,761,649,057	1,115,599,701
'78	49,925,705,695	47,528,213,511	40,357,138,307	39,446,051,948	1,782,305,813	1,484,823,426
'79	75,654,634,609	71,717,864,477	60,909,143,802	59,137,940,199	3,228,692,162	2,659,784,745
'80	91,676,097,493	86,066,630,104	73,222,145,120	69,411,340,053	5,871,102,051	4,074,121,708
'81	103,919,528,862	96,164,281,142	86,597,523,554	81,307,060,071	6,596,865,814	4,134,247,884
'82	128,575,926,453	117,875,117,858	110,170,412,891	103,094,240,917	8,419,922,945	4,797,023,460
'83	150,472,371,362	137,039,828,341	133,933,760,992	125,010,749,554	10,144,676,773	5,636,978,351
'84	182,706,878,411	165,817,041,622	159,538,488,426	147,955,308,143	11,291,437,430	5,987,222,812
'85	228,439,500,669	205,628,583,538	209,649,740,373	193,170,741,645	12,931,743,277	6,607,019,134
'86	269,229,130,608	240,153,782,798	252,742,271,176	231,367,167,534	14,329,935,502	6,738,434,144
'87	338,424,901,618	298,355,612,570	317,641,538,464	287,500,577,616	17,546,855,444	7,730,176,864
'88	393,784,049,279	336,215,061,030	368,320,666,302	325,054,863,969	22,620,262,427	8,424,254,631
'89	495,753,780,520	424,357,284,280	461,915,595,510	410,617,604,860	30,472,397,140	10,503,058,440
'90	698,757,541,330	601,045,073,070	605,327,963,980	550,304,463,890	55,060,066,690	12,519,555,840
'91	900,672,943,620	788,718,000,980	787,178,264,710	720,652,614,410	61,627,305,170	16,350,111,190
'92	1,250,495,819,580	1,088,147,561,220	1,157,381,985,090	1,049,848,234,760	76,068,155,680	21,462,861,810
'93	1,636,035,759,910	1,444,792,934,462	1,504,197,569,480	1,375,765,856,422	92,429,869,670	29,879,274,690
'94	1,521,986,748,150	1,291,418,110,860	1,365,697,434,730	1,207,205,949,280	105,638,391,510	33,833,548,910
'95	1,702,530,716,650	1,453,523,667,630	1,305,375,555,100	1,130,354,696,560	107,258,567,500	33,522,025,450
'96	1,983,446,224,660	1,675,402,057,880	1,639,167,434,550	1,423,109,811,950	137,263,090,740	45,702,612,710
'97	2,367,197,216,470	2,020,103,496,030	2,069,503,003,570	1,818,957,926,980	153,601,864,200	57,418,336,630
'98	2,119,666,072,180	1,719,087,067,930	1,739,739,372,040	1,451,435,640,010	154,280,720,730	42,338,171,200
'99	2,062,243,044,550	1,612,116,030,910	1,856,918,811,740	1,530,007,146,330	169,888,102,370	47,008,032,690
'00	2,504,684,703,750	1,955,454,630,260	2,289,191,371,470	1,876,394,611,800	184,590,015,300	48,527,075,200
'01	2,877,066,368,730	2,364,462,162,840	2,623,610,576,640	2,256,090,391,980	220,127,539,080	75,409,221,160
'02	3,209,432,209,150	2,715,625,227,150	2,744,580,997,680	2,395,318,682,900	229,808,212,050	85,609,278,800
'03	3,546,595,731,260	3,029,808,946,400	2,821,001,077,230	2,465,057,417,790	252,706,552,040	92,195,883,590
'04	5,993,303,982,030	5,363,935,831,830	3,336,497,854,070	2,896,117,975,470	273,037,283,970	84,373,593,460
'05	5,999,229,901,990	5,263,916,367,520	3,614,979,014,230	3,182,164,240,630	21,380,815,710	8,158,397,690
'06	6,684,570,938,140	5,747,179,986,09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20,659,013,150	8,546,594,990

※ '03년까지는 기금계정의 내역이고, '04년 이후는 적립금 계정을 포함한 기금 전체 내역임.

결정 및 수납현황

(단위 : 원)

기 타 경상이전수입		기 타 재 산 수 입		일 반 회 계 전 입 금		타 회 계 전 입 금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80,113,255	80,113,255				
		249,627,356	249,627,356			218,385,600	218,385,600
		591,018,878	591,018,878				
		549,710,181	549,710,181				
		621,674,910	621,674,910			273,063,329	273,063,329
		856,912,785	856,912,785				
		1,230,790,215	1,230,790,215			505,728,000	505,728,000
		1,782,744,019	1,782,744,019			783,000,000	783,000,000
		2,590,151,395	2,590,151,395			3,364,586,648	3,364,586,648
		4,036,253,527	4,036,253,527	101,440,000	101,440,000	3,800,000,000	3,800,000,000
		5,916,557,515	5,916,557,515	173,000,000	173,000,000	5,550,000,000	5,550,000,000
		6,528,433,616	6,528,433,616	173,000,000	173,000,000	3,205,960,628	3,205,960,628
		6,118,184,490	6,118,184,490	258,750,000	258,750,000	3,000,007,453	3,000,007,453
		362,314,719	362,314,719	1,000,000,000	1,000,000,000	4,874,918,279	4,874,918,279
		204,130,368	204,130,368	777,000,000	777,000,000	10,819,478,748	10,819,478,748
		464,118,772	464,118,772	1,000,000,000	1,000,000,000	4,281,005,500	4,281,005,500
		888,380,460	888,380,460	1,000,000,000	1,000,000,000		
		1,409,363,220	1,409,363,220	1,000,000,000	1,000,000,000		
		1,516,346,800	1,516,346,800	1,000,000,000	1,000,000,000		
		1,657,208,640	1,657,208,640	1,000,000,000	1,000,000,000		
		1,102,486,230	1,102,486,230	7,074,496,000	7,074,496,000	29,421,714,160	29,421,714,160
		1,887,860,720	1,887,860,720	8,920,425,000	8,920,425,000	38,783,988,000	38,783,988,000
		3,886,897,050	3,886,897,050	10,229,613,000	10,229,613,000		
		22,808,866,750	22,808,866,750	12,489,000,000	12,489,000,000		
		35,207,377,130	35,207,377,130	13,767,490,000	13,767,490,000		
		13,603,477,880	13,603,477,880	7,034,734,000	7,034,734,000	267,778,811,000	267,778,811,000
		21,323,654,250	21,323,654,250	9,000,000,000	9,000,000,000	173,316,010,010	173,316,010,010
		30,107,795,830	30,107,795,830	10,884,000,000	10,884,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14,189,718,470	14,189,718,470	11,619,000,000	11,619,000,000	197,000,000,000	197,000,000,000
		7,539,039,870	7,539,039,870	8,714,000,000	8,714,000,000	15,094,000,000	15,094,000,000
		15,060,057,860	15,060,057,860	9,149,700,000	9,149,700,000		
		17,188,116,210	17,188,116,210	8,284,320,000	8,284,320,000		
542,742,850	542,742,850	15,342,400,650	15,342,400,650	11,328,640,000	11,328,640,000		
1,005,429,080	1,005,429,080	8,400,240,630	8,400,240,630	14,457,840,000	14,457,840,000	318,600,000,000	318,600,000,000
282,000	282,000	124,071,378,190	124,071,378,190	14,237,840,000	14,237,840,000		
372,156,164,390	83,305,559,510	89,020,162,390	89,020,162,390	14,237,840,000	14,237,840,000		
619,484,488,810	115,234,598,470	83,404,497,410	83,404,497,410	14,700,000,000	14,700,000,000		

구분 연도	전년도이월금		관유물대여료		관유물매각대		기 타 잡 수 입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70								
'71								
'72	174,670,326	174,670,326						
'73								
'74							15,369,408	15,369,408
'75	246,421,217	246,421,217					12,918,338	12,918,338
'76			33,543,276	33,543,276			49,277,081	49,277,081
'77	142,055,865	142,055,865	13,404,904	13,404,904			24,758,084	4,695,965
'78	1,812,822,568	623,899,130	179,052	179,052			18,521,912	18,521,912
'79	3,477,202,876	1,880,543,764	83,817	83,817			101,818,425	101,818,425
'80	775,942,973	775,942,973	14,598,324	13,134,991			152,751,510	152,532,864
'81	704,223,535	704,223,535	1,898,333	435,000			111,623,382	110,920,408
'82	518,726,909	518,726,909	1,463,333				88,458,432	88,184,629
'83	95,900,000	95,900,000	1,463,333				59,337,266	58,967,438
'84			1,463,330				74,880,109	73,901,551
'85	14,400,000	14,400,000	1,463,330				97,029,417	91,298,487
'86			1,463,330				267,080,140	159,800,660
'87	377,163,540	377,163,540	1,463,330				448,517,620	338,331,330
'88			1,463,330				325,310,420	219,595,630
'89	203,288,920	203,288,920	1,463,330				503,826,980	376,123,420
'90	37,957,000	37,957,000	1,463,330				731,393,940	584,399,950
'91	1,309,510,110	1,309,510,110	1,463,330				964,126,580	813,491,550
'92	1,741,670,020	1,741,670,020	1,463,330				1,186,035,410	978,284,580
'93	2,141,244,120	2,141,244,120	1,463,330				1,967,746,560	1,708,692,480
'94	68,554,160	68,554,160	1,463,330				1,606,037,290	1,335,191,380
'95	78,237,680	78,237,680	1,463,330		10,789,880	10,789,880	1,389,080,280	1,140,895,180
'96			1,210,143,790	1,206,049,650	1,290,123,000	1,290,123,000	875,768,320	599,960,130
'97			2,041,373,120	2,039,909,790	146,163,000	130,000,000	913,016,750	565,529,800
'98			1,588,359,910	1,588,359,910	608,332,820	608,332,820	640,568,210	309,646,770
'99			1,709,025,200	1,709,025,200	1,437,121,250	1,437,121,250	942,944,120	609,416,820
'00			1,425,062,290	1,425,062,290	4,537,002,240	4,536,050,990	731,494,590	362,072,120
'01			1,318,993,560	1,318,993,560	4,954,948,650	4,954,397,400	690,136,590	324,984,530
'02	58,753,584,330	58,753,584,330	1,200,374,370	1,200,374,370	7,068,656,940	7,068,656,940	386,748,660	41,014,690
'03			1,141,987,260	1,141,987,260	5,264,519,100	5,264,519,100	460,096,710	127,639,740
'04			1,153,728,640	1,153,728,640	1,121,100,000	1,121,100,000	526,492,490	201,911,400
'05			1,289,671,630	1,197,892,640	1,252,882,000	1,252,882,000	8,833,367,710	8,499,408,730
'06			1,491,488,590	1,491,488,590	2,628,100,000	809,650,000	10,610,093,100	10,273,103,690

※ '06년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에는 예탁원금회수액 50,000,000,000원이 포함된 내역임.

(단위 : 원)

용 자 원 금 회 수		기 타 민간이자수입		여유자금회수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891,738,000	891,738,000						
114,927,805,000	114,927,805,000	25,492,046,620	25,492,046,620				
102,994,970,390	102,994,970,390	20,563,018,820	20,563,018,820				
101,116,373,850	101,116,373,850	18,120,509,000	18,120,509,000	2,121,341,865,860	2,121,341,865,860	2,079,273,960	2,079,273,960
99,429,955,820	99,429,955,820	14,597,435,660	14,597,435,660	1,760,126,469,180	1,760,126,469,180	1,926,123,270	1,926,123,270
106,605,102,360	106,605,102,360	15,993,384,040	15,993,384,040	1,588,809,788,400	1,588,809,788,400	51,810,698,620	51,810,698,620

제 3-2 표 연도별 예산항목별

연 도			'82		'83	
과 목 별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합	계		128,575,926,453	117,875,117,858	150,472,371,362	137,039,828,341
경상적이전수입	보 험 료		118,590,335,836	107,891,264,377	144,078,437,765	130,647,727,905
			110,170,412,891	103,094,240,917	133,933,760,922	125,010,749,554
		개 산 보 험 료	92,436,992,938	89,166,764,221	112,908,748,816	109,238,085,389
		증 가 보 험 료	3,750,371,097	3,726,096,730	2,775,896,033	2,718,278,720
		확 정 보 험 료	9,232,002,960	8,505,880,989	12,129,405,804	10,431,913,486
		이 월 보 험 료	4,751,045,896	1,695,498,977	6,119,710,339	2,592,471,959
	가 산 금		8,419,922,945	4,797,023,460	10,144,676,773	5,636,978,351
		연 체 금	2,113,255,078	1,475,091,750	2,658,898,369	1,853,087,979
		가 산 금	310,636,632	238,888,895	481,392,973	289,996,701
		금 여 징 수 금	3,225,160,546	1,929,976,928	3,053,700,930	1,823,571,223
		제 3 자 구 상 금	278,338,995	278,338,995	488,347,283	463,561,579
		부정이득징수금	78,214,478	59,116,109	102,698,193	99,075,185
		전년도이월수입	2,360,794,134	762,087,701	3,359,639,025	1,107,685,684
		임 대 료	53,523,082	53,523,082	-	-
	기타재산수입		6,118,184,490	6,118,184,490	362,314,719	362,314,719
		기 타재 산 수 입	6,118,184,490	6,118,184,490	362,314,719	362,314,719
기 타 수 입	기 타 수 입		88,458,432	88,184,629	59,337,266	58,967,438
		기 타 잡 수 입	88,458,432	88,184,629	59,337,266	58,967,438
전 년 도 이 월 금	전 년 도 이 월 금		518,726,909	518,726,909	95,900,000	95,900,000
		전 년 도 이 월 금	518,726,909	518,726,909	95,900,000	95,900,000
타 회 계 전 입 금	예탁금반환금		3,000,007,453	3,000,007,453	4,874,918,279	4,874,918,279
		예탁금원금수입	3,000,007,453	3,000,007,453	4,874,918,279	4,874,918,279
잉 여 이 월 금	잉 여 이 월 금		1,463,333	-	1,463,333	-
		잉 여 이 월 금	1,463,333	-	1,463,333	-
관 유 물 대 여 료			258,750,000	258,750,000	1,000,000,000	1,000,000,000
일반회계전입금			-	-	-	-
기 금 전 입 금			-	-	-	-

정수결정 및 수납현황

(단위 : 원)

'84		'85		'86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182,706,878,411	165,817,041,622	228,439,500,669	205,628,583,538	269,229,130,608	240,153,782,798
170,829,925,856	153,942,530,955	222,581,483,650	199,777,760,779	267,072,206,678	238,105,601,678
159,538,488,426	147,955,308,143	209,649,740,373	193,170,741,645	252,742,271,176	231,367,167,534
134,941,597,126	130,510,563,166	177,865,302,174	170,832,875,080	213,709,526,301	204,861,576,520
2,123,555,576	2,090,458,338	2,250,251,850	2,228,129,800	2,233,289,530	2,220,191,560
14,765,405,053	12,935,660,279	19,388,940,015	16,980,273,929	22,371,292,243	20,002,147,793
7,707,930,671	2,418,626,360	10,145,246,334	3,129,462,836	14,428,163,103	4,283,251,661
11,291,437,430	5,987,222,812	12,931,743,277	6,607,019,134	14,329,935,502	6,738,434,144
2,786,297,749	1,802,896,720	3,529,142,378	2,372,034,408	3,599,008,497	2,268,076,022
553,054,995	352,753,969	664,423,821	413,789,894	607,954,810	398,456,090
3,387,705,548	1,922,395,773	3,256,949,685	1,595,493,204	3,956,828,235	1,670,170,984
582,299,428	582,299,428	526,242,425	526,542,425	471,085,050	471,084,390
80,281,598	74,192,318	133,534,390	112,169,875	162,286,270	125,612,060
3,901,798,112	1,252,684,604	4,821,450,578	1,587,289,328	5,532,772,640	1,805,034,598
-	-	-	-	-	-
204,130,368	204,130,368	464,118,772	464,118,772	888,380,460	888,380,460
204,130,368	204,130,368	464,118,772	464,118,772	888,380,460	888,380,460
74,880,109	73,901,551	97,029,417	91,298,487	267,080,140	159,800,660
74,880,109	73,901,551	97,029,417	91,298,487	267,080,140	159,800,660
-	-	14,400,000	14,400,000	-	-
-	-	14,400,000	14,400,000	-	-
10,819,478,748	10,819,478,748	4,281,005,500	4,281,005,500	-	-
10,819,478,748	10,819,478,748	4,281,005,500	4,281,005,500	-	-
-	-	-	-	-	-
-	-	-	-	-	-
1,463,330	-	1,463,000	-	1,463,330	-
777,000,000	777,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	-	-	-	-	-

연 도			'87		'88	
과 목 별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합	계		338,424,901,618	298,355,612,570	393,784,049,279	336,215,061,030
경상적이전수입	보 험 료		335,188,393,888	295,230,754,480	390,940,928,729	332,337,573,458
			317,641,538,464	287,500,577,616	368,320,666,302	325,054,863,969
		개 산 보 험 료	270,497,314,217	255,441,577,857	300,669,405,063	280,912,098,907
		증 가 보 험 료	2,315,872,790	2,291,551,370	1,981,682,210	1,959,234,250
		확 정 보 험 료	26,935,636,110	24,175,856,660	38,340,554,528	34,900,821,323
		이 월 보 험 료	17,892,715,347	5,591,591,729	27,329,019,501	7,282,709,489
	가 산 금		17,546,855,444	7,730,176,864	22,620,262,427	8,424,254,631
		연 체 금	4,531,976,865	2,302,079,309	4,789,173,346	2,536,302,471
		가 산 금	615,102,570	389,479,250	764,493,930	503,732,720
		금 여 징 수 금	4,763,710,500	1,994,807,320	6,641,783,980	2,207,806,270
		제 3 자 구 상 금	731,880,100	729,880,100	1,352,422,629	1,107,365,560
		부정이득징수금	130,051,270	117,234,040	158,839,190	131,361,130
		전년도이월수입	6,774,056,829	2,196,619,535	8,913,549,352	1,937,686,480
		임 대 료	-	-	-	-
	기 타 재 산 수 입		1,409,363,220	1,409,363,220	1,516,346,800	1,516,346,800
		기 타 재 산 수 입	1,409,363,220	1,409,363,220	1,516,346,800	1,516,346,800
기 타 수 입	기 타 수 입		448,517,620	338,331,330	325,310,420	219,595,630
		기 타 잡 수 입	448,517,620	338,331,330	325,310,420	219,595,630
전 년 도 이 월 금	전 년 도 이 월 금		377,163,540	377,163,540	-	-
		전 년 도 이 월 금	377,163,540	377,163,540	-	-
타 회 계 전 입 금	예 탁 금 반 환 금		-	-	-	-
		예탁금원금수입	-	-	-	-
잉 여 이 월 금	잉 여 이 월 금		-	-	-	-
		잉 여 이 월 금	-	-	-	-
관 유 물 대 여 료			1,463,330	-	1,463,330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기 금 전 입 금			-	-	-	-

(단위 : 원)

'89		'90		'91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495,753,780,520	424,357,284,280	698,757,541,330	601,045,073,070	900,672,943,620	788,718,000,980
492,387,992,650	421,120,663,300	660,388,030,670	562,824,019,730	848,805,569,880	737,002,725,600
461,915,595,510	410,617,604,860	605,327,963,980	550,304,463,890	787,178,264,710	720,652,614,410
368,804,901,680	353,560,593,850	497,799,897,240	480,673,190,780	653,671,319,750	628,189,040,700
1,758,524,780	1,682,937,800	3,885,262,880	3,756,980,840	4,380,086,980	4,296,713,090
51,121,363,830	47,173,743,370	57,643,861,810	53,896,673,330	80,324,380,090	74,412,331,350
40,230,805,220	8,200,329,840	45,998,942,050	11,977,618,940	48,802,477,890	13,754,529,270
30,472,397,140	10,503,058,440	55,060,066,690	12,519,555,840	61,627,305,170	16,350,111,190
5,990,904,200	3,375,929,930	24,848,634,930	3,922,438,150	9,479,782,380	4,907,680,320
870,966,040	605,798,030	976,463,100	670,152,780	1,639,172,810	1,082,360,930
7,844,682,910	2,401,840,510	9,107,321,480	3,046,802,260	10,285,932,730	3,776,497,030
2,266,935,930	1,198,728,680	1,483,381,970	1,403,306,620	2,113,895,880	1,585,602,620
108,467,270	92,897,970	268,531,220	158,037,780	425,152,420	185,525,160
13,390,440,790	2,827,863,320	18,375,833,990	3,318,818,250	37,683,368,950	4,812,445,130
-	-	-	-	-	-
1,657,208,640	1,657,208,640	1,102,486,230	1,102,486,230	1,887,860,720	1,887,860,720
1,657,208,640	1,657,208,640	1,102,486,230	1,102,486,230	1,887,860,720	1,887,860,720
503,826,980	376,123,940	731,393,940	584,399,950	964,126,580	813,491,550
503,826,980	376,123,940	731,393,940	584,399,950	964,126,580	813,491,550
203,288,920	203,288,920	37,957,000	37,957,000	1,309,510,110	1,309,510,110
203,288,920	203,288,920	37,957,000	37,957,000	1,309,510,110	1,309,510,110
-	-	-	-	-	-
-	-	-	-	-	-
-	-	-	-	-	-
-	-	-	-	-	-
1,463,330	-	1,463,330	-	1,463,330	-
1,000,000,000	1,000,000,000	7,074,496,000	7,074,496,000	8,920,425,000	8,920,425,000
-	-	29,421,714,160	29,421,714,160	38,783,988,000	38,783,988,000

연 도			'92		'93	
과 목 별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합	계		1,250,495,819,580	1,088,147,561,220	1,636,035,759,910	1,444,792,934,462
경상적이전수입	보 험 료		1,233,450,140,770	1,071,311,096,570	1,596,627,439,150	1,405,645,131,112
			1,157,381,985,090	1,049,848,234,760	1,504,197,569,480	1,375,765,856,422
		개 산 보 험 료	969,454,392,110	913,089,114,410	1,257,271,225,284	1,200,303,267,886
		증 가 보 험 료	7,206,850,420	7,081,793,700	5,057,349,670	4,939,357,860
		확 정 보 험 료	123,924,718,250	114,390,807,190	150,398,022,456	136,414,593,766
		이 월 보 험 료	56,796,024,310	15,286,519,460	91,470,972,070	34,108,636,910
	가 산 금		76,068,155,680	21,462,861,810	92,429,869,670	29,879,274,690
		연 체 금	13,777,091,740	7,656,930,760	20,207,838,360	11,610,122,540
		가 산 금	2,224,188,770	1,421,508,960	3,373,806,020	2,077,443,340
		금 여 징 수 금	17,213,327,200	5,635,397,140	17,341,589,510	6,361,764,230
		제 3 자 구 상 금	1,570,015,940	1,390,892,660	2,455,573,090	2,339,682,370
		부정이득징수금	693,745,440	337,257,390	896,220,710	430,556,730
		전년도이월수입	40,589,786,590	5,020,874,900	48,154,841,980	7,059,705,480
		임 대 료	-	-	-	-
	재 산 수 입	기타재산수입	3,886,897,050	3,886,897,050	22,808,866,750	22,808,866,750
		기 타 재 산 수 입	3,886,897,050	3,886,897,050	22,808,866,750	22,808,866,750
기 타 수 입	기 타 수 입		1,186,035,410	978,284,580	1,967,746,560	1,708,692,480
		기 타 잡 수 입	1,186,035,410	978,284,580	1,967,746,560	1,708,692,480
전 년 도 이 월 금	전 년 도 이 월 금		1,741,670,020	1,741,670,020	2,141,244,120	2,141,244,120
		전 년 도 이 월 금	1,741,670,020	1,741,670,020	2,141,244,120	2,141,244,120
타 회 계 전 입 금	예탁금반환금		-	-	-	-
		예탁금원금수입	-	-	-	-
잉 여 이 월 금	잉 여 이 월 금		-	-	-	-
		잉 여 이 월 금	-	-	-	-
관 유 물 대 여 료			1,463,330	-	1,463,330	-
관 유 물 매 각 대			-	-	-	-
일반회계전입금			10,229,613,000	10,229,613,000	12,489,000,000	12,489,000,000
기 금 전 입 금			-	-	-	-
건 물 대 여 료			-	-	-	-

(단위 : 원)

'94		'95		'96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1,521,986,748,150	1,291,418,110,860	1,702,530,716,650	1,453,523,667,630	1,983,446,224,660	1,675,402,057,880
1,471,335,826,240	1,241,039,498,190	1,412,634,122,600	1,163,876,722,010	1,776,430,525,290	1,468,812,424,660
1,365,697,434,730	1,207,205,949,280	1,305,375,555,100	1,130,354,696,560	1,639,167,434,550	1,423,109,811,950
1,110,961,207,460	1,058,408,684,930	1,007,809,552,950	961,147,982,680	1,296,280,017,480	1,234,861,138,010
4,520,579,270	4,377,761,040	2,506,646,030	2,301,182,540	4,623,620,390	4,507,557,640
135,951,934,740	116,125,058,430	162,290,352,440	138,025,390,430	172,575,325,270	155,364,283,750
114,263,713,260	28,294,444,880	132,770,003,680	28,880,140,910	165,688,471,410	28,376,832,550
105,638,391,510	33,833,548,910	107,258,567,500	33,522,025,450	137,263,090,740	45,702,612,710
18,577,377,210	11,215,225,700	19,080,044,620	13,270,154,220	30,979,127,650	18,361,762,080
4,166,588,920	2,210,800,960	4,082,874,020	2,104,482,410	5,989,176,870	3,536,391,840
19,896,787,990	6,249,168,170	16,469,870,460	4,868,721,940	21,297,371,740	7,475,096,820
2,766,097,260	2,504,335,050	2,802,833,560	2,747,034,130	5,490,300,710	5,052,727,980
920,681,590	453,069,570	579,882,040	405,463,680	1,514,866,250	660,713,760
59,310,858,540	11,200,949,460	64,243,062,800	10,126,169,070	71,992,247,520	10,615,920,230
-	-	-	-	-	-
35,207,377,130	35,207,377,130	13,603,477,880	13,603,477,880	21,323,654,250	21,323,654,250
35,207,377,130	35,207,377,130	13,603,477,880	13,603,477,880	21,323,654,250	21,323,654,250
1,606,037,290	1,335,191,380	1,389,080,280	1,140,895,180	875,768,320	599,960,130
1,606,037,290	1,335,191,380	1,389,080,280	1,140,895,180	875,768,320	599,960,130
68,554,160	68,554,160	78,237,680	78,237,680	-	-
68,554,160	68,554,160	78,237,680	78,237,680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3,330	-	1,463,330	-	1,463,330	-
-	-	10,789,880	10,789,880	1,290,123,000	1,143,959,180
13,767,490,000	13,767,490,000	7,034,734,000	7,034,734,000	9,000,000,000	9,000,000,000
-	-	267,778,811,000	267,778,811,000	173,316,010,010	173,316,010,010
-	-	-	-	1,208,680,460	1,206,049,650

연 도			'97		'98	
과 목 별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합	계		2,367,197,216,470	2,020,103,496,030	2,119,666,072,180	1,719,087,067,930
경상적이전 수입	보 험 료		2,223,104,867,770	1,876,376,260,610	1,894,020,092,770	1,493,773,811,210
			2,069,503,003,570	1,818,957,926,980	1,739,739,372,040	1,451,435,640,010
		개 산 보 험 료	1,690,791,620,570	1,593,845,315,310	1,359,124,372,090	1,256,221,713,520
		증 가 보 험 료	3,848,169,760	3,802,683,720	2,263,991,360	2,205,135,990
		확 정 보 험 료	207,268,908,470	188,728,475,900	188,265,564,230	158,653,879,580
	가 산 금	이 월 보 험 료	167,594,304,770	32,581,452,050	190,085,444,360	42,338,171,200
			153,601,864,200	57,418,333,630	154,280,720,730	34,354,910,920
		연 체 금	27,708,075,540	19,251,410,860	22,936,487,800	13,924,334,310
		가 산 금	5,215,340,210	3,371,037,490	5,680,159,110	2,457,271,320
		금 여 징 수 금	25,790,791,780	9,055,493,110	29,476,230,660	7,814,529,260
		제 3 자 구 상 금	16,448,164,210	13,254,263,220	14,796,123,580	7,033,501,820
		부당이득징수금	2,671,086,670	1,156,039,460	3,221,470,080	1,405,054,690
		전년도이월수입	75,768,405,790	11,330,089,490	78,073,137,530	9,681,932,810
		임 대 료	-	-	-	-
		체 납 처 분 비	-	-	97,111,970	31,546,990
재 산 수 입	기타재 산수입		30,107,795,830	30,107,795,830	14,189,718,470	14,189,718,470
			30,107,795,830	30,107,795,830	14,189,718,470	14,189,718,470
기 타 수 입	기 타 수 입		913,016,750	565,529,800	640,568,210	309,646,770
		기 타 잡 수 입	913,016,750	565,529,800	640,568,210	309,646,770
전 년 도 이 월 금	전 년 도 이 월 금		-	-	-	-
			-	-	-	-
타 회 계 전 입 금	예탁금반환금		-	-	-	-
		예탁금원금수입	-	-	-	-
잉 여 이 월 금	잉 여 이 월 금		-	-	-	-
		잉 여 이 월 금	-	-	-	-
관 유 물 대 여 료			1,463,330	-	-	-
관 유 물 매 각 대			146,163,000	130,000,000	608,332,820	606,531,570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0,884,000,000	10,884,000,000	11,619,000,000	11,619,000,000
기 금 전 입 금			100,000,000,000	100,000,000,000	197,000,000,000	197,000,000,000
건 물 대 여 료			2,039,909,790	2,039,909,790	1,588,359,910	1,588,359,910
용 자 원 금 회 수			-	-	-	-

(단위 : 원)

'99		'00		'01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2,062,243,044,550	1,612,116,030,910	2,504,684,703,750	1,955,454,630,260	2,877,066,368,730	2,364,462,162,840
2,026,806,914,110	1,577,015,179,020	2,473,781,386,770	1,924,920,687,000	2,843,738,115,720	2,331,499,613,140
1,856,918,811,740	1,530,007,146,330	2,289,191,371,470	1,876,394,611,800	2,623,610,576,640	2,256,090,391,980
1,469,918,547,430	1,379,688,837,920	1,778,140,862,450	1,623,559,642,740	1,988,211,358,410	1,863,582,504,050
6,784,350,010	6,554,630,070	6,890,885,170	6,583,963,980	4,794,669,240	4,584,622,220
153,406,846,280	100,178,443,790	245,875,618,230	188,552,607,470	282,572,571,010	256,466,120,430
226,809,068,020	43,585,234,550	258,284,005,620	57,698,397,610	348,031,977,980	131,457,145,280
169,888,102,370	47,008,032,690	184,590,015,300	48,527,075,200	220,127,539,080	75,409,221,160
26,582,802,040	16,089,930,720	23,454,087,340	12,784,054,790	34,473,619,650	21,001,231,230
9,996,577,730	3,598,586,510	12,354,516,630	5,163,545,980	7,079,119,820	3,485,282,600
21,602,534,590	6,091,869,940	29,540,407,910	8,017,653,300	35,105,406,690	13,325,101,170
12,525,635,090	8,239,136,010	12,367,204,380	7,474,623,990	16,085,124,230	10,650,091,410
2,638,808,970	1,026,579,070	2,844,823,170	1,391,595,240	7,758,270,630	3,979,156,840
96,437,147,480	11,918,061,080	103,902,115,060	13,648,718,900	119,330,567,710	22,836,555,380
-	-	-	-	-	-
104,596,470	43,869,360	126,860,810	45,883,000	295,430,350	131,802,530
7,539,039,870	7,539,039,870	15,060,057,860	15,060,057,860	17,188,116,210	17,188,116,210
7,539,039,870	7,539,039,870	15,060,057,860	15,060,057,860	17,188,116,210	17,188,116,210
942,944,120	609,416,820	731,494,590	362,072,120	690,136,590	324,984,530
942,944,120	609,416,820	731,494,590	362,072,120	690,136,590	324,984,5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7,121,250	1,435,370,000	4,537,002,240	4,536,050,990	4,954,948,650	4,954,397,400
8,714,000,000	8,714,000,000	9,149,700,000	9,149,700,000	8,284,320,000	8,284,320,000
15,094,000,000	15,094,000,000	-	-	-	-
1,709,025,200	1,709,025,200	1,425,062,290	1,425,062,290	1,318,993,560	1,318,993,560
-	-	-	-	891,738,000	891,738,000

연 도			'02		'03	
과 목 별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합	계		3,209,432,209,150	2,715,625,227,150	3,546,595,731,260	3,029,808,946,400
사 회 보 장 기 여 금	고 용 주 부 담 금		2,744,580,997,680	2,395,318,682,900	2,821,001,077,230	2,465,057,417,790
			2,744,580,997,680	2,395,318,682,900	2,821,001,077,230	2,465,057,417,790
		개 산 보 험 료	2,181,592,824,600	2,048,021,958,140	2,187,064,985,020	2,053,121,341,710
		증 가 보 험 료	5,093,366,950	4,889,695,420	8,281,548,510	7,974,928,280
		확 정 보 험 료	279,527,347,440	249,654,754,590	347,964,239,180	302,149,233,000
		이 월 보 험 료	278,367,458,690	92,752,274,750	277,690,304,520	101,811,914,800
경 상 이 전 수 입	위 약 금	위 약 금	-	-	48,849,720	48,849,720
	가 산 금	가 산 금	8,718,141,230	5,241,703,900	10,428,054,930	5,601,075,480
	기타경상이전수입	연 체 금	31,353,105,580	21,323,369,990	30,194,936,240	23,309,823,180
		금 여 징 수 금	46,705,307,640	17,855,364,280	53,852,539,550	20,138,681,280
		제 3 자 구 상 금	19,425,801,400	11,536,981,810	22,398,516,470	11,152,995,990
		부정이득징수금	6,069,559,050	4,296,033,350	9,887,172,650	6,979,012,580
		전년도이월수입	117,166,316,590	25,170,698,950	125,619,893,440	24,858,989,840
		체 납 처 분 비	369,980,560	185,126,520	325,438,760	155,305,240
		기 타	542,742,850	542,742,850	956,579,360	956,579,360
재 산 수 입	관 유 물 대 여 료	토지, 건물대여료	1,200,374,370	1,200,374,370	1,141,987,260	1,141,987,260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민간이자수입	25,492,046,620	25,492,046,620	20,563,018,820	20,563,018,820
	기 타 재 산 수 입	기 타 재 산 수 입	15,342,400,650	15,342,400,650	8,400,240,630	8,400,240,630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기 타 수 입	386,748,660	41,014,690	460,096,710	127,639,740
		기 타 잡 수 입	386,748,660	41,014,690	460,096,710	127,639,740
전 년 도 이 월 금	전 년 도 이 월 금		58,753,584,330	58,753,584,330	-	-
		전 년 도 이 월 금	58,753,584,330	58,753,584,330	-	-
관 유 물 매 각 대			7,068,656,940	7,068,656,940	5,264,519,100	5,264,519,100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1,328,640,000	11,328,640,000	14,457,840,000	14,457,840,000
기 금 전 입 금			-	-	-	-
용 자 원 금 회 수			114,927,805,000	114,927,805,000	102,994,970,390	102,994,970,390
여 유 자 금 회 수			-	-	318,600,000,000	318,600,000,000
공공기금예탁금원금회수			-	-	-	-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과목체계를 '05년말 체계로 재정리함.

※ '03년까지 자료는 기금계정 결산 자료, '04년은 기금 계정과 적립금 계정 통합자료, '05. 1. 1. 적립금계정 폐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체 자료임

(단위 : 원)

'04		'05		'06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5,993,303,982,030	5,363,935,831,830	5,999,229,901,990	5,263,916,367,520	6,684,570,938,140	5,747,179,986,090
3,336,497,854,070	2,896,117,975,470	3,614,979,014,230	3,182,164,240,63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3,336,497,854,070	2,896,117,975,470	3,614,979,014,230	3,182,164,240,63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2,656,947,314,870	2,482,808,791,780	2,848,969,711,200	2,699,789,101,230	3,350,930,051,170	3,199,839,367,570
5,416,332,830	5,210,322,810	88,794,610	88,194,320	16,271,080	15,336,880
395,434,216,550	315,358,893,790	410,015,017,620	361,973,277,180	483,861,196,640	435,339,053,830
278,699,989,820	92,739,967,090	355,905,490,800	120,313,667,900	333,566,764,770	114,307,321,240
273,037,565,970	84,373,875,460	393,536,980,100	91,463,957,200	640,143,501,960	123,781,193,460
-	-	-	-	-	-
13,744,082,400	5,314,523,500	21,380,815,710	8,158,397,690	20,659,013,150	8,546,594,990
25,901,909,650	20,457,568,630	118,593,731,280	24,082,802,230	68,028,317,240	21,791,410,470
51,016,883,490	16,641,245,420	47,987,487,620	14,916,929,600	45,290,943,900	15,508,714,670
32,982,902,930	13,844,407,910	35,716,367,280	14,753,733,310	225,252,383,890	18,717,590,900
8,919,680,010	5,240,746,760	14,957,747,130	7,890,899,910	19,432,831,830	10,594,440,980
140,248,433,380	22,778,934,780	154,553,361,020	21,489,655,890	249,353,904,590	37,198,871,000
223,392,110	96,166,460	310,456,710	134,525,220	1,292,337,010	590,300,220
282,000	282,000	37,013,350	37,013,350	10,833,770,350	10,833,270,230
143,345,615,830	143,345,615,830	104,907,269,680	104,815,490,690	100,889,370,040	100,889,370,040
1,153,728,640	1,153,728,640	1,289,671,630	1,197,892,640	1,491,488,590	1,491,488,590
18,120,509,000	18,120,509,000	14,597,435,660	14,597,435,660	15,993,384,040	15,993,384,040
124,071,378,190	124,071,378,190	89,020,162,390	89,020,162,390	83,404,497,410	83,404,497,410
526,492,490	201,911,400	8,833,367,710	8,499,408,730	10,610,093,100	10,273,103,690
526,492,490	201,911,400	8,833,367,710	8,499,408,730	10,610,093,100	10,273,103,690
-	-	-	-	-	-
-	-	-	-	-	-
1,121,100,000	1,121,100,000	1,252,882,000	1,252,882,000	2,628,100,000	809,650,000
14,237,840,000	14,237,840,000	14,237,840,000	14,237,840,000	14,700,000,000	14,700,000,000
-	-	-	-	-	-
101,116,373,850	101,116,373,850	99,429,955,820	99,429,955,820	106,605,102,360	106,605,102,360
2,121,341,865,860	2,121,341,865,860	1,760,126,469,180	1,760,126,469,180	1,588,809,788,400	1,588,809,788,400
-	-	-	-	50,000,000,000	50,000,000,000
2,079,273,960	2,079,273,960	1,926,123,270	1,926,123,270	1,810,698,620	1,810,698,620

제 3-3 표 연 도 별

구 분 연 도	적 용 사 업 장 수	적 용 근 로 자 수			징
		계 (명)	상 용(명)	일 용(명)	계 (A)
'69	3,696	683,377	683,377	-	2,798,578,824
'70	5,583	779,053	779,053	-	3,691,602,624
'71	7,799	833,441	833,441	-	4,730,408,007
'72	9,375	1,077,632	987,856	89,776	6,485,905,519
'73	13,924	1,319,501	1,166,650	152,851	7,347,192,621
'74	17,551	1,517,787	1,353,167	164,620	10,842,576,010
'75	21,369	1,836,209	1,603,354	232,855	16,230,791,729
'76	28,445	2,269,796	1,970,611	299,185	23,218,669,736
'77	38,889	2,646,542	2,183,763	462,779	32,056,454,798
'78	49,947	3,105,757	2,465,542	540,215	49,925,705,695
'79	55,763	3,607,595	2,966,231	641,364	75,654,634,609
'80	63,100	3,752,975	3,110,548	642,427	91,676,097,493
'81	59,029	3,456,746	2,856,788	599,958	103,919,528,862
'82	54,159	3,464,977	2,953,778	511,199	128,575,926,453
'83	60,213	3,941,152	3,166,873	774,279	150,472,371,362
'84	64,704	4,384,589	3,379,647	1,004,942	182,706,878,411
'85	66,803	4,495,185	3,421,917	1,073,268	228,439,500,669
'86	70,865	4,749,342	3,525,789	1,223,553	269,229,130,608
'87	83,536	5,356,546	3,876,348	1,480,198	338,424,901,618
'88	101,445	5,743,970	4,238,206	1,505,764	393,784,049,279
'89	118,894	6,687,821	4,512,509	2,175,312	495,753,780,520
'90	129,687	7,542,752	5,130,412	2,412,340	698,757,541,330
'91	146,284	7,922,704	5,295,694	2,627,010	900,672,943,620
'92	154,820	7,058,704	5,147,326	1,911,378	1,250,495,819,580
'93	163,152	6,942,527	5,125,635	1,816,892	1,636,035,759,910
'94	172,871	7,273,132	5,294,503	1,978,629	1,521,986,748,150
'95	186,021	7,893,727	5,652,737	2,240,990	1,702,530,716,650
'96	210,226	8,156,894	5,702,971	2,453,923	1,983,446,224,660
'97	227,564	8,236,641	5,692,205	2,544,436	2,367,197,216,470
'98	215,539	7,582,479	5,785,276	1,797,203	2,119,666,072,180
'99	249,405	7,441,160	5,628,458	1,812,702	2,062,243,044,550
'00	706,231	9,485,557	7,256,838	2,228,719	2,504,684,703,750
'01	909,461	10,581,186	8,142,537	2,438,649	2,877,066,368,730
'02	1,002,263	10,571,279	7,801,809	2,769,470	3,209,432,209,150
'03	1,006,549	10,599,345	7,966,004	2,633,341	3,546,595,731,260
'04	1,039,208	10,473,090	8,463,404	2,009,686	3,871,962,116,170
'05	1,175,606	12,069,599	8,931,739	3,137,860	4,239,103,432,810
'06	1,292,696	11,688,797	9,141,043	2,547,754	5,095,761,149,740

적용 및 수지현황

(단위 : 개소, 원)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보 험 료	가 산 금	기타수입 및 재 산 수 입	전년도이월 및 타회계전입금	계 (B)	보험료 (C)
2,220,928,953	143,369,021	59,857,807	374,423,043	2,351,192,453	1,840,761,024
3,328,244,088	283,245,281	80,113,255	-	3,104,020,708	2,836,051,603
3,828,390,110	434,004,941	249,627,356	218,385,600	3,805,605,180	3,119,060,504
4,860,269,374	859,946,941	591,018,878	174,670,326	5,379,676,399	4,136,725,202
5,821,529,611	975,952,829	549,710,181	-	6,474,053,714	5,300,945,326
9,176,586,852	755,881,511	637,044,318	273,063,329	9,331,029,404	8,001,360,549
13,997,392,022	1,117,147,367	869,831,123	246,421,217	14,338,053,180	12,698,357,195
19,966,038,769	1,433,292,395	1,280,067,296	539,271,276	21,347,471,538	18,708,868,829
27,548,842,869	1,761,649,057	1,807,502,103	938,460,769	30,186,301,482	26,344,801,028
40,357,138,307	1,782,305,813	2,608,673,307	5,177,588,268	47,528,213,511	39,446,051,948
60,909,143,802	3,228,692,162	4,138,071,952	7,378,726,693	71,717,864,477	59,137,940,199
73,222,145,120	5,871,102,051	6,069,309,025	6,513,541,297	86,066,630,104	69,411,340,053
86,597,523,554	6,596,865,814	6,641,955,331	4,083,184,163	96,164,281,142	81,307,060,071
110,170,412,891	8,419,922,945	9,208,113,708	777,476,909	117,875,117,858	103,094,240,917
133,933,760,992	10,144,676,773	423,115,318	5,970,818,279	137,039,828,341	125,010,749,554
159,538,488,426	11,291,437,430	280,473,807	11,596,478,748	165,817,041,622	147,955,308,143
209,649,740,373	12,931,743,277	561,148,189	5,296,868,830	205,628,583,538	193,170,741,645
252,742,271,176	14,329,935,502	1,156,923,930	1,000,000,000	240,153,782,798	231,367,167,534
317,641,538,464	17,546,855,444	1,859,344,170	1,377,163,540	298,355,612,570	287,500,577,616
368,320,666,302	22,620,262,427	1,843,120,550	1,000,000,000	336,215,061,030	325,054,863,969
461,915,595,510	30,472,397,140	2,162,498,950	1,203,288,920	424,357,284,280	410,617,604,860
605,327,963,980	55,060,066,690	1,835,343,500	36,534,167,160	601,045,073,070	550,304,463,890
787,178,264,710	61,627,305,170	2,853,450,630	49,013,923,110	788,718,000,980	720,652,614,410
1,157,381,985,090	76,068,155,680	5,074,395,790	11,971,283,020	1,088,147,561,220	1,049,848,234,760
1,504,197,569,480	92,429,869,670	24,778,076,640	14,630,244,120	1,444,792,934,462	1,375,765,856,422
1,365,697,434,730	105,638,391,510	36,814,877,750	13,836,044,160	1,291,418,110,860	1,207,205,949,280
1,305,375,555,100	107,258,567,500	15,004,811,370	274,891,782,680	1,453,523,667,630	1,130,354,696,560
1,639,167,434,550	137,263,090,740	24,699,689,360	182,316,010,010	1,675,402,057,880	1,423,109,811,950
2,069,503,003,570	153,601,864,200	33,208,348,700	110,884,000,000	2,020,103,496,030	1,818,957,926,980
1,739,739,372,040	154,280,720,730	17,026,979,410	208,619,000,000	1,719,087,067,930	1,451,435,640,010
1,856,918,811,740	169,888,102,370	11,628,130,440	23,808,000,000	1,612,116,030,910	1,530,007,146,330
2,289,191,371,470	184,590,015,300	21,753,616,980	9,149,700,000	1,955,454,630,260	1,876,394,611,800
2,623,610,576,640	220,127,539,080	17,878,252,800	15,450,000,210	2,364,462,162,840	2,256,090,391,980
2,744,580,997,680	229,808,212,050	15,729,149,310	219,313,850,110	2,715,625,227,150	2,395,318,682,900
2,821,001,077,230	252,706,552,040	8,860,337,340	464,027,764,650	3,029,808,946,400	2,465,057,417,790
3,336,497,854,070	273,037,283,970	248,189,138,130	14,237,840,000	3,242,593,965,970	2,896,117,975,470
3,614,979,014,230	21,380,815,710	588,505,762,870	14,237,840,000	3,503,789,898,340	3,182,164,240,630
4,168,374,283,660	20,659,013,150	892,027,852,930	14,700,000,000	4,158,370,197,690	3,749,501,079,520

구 분 연 도	수 납 액			수 납 률 (B/A)	지 계 (D)
	가 산 금	기타수입 및 재산수입	전년도이월및 타회계전입금		
'69	76,150,579	59,857,807	374,423,043	84.0	1,733,143,306
'70	187,855,850	80,113,255	-	84.1	2,408,741,805
'71	218,531,720	249,627,356	218,385,600	80.4	3,104,062,890
'72	477,261,993	591,018,878	174,670,326	82.9	4,376,215,303
'73	623,398,207	549,710,181	-	88.1	5,201,279,570
'74	419,561,208	637,044,318	273,063,329	86.1	7,782,008,889
'75	523,443,645	869,831,123	246,421,217	88.3	12,232,438,188
'76	819,264,137	1,280,067,296	539,271,276	91.9	14,369,457,547
'77	1,115,599,701	1,787,439,984	938,460,769	94.2	24,018,744,985
'78	1,484,823,426	2,608,673,307	3,988,664,830	95.2	35,302,858,034
'79	2,659,784,745	4,138,071,952	5,782,067,581	94.8	61,221,806,149
'80	4,074,121,708	6,069,090,379	6,512,077,964	93.9	72,034,869,116
'81	4,134,247,884	6,639,789,024	4,083,184,163	92.5	88,385,011,342
'82	4,797,023,460	9,206,376,572	777,476,909	91.7	112,823,879,123
'83	5,636,978,351	421,282,157	5,970,818,279	91.1	134,133,829,038
'84	5,987,222,812	278,031,919	11,596,478,748	90.8	162,083,011,479
'85	6,607,019,134	555,417,259	5,295,405,500	90.0	201,908,244,702
'86	6,738,434,144	1,048,181,120	1,000,000,000	89.2	234,012,482,299
'87	7,730,176,864	1,747,694,550	1,377,163,540	88.2	266,263,544,220
'88	8,424,254,631	1,735,942,430	1,000,000,000	85.4	328,178,853,500
'89	10,503,058,440	2,033,332,060	1,203,288,920	85.6	412,726,331,730
'90	12,519,555,840	1,686,886,180	36,534,167,160	86.0	587,326,134,660
'91	16,350,111,190	2,701,352,270	49,013,923,110	87.6	776,676,875,450
'92	21,462,861,810	4,865,181,630	11,971,283,020	87.0	1,027,915,037,215
'93	29,879,274,690	24,517,559,230	14,630,244,120	88.3	1,046,697,115,450
'94	33,833,548,910	36,542,568,510	13,836,044,160	84.9	1,125,442,880,620
'95	33,522,025,450	14,755,162,940	274,891,782,680	85.4	1,407,092,182,760
'96	45,702,612,710	24,273,623,210	182,316,010,010	84.5	1,615,421,882,390
'97	57,418,333,630	32,843,235,420	110,884,000,000	85.3	1,834,568,459,740
'98	42,338,171,200	16,694,256,720	208,619,000,000	81.1	1,645,857,710,390
'99	47,008,032,690	11,292,851,890	23,808,000,000	78.2	1,499,169,035,590
'00	48,527,075,200	21,383,243,260	9,149,700,000	78.1	1,684,679,190,750
'01	75,409,221,160	17,513,100,740	15,449,448,960	82.3	1,999,718,036,650
'02	85,609,278,800	15,383,415,340	219,313,850,110	84.6	2,522,677,120,020
'03	92,195,883,590	8,527,880,370	464,027,764,650	85.4	2,960,730,115,310
'04	84,373,593,460	247,864,557,040	14,237,840,000	83.7	3,368,809,362,650
'05	8,158,397,690	299,229,420,020	14,237,840,000	82.7	3,675,151,057,470
'06	8,546,594,990	385,622,523,180	14,700,000,000	81.6	3,861,232,833,970

(단위: 원)

출 액			수 지 율		비 고
보험급여(E)	업 무 비	반 환 금	D/B	E/C	
1,306,542,681	426,600,625		73.7	71.0	※ 일용은 상용으로 환산한 수치임. ※ '76과 '77, '78년도 의 보험급여액은 지출원인행위 금액임. ※ 업무비에는 보험시설 및 재해예방비가 포함되었음. ※ '04년 이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결산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를 제외한 산정
1,843,599,713	565,142,092		77.6	65.0	
2,539,336,601	564,726,289		81.6	81.4	
3,456,740,887	919,474,416		81.3	83.6	
4,368,090,297	833,189,273		80.3	82.4	
6,516,929,206	1,265,079,683		83.4	81.4	
10,380,390,721	1,852,047,467		85.3	81.7	
12,670,839,899	1,693,617,648		67.3	67.7	
21,618,770,449	2,399,974,536		79.6	82.1	
30,418,532,981	4,884,325,053		74.3	77.1	
53,976,684,427	7,423,242,624		85.6	91.3	
62,504,522,834	9,530,346,292		83.7	90.0	※ 가산금 목에 있던 연체금, 급여징수금등이 '05년 부터 기타경상이전수입 목으로 변경됨 ※ 보험급여에는 연말 여 입 금액의 일부가 반영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76,219,581,029	12,165,430,313	976,543,755	91.9	93.7	
97,140,814,082	15,683,065,041	1,591,005,332	95.7	94.2	
117,610,686,323	16,523,142,715	1,917,774,474	97.9	94.1	
142,176,576,812	19,906,434,667	2,968,184,159	97.7	96.1	
185,998,958,370	15,909,286,332	3,108,465,700	98.2	96.3	
214,730,693,470	19,281,788,829	4,049,618,170	97.4	92.8	
241,255,121,540	25,008,422,680	4,591,519,150	89.2	83.9	
296,994,666,360	31,177,287,140	5,459,432,080	97.6	91.4	
369,305,325,880	43,421,005,850	6,101,808,680	97.3	89.9	
539,351,470,010	47,974,664,650	6,705,787,700	97.7	98.0	
701,514,052,030	75,162,823,420	5,818,464,000	98.5	97.3	
931,564,168,860	96,350,868,355	6,744,504,030	94.5	88.7	
872,530,590,480	174,166,524,970	10,262,531,840	72.4	63.4	
998,562,724,840	126,880,155,780	15,937,510,720	87.1	82.7	
1,133,577,490,290	273,514,693,470	13,937,873,950	96.8	100.3	
1,355,317,130,080	260,084,752,310	11,140,883,050	96.4	95.2	
1,556,041,967,620	278,526,492,120	13,993,596,480	90.8	85.5	
1,451,065,987,070	194,791,723,320	14,750,036,640	95.7	100.0	
1,274,225,648,770	224,943,386,820	14,947,433,580	93.0	83.3	
1,456,265,790,350	228,413,400,400	23,917,985,770	86.2	77.6	
1,744,560,198,260	255,157,838,390	24,033,628,910	84.6	77.3	
2,020,335,492,620	502,341,627,400	31,403,447,250	92.9	84.3	
2,481,814,399,410	426,057,891,380	52,857,824,520	97.7	100.7	
2,860,050,916,910	448,293,670,490	60,464,775,250	103.9	98.8	
3,025,779,270,990	571,990,336,510	77,381,449,970	104.9	95.1	
3,163,793,211,870	609,028,784,400	88,410,837,700	92.9	84.4	

제 3-4 표 '06년도 지역

구 분 연 도		보 험			
		징수결정총액	총 당 액	5% 공제액	징수결정액
합	계	4,514,041,462,010	263,267,011,780	82,400,166,570	4,168,374,283,660
서울 지 역 본 부	서울 본부	255,902,297,290	7,299,152,040	9,042,730,380	239,560,414,870
	서울 강남	324,393,426,160	24,816,916,390	7,473,098,960	292,103,410,810
	서울 동부	123,730,930,990	7,510,515,630	2,147,033,890	114,073,381,470
	서울 서부	85,885,439,440	5,130,619,170	1,614,752,850	79,140,067,420
	서울 남부	126,072,503,540	8,331,180,980	2,635,180,300	115,106,142,260
	서울 북부	48,727,420,420	2,742,688,930	540,923,340	45,443,808,150
	서울 관악	87,132,172,250	6,234,249,830	1,024,737,390	79,873,185,030
	의 정 부	88,406,148,330	5,802,780,500	543,982,210	82,059,385,620
	춘 천	24,798,953,780	1,945,555,510	252,554,900	22,600,843,370
	강 릉	26,147,624,200	2,272,539,300	303,553,250	23,571,531,650
	원 주	24,802,807,530	2,620,721,070	367,158,690	21,814,927,770
	태 백	94,179,667,840	7,029,772,470	3,717,504,230	83,432,391,140
	영 월	12,406,918,180	1,015,866,010	135,622,640	11,255,429,530
부산 지 역 본 부	부산 본부	121,533,263,140	7,055,656,350	1,578,941,380	112,898,665,410
	부산 동부	48,087,419,330	2,251,765,630	505,910,970	45,329,742,730
	부산 북부	66,712,651,970	2,143,748,430	578,692,820	63,990,210,720
	창 원	183,578,896,480	9,659,338,260	3,569,287,480	170,350,270,740
	울 산	252,765,851,520	16,231,377,610	7,204,589,250	229,329,884,660
	양 산	95,274,502,610	4,693,376,910	859,223,990	89,721,901,710
	진 주	42,533,174,480	4,727,397,380	459,702,030	37,346,075,070
	통 영	117,342,757,490	2,619,186,660	3,446,456,290	111,277,114,540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91,035,324,030	6,011,151,850	1,153,910,190	83,870,261,990
	대구 서부	45,486,272,750	1,932,854,290	440,600,350	43,112,818,110
	대구 북부	50,943,720,460	2,832,722,890	448,683,230	47,662,314,340
	포 향	112,700,204,700	5,138,280,950	2,335,057,830	105,226,865,920

※ 징수결정액=징수결정총액-(총당액+5%공제액). 근로복지공단 수입액만 산정함(제3-5표~제3-7표도 같은 기준임)

본부 및 지사별 징수현황

(단위 : 원)

료	기 타 징 수 금			
수 납 액	징수결정총액	총 당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3,749,501,079,520	635,638,398,310	5,322,298,310	630,316,100,000	113,616,802,090
231,515,433,420	15,114,692,470	616,008,480	14,498,683,990	2,626,353,140
269,571,739,200	23,312,218,500	415,528,080	22,896,690,420	4,558,606,180
96,747,186,740	20,042,207,280	102,806,450	19,939,400,830	3,192,224,060
71,653,938,380	14,860,419,320	53,831,870	14,806,587,450	2,109,620,060
105,792,392,470	17,629,191,350	297,961,680	17,331,229,670	2,942,126,650
38,145,944,150	13,051,933,850	71,037,880	12,980,895,970	1,980,382,920
69,799,116,620	15,477,866,460	151,088,270	15,326,778,190	2,903,030,690
64,988,923,710	24,384,582,860	154,010,470	24,230,572,390	3,864,820,940
20,585,142,470	8,072,436,870	43,306,910	8,029,129,960	1,208,579,400
20,159,569,680	9,106,714,950	37,106,650	9,069,608,300	1,605,064,860
19,601,731,540	4,154,222,230	50,352,580	4,103,869,650	797,949,640
81,738,857,810	5,559,300,870	34,027,550	5,525,273,320	972,978,850
10,053,021,670	4,741,233,330	12,057,570	4,729,175,760	1,085,044,230
100,816,150,460	20,868,815,610	120,342,720	20,748,472,890	3,032,746,740
38,714,748,160	10,514,921,940	70,302,650	10,444,619,290	1,440,882,010
56,904,025,910	10,607,314,980	36,329,830	10,570,985,150	1,859,246,570
154,971,763,240	22,777,768,030	140,257,490	22,637,510,540	3,387,439,610
216,081,584,150	18,050,597,850	160,420,520	17,890,177,330	4,149,222,600
77,950,389,410	16,843,448,740	102,426,920	16,741,021,820	2,823,154,230
32,199,929,540	9,254,138,990	96,323,770	9,157,815,220	1,281,748,290
106,695,088,430	7,370,886,250	147,979,940	7,222,906,310	1,787,278,670
74,321,127,590	16,622,875,660	110,051,700	16,512,823,960	2,823,141,840
39,114,465,920	7,698,365,750	45,700,720	7,652,665,030	1,394,494,580
41,614,600,760	10,498,273,410	29,789,290	10,468,484,120	1,523,350,070
97,098,697,250	15,051,938,190	145,123,710	14,906,814,480	2,952,556,910

구 분 연 도		보 험			
		징수결정총액	총 당 액	5% 공제액	징수결정액
대구	구 미	55,179,591,850	3,100,275,630	912,805,560	51,166,510,660
지역	영 주	13,644,290,720	1,102,614,150	208,869,100	12,332,807,470
본부	안 동	14,640,532,110	1,692,426,280	173,701,280	12,774,404,550
	경인 본부	125,711,616,420	6,834,465,540	1,421,873,900	117,455,276,980
경	인천 북부	98,836,015,940	4,716,547,130	1,262,525,700	92,856,943,110
인	수 원	143,434,996,370	7,955,907,960	2,092,266,350	133,386,822,060
지	부 천	80,855,011,150	3,839,813,520	512,197,550	76,503,000,080
역	안 양	95,559,854,910	5,853,376,970	1,904,575,470	87,801,902,470
본	안 산	146,852,969,280	7,201,762,910	1,391,369,390	138,259,836,980
부	성 남	158,960,865,610	8,457,742,090	3,029,921,540	147,473,201,980
	평 텍	138,694,677,120	6,706,782,490	2,329,764,170	129,658,130,460
	고 양	74,270,796,000	7,180,790,090	736,741,420	66,353,264,490
광	광주 본부	165,981,936,650	12,287,367,150	3,375,323,040	150,319,246,460
주	전 주	67,240,726,290	3,737,115,820	1,220,519,870	62,283,090,600
지	익 산	24,341,605,590	1,124,035,560	299,788,280	22,917,781,750
역	군 산	28,163,797,000	1,583,494,870	513,279,280	26,067,022,850
본	목 포	47,231,228,710	2,826,044,150	756,207,920	43,648,976,640
부	여 수	61,033,960,440	3,174,705,310	1,124,791,250	56,734,463,880
	제 주	25,118,187,380	1,684,308,430	331,634,370	23,102,244,580
	대전 본부	122,981,706,640	9,350,543,980	2,246,699,590	111,384,463,070
대전	청 주	86,584,135,550	5,316,981,970	1,293,427,210	79,973,726,370
지역	천 안	110,900,210,720	3,929,119,100	1,886,605,070	105,084,486,550
본부	충 주	37,783,179,350	2,487,871,910	404,719,770	34,890,587,670
	보 령	39,459,221,300	3,073,503,730	590,670,650	35,795,046,920
본	부				
노	동 부				

(단위 : 원)

료	기 타 징 수 금			
수 납 액	징수결정총액	총 당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48,125,625,070	5,486,466,150	42,176,920	5,444,289,230	1,025,668,170
10,950,293,310	3,575,609,440	19,649,510	3,555,959,930	576,595,930
11,731,904,960	3,026,658,070	19,388,040	3,007,270,030	530,098,490
103,923,946,370	18,197,540,210	88,791,890	18,108,748,320	3,299,712,560
79,449,197,000	16,579,366,710	62,533,290	16,516,833,420	3,525,119,710
117,405,355,140	21,214,283,190	128,262,830	21,086,020,360	3,923,496,810
62,285,392,670	15,203,853,470	140,648,710	15,063,204,760	3,586,021,880
79,611,945,410	11,912,141,650	83,413,140	11,828,728,510	2,126,600,910
122,148,452,200	20,181,674,690	109,514,770	20,072,159,920	4,194,587,000
127,657,764,460	22,305,800,970	157,961,850	22,147,839,120	3,548,985,740
115,049,595,410	17,458,551,980	156,412,210	17,302,139,770	3,324,828,110
54,743,226,300	14,685,347,970	76,133,790	14,609,214,180	2,924,374,730
136,035,855,990	22,641,229,350	210,851,390	22,430,377,960	3,356,867,700
55,365,640,980	11,278,874,500	65,531,930	11,213,342,570	1,933,842,350
20,965,882,060	4,930,713,730	61,798,750	4,868,914,980	885,318,260
23,899,443,470	5,316,058,500	27,868,590	5,288,189,910	1,201,229,500
38,381,373,640	8,519,614,450	85,151,670	8,434,462,780	1,592,128,650
50,758,784,890	9,761,942,840	80,281,540	9,681,661,300	1,721,218,500
20,888,526,460	3,784,091,210	54,333,460	3,729,757,750	746,395,500
102,548,572,270	17,263,608,640	95,658,860	17,167,949,780	4,007,734,970
72,750,285,060	9,042,048,550	91,421,520	8,950,627,030	2,294,356,990
95,792,994,690	18,991,401,460	126,772,810	18,864,628,650	2,379,536,870
30,940,398,060	4,526,700,680	41,027,400	4,485,673,280	1,228,561,260
31,255,054,970	8,055,744,780	52,539,740	8,003,205,040	1,349,839,930
	32,709,380	0	32,709,380	31,637,830

제 3-5 표 '06년도

사업종류 \ 구 분		합 계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합	계	4,798,690,383,660	3,863,117,881,610
금 융 보 험 업	소 계	64,298,196,300	63,726,463,860
	금 융 및 보 험 업	64,298,196,300	63,726,463,860
광 업	소 계	113,797,473,520	105,515,807,410
	석 탄 광 업	86,787,789,580	86,503,407,470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2,659,984,130	1,737,410,660
	채 석 업	4,436,216,590	2,992,941,510
	석 회 석 광 업	2,886,400,770	2,485,918,490
	제 염 업	269,464,960	108,256,290
	기 타 광 업	15,651,935,060	10,623,038,770
	연 탄 응 집 고 체 연 료 생 산	1,105,682,430	1,064,834,220
제 조 업	소 계	1,887,473,196,120	1,632,893,204,690
	식 료 품 제 조 업	86,250,872,020	74,966,389,930
	담 배 제 조 업	679,926,080	677,571,620
	섬 유 / 섬 유 제 품 제 조 (갑)	25,466,017,400	16,916,033,420
	제 재 업 / 베 니 아 판 제 조 업	12,681,816,950	9,951,400,480
	목 재 품 제 조 업	48,154,502,100	29,958,066,110
	펄 프 및 지 류 제 조 업	31,222,096,710	27,450,816,690
	신 문 . 화 폐 발 행 / 출 판 업	13,317,081,440	11,555,287,840
	인 쇄 업	19,148,393,310	15,693,618,260
	경 인 쇄 업	48,554,720	1,006,260

업 종 별 징 수 현 황

(단위 : 원)

보 험 료		기 타 징 수 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4,168,374,283,660	3,749,501,079,520	630,316,100,000	113,616,802,090
64,096,262,310	63,671,267,630	201,933,990	55,196,230
64,096,262,310	63,671,267,630	201,933,990	55,196,230
109,942,612,650	104,639,089,910	3,854,860,870	876,717,500
86,541,760,890	86,485,480,870	246,028,690	17,926,600
2,233,220,470	1,611,534,190	426,763,660	125,876,470
3,606,505,730	2,730,851,810	829,710,860	262,089,700
2,730,623,140	2,459,496,750	155,777,630	26,421,740
211,189,870	106,126,760	58,275,090	2,129,530
13,546,145,580	10,191,164,200	2,105,789,480	431,874,570
1,073,166,970	1,054,435,330	32,515,460	10,398,890
1,775,426,954,750	1,603,870,092,580	112,046,241,370	29,023,112,110
80,843,934,070	73,445,895,040	5,406,937,950	1,520,494,890
679,596,510	677,571,620	329,570	0
21,941,556,050	16,222,852,360	3,524,461,350	693,181,060
11,507,736,050	9,742,300,540	1,174,080,900	209,099,940
39,494,007,810	27,958,361,720	8,660,494,290	1,999,704,390
29,628,789,210	27,066,047,370	1,593,307,500	384,769,320
12,605,766,640	11,390,344,460	711,314,800	164,943,380
17,805,079,840	15,339,958,810	1,343,313,470	353,659,450
21,868,610	594,990	26,686,110	411,270

사업종류 \ 구 분		합	계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제조업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46,042,084,720	128,107,734,990
	의 약 품 화 장 품 향 료 제 조	10,342,670,640	9,682,087,190
	코 크 스 / 석 탄 가 스 제 조	74,359,960	65,890,240
	고 무 제 품 제 조 업	37,691,921,830	34,404,249,910
	도 자 기 제 품 제 조 업	6,978,452,240	5,959,129,880
	유 리 제 조 업	14,790,725,550	13,390,878,560
	요 업 / 토 석 제 품 제 조 업	26,252,123,700	23,156,229,530
	시 멘 트 제 조 업	6,383,325,090	6,299,373,590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252,770,356,080	197,294,657,380
	금 속 제 련 업	11,137,665,590	11,113,079,190
	금 속 재 료 품 제 조 업	61,928,891,570	57,514,449,720
	금 속 제 품 제 조 / 가 공	2,831,170,720	182,761,480
	도 금 업	21,443,012,600	18,122,811,440
	기 계 기 구 제 조 업	273,693,935,300	232,250,031,650
	전 기 기 계 기 구 제 품 제 조	50,975,170,680	45,091,886,190
	전 자 제 품 제 조 업	72,689,232,610	67,961,336,940
	선 박 건 조 및 수 리 업	213,367,215,900	203,495,485,940
	수 송 용 기 계 , 제 조 업 (갑)	156,929,288,360	151,295,916,700
	계 량 / 광 학 / 기 타 정 밀 기	14,989,921,620	12,984,787,770
	수 제 품 제 조 업	11,533,232,920	8,182,130,530
	기 타 제 조 업	75,414,757,910	56,136,627,000

(단위 : 원)

보 험 료		기 타 정 수 금	
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137,247,674,060	125,669,166,340	8,794,410,660	2,438,568,650
10,048,538,100	9,632,049,610	294,132,540	50,037,580
73,337,080	65,681,470	1,022,880	208,770
36,257,575,510	34,059,959,740	1,434,346,320	344,290,170
6,596,683,230	5,919,082,540	381,769,010	40,047,340
14,185,746,870	13,222,220,370	604,978,680	168,658,190
24,763,559,390	22,757,006,640	1,488,564,310	399,222,890
6,352,253,320	6,286,826,410	31,071,770	12,547,180
227,624,285,400	190,923,566,010	25,146,070,680	6,371,091,370
11,125,409,030	11,106,671,330	12,256,560	6,407,860
60,060,540,310	57,016,373,520	1,868,351,260	498,076,200
1,165,068,050	91,308,990	1,666,102,670	91,452,490
20,083,211,410	17,739,660,100	1,359,801,190	383,151,340
255,970,701,070	227,279,636,390	17,723,234,230	4,970,395,260
48,785,296,410	44,517,796,230	2,189,874,270	574,089,960
71,034,399,580	67,481,571,830	1,654,833,030	479,765,110
209,419,030,040	201,814,607,530	3,948,185,860	1,680,878,410
154,766,812,940	150,678,247,530	2,162,475,420	617,669,170
14,192,154,000	12,746,364,210	797,767,620	238,423,560
10,181,401,730	7,925,316,180	1,351,831,190	256,814,350
66,557,866,700	54,044,419,760	8,856,891,210	2,092,207,240

사업종류		구 분	합	계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제 조 업	섬 유 / 섬 유 제 품 제 조 (을)		51,202,834,630	41,269,040,520
	금 속 제 품 제 조 / 가 공 (을)		237,657,290	8,456,410
	수 송 용 기 계 , 제 조 업 (을)		130,717,272,140	121,713,506,430
	제 본 / 인 쇄 물 가 공 업		86,655,740	40,474,900
전기가스및 수 도 사 업	소 계		20,058,365,810	19,994,931,160
	전 기 가 스 및 수 도 사 업		20,058,365,810	19,994,931,160
건 설 업	소 계		1,204,323,232,560	1,001,572,765,280
	일 반 건 설 공 사 (갑)		1,196,246,431,030	1,001,557,895,420
	중 건 설 공 사		862,371,930	0
	철 도 또 는 궤 도 신 설 공 사		89,507,400	0
	일 반 건 설 공 사 (을)		7,124,922,200	14,869,860
운수창고및 통 신 업	소 계		278,425,622,440	245,028,215,540
	철 도 궤 도 및 삭 도 운 수 업		16,412,323,530	16,410,175,050
	자 동 차 여 객 운 수 업		105,725,496,510	97,019,230,180
	소 형 자 동 차 운 수 업		48,869,680	300,000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업		34,222,439,510	20,531,153,330
	수 상 운 수 업		61,284,136,150	53,498,532,190
	항 만 하 역 화 물 취 급 사 업		201,789,010	15,686,530
	항 공 운 수 업		6,125,681,530	6,118,177,270
	운 수 관 련 서 어 비 스 업		16,169,099,760	14,272,729,270
	창 고 업		12,057,485,490	11,390,526,370
	통 신 업		26,178,301,270	25,771,705,350

(단위 : 원)

보 험 료		기 타 징 수 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47,511,150,370	40,394,599,870	3,691,684,260	874,440,650
96,248,970	5,235,790	141,408,320	3,220,620
126,759,340,780	120,624,630,050	3,957,931,360	1,088,876,380
40,335,610	24,167,230	46,320,130	16,307,670
20,021,659,550	19,982,946,770	36,706,260	11,984,390
20,021,659,550	19,982,946,770	36,706,260	11,984,390
1,103,776,288,180	976,432,260,400	100,546,944,380	25,140,504,880
1,101,376,930,950	976,432,105,750	94,869,500,080	25,125,789,670
584,801,710	0	277,570,220	0
43,323,570	0	46,183,830	0
1,771,231,950	154,650	5,353,690,250	14,715,210
260,811,707,170	241,272,704,820	17,613,915,270	3,755,510,720
16,410,433,540	16,408,949,150	1,889,990	1,225,900
101,855,416,520	96,101,644,230	3,870,079,990	917,585,950
17,761,130	300,000	31,108,550	0
26,147,676,360	19,145,359,380	8,074,763,150	1,385,793,950
57,260,480,160	52,480,857,350	4,023,655,990	1,017,674,840
65,085,650	7,541,520	136,703,360	8,145,010
6,121,204,170	6,115,512,700	4,477,360	2,664,570
15,341,388,740	14,111,851,120	827,711,020	160,878,150
11,640,314,980	11,221,393,340	417,170,510	169,133,030
25,951,945,920	25,679,296,030	226,355,350	92,409,320

사업종류		구 분	총 계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임 업	소 계		16,649,266,390	15,589,365,560
	별 목 업		2,377,941,060	1,811,215,960
	기 타 의 임 업		14,271,325,330	13,778,149,600
어 업	소 계		2,191,219,830	540,659,550
	어 업		2,191,219,830	540,659,550
농 업	소 계		11,244,003,610	9,717,510,330
	농 업		11,244,003,610	9,717,510,330
기 타 의 사 업	소 계		871,580,481,490	732,687,434,640
	농 수 산 물 위 탁 판 매 업		2,683,146,720	2,504,688,100
	건 물 등 의 종 합 관 리 사 업		130,096,970,090	116,855,977,580
	위 생 및 유 사 서 어 비 스 업		80,907,233,190	75,319,714,550
	중 기 관 리 사 업		27,818,481,590	16,475,240,830
	골 프 장 및 경 마 장 운 영 업		7,806,582,720	7,680,449,350
	기 타 의 각 종 사 업		498,801,822,910	399,856,015,850
	해 외 파 견 사 업		3,799,988,630	3,701,718,440
	컴 퓨 터 운 용 및 법 무 회 계 관 련 서 비 스 업		41,960,864,550	37,302,234,110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46,247,275,610	44,606,467,780
	교 육 서 비 스 업		28,953,173,240	25,880,323,680
	주 한 미 군		2,504,942,240	2,504,604,370
기 타			328,649,325,590	35,851,523,590

(단위 : 원)

보 험 료		기 타 징 수 금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15,926,228,760	15,310,616,870	723,037,630	278,748,690
1,989,319,740	1,727,752,440	388,621,320	83,463,520
13,936,909,020	13,582,864,430	334,416,310	195,285,170
1,184,995,420	404,256,890	1,006,224,410	136,402,660
1,184,995,420	404,256,890	1,006,224,410	136,402,660
10,105,081,820	9,262,676,850	1,138,921,790	454,833,480
10,105,081,820	9,262,676,850	1,138,921,790	454,833,480
807,082,493,050	714,655,166,800	64,497,988,440	18,032,267,840
2,611,062,030	2,481,877,750	72,084,690	22,810,350
125,106,394,500	115,121,613,670	4,990,575,590	1,734,363,910
78,304,226,230	74,572,144,350	2,603,006,960	747,570,200
20,853,291,650	14,867,545,910	6,965,189,940	1,607,694,920
7,677,783,620	7,617,702,670	128,799,100	62,746,680
452,194,657,210	387,001,511,400	46,607,165,700	12,854,504,450
3,779,088,120	3,694,275,730	20,900,510	7,442,710
40,552,254,280	37,011,738,000	1,408,610,270	290,496,110
45,614,785,330	44,313,196,950	632,490,280	293,270,830
27,884,333,710	25,468,956,000	1,068,839,530	411,367,680
2,504,616,370	2,504,604,370	325,870	0
0	0	328,649,325,590	35,851,523,590

제 3-6 표 '06년도 월별 업종별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징수결정액	4,798,690,383,660	670,789,469,090	17,530,744,630	2,259,893,798,090	40,687,762,010	464,057,840,360
	수납액	3,863,117,881,610	43,371,046,670	31,824,685,600	2,129,418,846,160	77,973,327,750	405,872,028,520
금융업	징수결정액	64,298,196,300	528,038,170	8,477,600	59,436,437,110	55,421,230	1,350,101,460
	수납액	63,726,463,860	55,782,070	36,095,340	58,464,919,260	814,860,110	1,376,207,870
광업	징수결정액	113,797,473,520	7,485,505,800	37,712,540	85,113,220,630	267,009,370	6,341,383,590
	수납액	105,515,807,410	516,588,240	170,721,320	84,349,317,580	454,378,100	5,365,252,520
제조업	징수결정액	1,887,473,196,120	218,763,942,870	1,026,032,020	920,016,875,600	14,352,196,310	210,607,020,880
	수납액	1,632,893,204,690	14,447,049,070	9,468,161,950	872,333,170,000	27,575,876,220	189,889,689,980
전기·가스·수도업	징수결정액	20,058,365,810	88,859,700	65,920,210	19,142,132,740	-72,517,610	252,128,260
	수납액	19,994,931,160	30,162,810	18,969,350	19,017,811,670	44,754,970	281,592,200
건설업	징수결정액	1,204,323,232,560	191,807,427,270	6,343,069,950	612,674,028,780	5,433,613,710	114,291,708,310
	수납액	1,001,572,765,280	13,470,002,660	10,442,570,240	562,626,796,020	22,497,386,230	93,481,923,570
운수·창고·통신업	징수결정액	278,425,622,440	30,469,638,880	191,209,510	137,152,177,020	1,212,142,240	33,202,598,900
	수납액	245,028,215,540	1,788,906,410	1,039,034,310	129,206,162,520	5,113,628,660	30,891,548,240
임업	징수결정액	16,649,266,390	1,337,161,960	649,617,300	6,123,610,700	1,088,136,950	1,504,215,500
	수납액	15,589,365,560	399,894,500	588,470,180	5,938,380,240	1,146,589,430	1,458,479,670
어업	징수결정액	2,191,219,830	1,748,618,420	21,777,970	65,605,090	-42,485,100	110,418,580
	수납액	540,659,550	25,131,750	4,524,610	115,392,170	29,840,810	76,147,570
농업	징수결정액	11,244,003,610	1,368,221,170	86,163,510	5,309,360,630	236,097,130	1,196,128,170
	수납액	9,717,510,330	125,400,010	147,451,450	5,179,447,720	245,060,260	938,798,010
기타의 사업	징수결정액	871,580,481,490	127,340,515,880	3,616,601,770	409,860,553,980	13,101,011,460	88,938,054,870
	수납액	732,687,434,640	10,034,739,190	7,927,571,410	389,861,694,580	17,526,642,420	78,708,490,580
기타	징수결정액	328,649,325,590	89,851,538,970	5,484,162,250	4,999,795,810	5,057,136,320	6,264,081,840
	수납액	35,851,523,590	2,477,389,960	1,981,115,440	2,325,754,400	2,524,310,540	3,403,898,310

보험료 징수현황

(단위 : 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3,215,142,150	61,001,078,410	438,044,173,910	217,154,428,800	60,039,691,104	472,083,569,480	24,192,685,626
80,988,288,890	69,908,252,650	398,192,969,400	65,820,747,250	68,466,159,670	410,411,527,050	80,870,002,000
102,061,690	122,384,120	1,224,126,360	19,169,140	136,682,500	1,283,437,620	31,859,300
89,977,740	136,731,030	1,236,251,580	56,559,910	107,954,750	1,286,570,910	64,553,290
260,270,690	398,941,050	5,961,014,820	198,450,490	416,135,320	7,218,072,530	99,756,690
828,418,310	360,413,860	5,384,887,960	358,087,560	691,426,680	5,365,564,620	1,670,750,660
23,765,180,750	24,555,807,130	202,111,266,920	18,822,867,710	25,729,883,360	217,522,270,320	10,199,852,250
28,206,344,030	26,573,157,950	185,570,741,290	22,967,209,680	28,785,999,940	195,930,954,710	31,144,849,870
29,969,100	-7,286,970	286,481,970	1,169,580	16,641,350	249,925,580	4,941,900
19,748,180	16,837,660	287,395,950	5,507,220	13,497,640	249,650,770	9,002,740
15,970,753,460	11,230,177,630	108,853,661,020	7,371,278,720	9,470,634,180	114,606,641,870	6,270,237,660
27,169,160,630	18,642,257,020	94,517,587,330	22,989,862,320	16,152,484,900	94,842,909,620	24,739,824,740
3,498,035,600	2,843,165,300	32,626,351,700	1,194,383,700	2,783,790,440	33,123,348,680	128,780,470
3,203,380,680	3,053,673,530	30,470,010,340	2,949,169,880	3,035,747,090	31,294,512,600	2,982,441,280
623,900,680	582,434,690	1,179,488,270	531,173,660	530,393,590	1,508,955,910	990,177,180
719,505,810	580,839,700	1,220,000,030	574,726,610	508,450,520	1,404,140,640	1,049,888,230
80,300,620	2,166,860	53,143,390	36,442,070	29,137,540	50,555,970	35,538,420
3,604,820	13,241,140	47,230,250	52,463,070	43,013,910	75,352,410	54,717,040
407,350,600	205,653,510	982,675,540	212,534,140	144,640,590	956,735,950	138,442,670
330,876,690	288,703,740	879,184,900	281,205,310	212,580,610	886,838,630	201,963,000
20,827,868,080	15,601,581,670	80,328,175,820	5,960,062,040	15,620,640,090	85,914,823,760	4,470,592,070
16,879,158,800	17,199,598,200	75,341,648,420	12,642,203,380	15,863,954,560	76,141,027,700	14,560,705,400
7,649,450,880	5,466,053,420	4,437,788,100	182,806,897,550	5,161,112,144	9,648,801,290	1,822,507,016
3,538,113,200	3,042,798,820	3,238,031,350	2,943,752,310	3,051,049,070	2,934,004,440	4,391,305,750

제 3-7 표 연도별 규모별 보험료 징수현황(수납액)

(단위 : 원)

구 분	'03	'04	'05	'06
합 계	3,029,808,946,400	2,992,041,228,150	3,274,304,217,210	3,863,117,881,610
건 설 업	910,159,565,320	1,025,077,544,580	942,904,945,320	1,001,572,765,280
5 인 미 만	165,069,840,460	183,655,359,550	209,423,879,420	276,384,114,950
5 ~ 9 인	142,809,238,130	160,504,308,020	192,005,098,410	234,642,195,960
10 ~ 29 인	282,568,239,570	327,921,227,470	413,774,164,620	522,070,354,420
30 ~ 49 인	136,474,082,910	156,589,001,340	185,991,723,570	234,944,051,290
50 ~ 99 인	168,063,184,560	193,065,942,840	236,898,496,800	285,574,244,560
100 ~ 299 인	255,990,293,970	296,127,696,790	353,449,542,250	434,385,652,010
300 ~ 499 인	88,816,186,680	108,035,197,970	124,953,018,230	138,108,098,020
500 ~ 999 미 만	108,236,784,490	137,086,756,400	149,163,652,080	168,353,049,270
1000 인 이 상	279,459,983,140	370,967,287,310	439,138,297,500	531,231,832,260
기 타	492,161,547,170	33,010,905,880	26,601,399,010	35,851,523,590

4. 재 해 보 상

제 4-1 표 연도별 · 보험

구 분 연 도	총 계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67		62,939	581,945,485		36,278	309,295,643
'68		64,567	837,976,609		33,869	452,300,957
'69		79,428	1,306,542,681		43,066	665,614,195
'70		86,805	1,843,599,713		47,890	897,089,880
'71		93,154	2,539,336,601		52,516	1,289,037,095
'72		100,139	3,456,740,887		56,455	1,554,903,324
'73		113,903	4,368,090,297		67,177	2,052,474,931
'74		131,716	6,516,929,206		73,089	3,208,621,706
'75		163,343	10,380,390,721		97,545	5,202,094,634
'76		164,322	12,670,839,899		92,502	6,071,583,347
'77		227,727	21,618,770,449		137,197	10,073,971,483
'78		266,006	30,418,532,981		148,225	11,486,153,871
'79		301,672	53,976,684,427		179,502	19,766,948,096
'80		271,490	62,504,522,834		156,357	23,976,324,307
'81		283,548	76,219,581,029		155,707	28,504,497,981
'82		336,775	97,140,814,082		193,263	39,303,812,927
'83		388,439	117,610,686,323		219,218	45,886,619,811
'84		409,893	142,176,576,812		222,521	54,972,604,743
'85		483,336	185,998,958,370		277,906	82,362,445,220
'86		526,961	214,730,693,470		307,917	97,623,917,040
'87		576,945	241,255,121,540		329,542	105,235,412,680
'88		635,190	296,994,666,360		353,848	125,344,522,170
'89		677,484	369,305,325,880		359,694	135,368,888,980
'90		802,872	539,351,470,010		422,982	173,629,148,950
'91		835,029	701,514,052,030		421,573	192,238,772,980
'92		932,395	931,564,168,860		502,271	259,994,763,730
'93		784,770	872,530,590,480		402,680	224,021,148,110
'94		804,575	998,562,724,840		411,028	249,185,674,750
'95		826,651	1,133,577,490,290		418,573	279,418,012,180
'96		928,764	1,355,337,130,080		478,838	342,974,380,020
'97		956,763	1,556,041,967,620		492,133	396,735,529,740
'98	105,491	845,108	1,451,065,987,070	91,372	438,774	379,667,868,090
'99	97,784	781,427	1,274,225,648,770	83,470	410,552	358,693,869,610
'00	114,401	982,753	1,456,265,790,350	96,922	520,663	425,153,541,450
'01	143,216	1,505,803	1,744,560,198,260	123,994	885,275	536,464,184,410
'02	162,283	1,732,467	2,020,335,492,620	139,646	1,029,475	609,002,044,500
'03	180,441	2,008,450	2,481,814,399,410	152,522	1,147,931	709,577,963,020
'04	189,275	2,220,793	2,859,913,663,370	157,000	1,240,362	786,792,188,680
'05	196,515	2,261,110	3,025,771,182,820	159,815	1,241,480	769,166,800,930
'06	206,333	2,329,289	3,163,768,608,840	166,443	1,278,061	800,390,673,170

급여별 지급현황

(단위: 명, 건, 원)

휴 업 급 여			장 해 급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일 시 금			연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25,518	125,247,498		504	36,418,228			
	29,237	172,344,376		727	56,759,882			
	34,400	253,658,496		918	88,813,572			
	36,445	344,288,184		1,198	140,442,330			
	38,094	447,262,591		1,146	171,271,880			
	39,880	537,644,262		2,993	694,276,222		3	58,436
	41,712	659,654,354		3,368	774,230,455		2	330,386
	46,603	904,958,666		5,025	1,269,018,133		4	660,772
	57,291	1,480,053,030		6,490	1,960,650,262		7	1,051,416
	62,224	1,970,664,439		7,804	2,738,539,620		8	1,512,324
	76,835	3,203,258,669		11,336	4,993,805,818		9	2,432,653
	101,982	5,442,044,271		13,013	7,964,772,043		2	3,335,895
	101,531	9,116,230,914		17,245	15,463,953,845		12	4,492,993
	97,754	11,043,836,392		14,865	18,623,358,904		8	5,895,414
	110,511	13,796,225,364		14,796	22,869,232,529		10	7,192,216
	125,073	18,454,076,924		15,846	26,737,789,749		36	61,835,014
	149,316	23,575,556,294		16,809	32,497,273,382		59	87,220,168
	163,645	29,263,664,922		18,044	37,991,931,805		111	195,113,113
	179,088	34,428,055,490		19,539	45,551,416,440		285	318,471,320
	189,869	40,298,225,540		21,476	51,915,300,810		447	466,832,840
	212,650	47,121,646,090		24,584	60,867,139,900		660	627,223,520
	114,154	62,395,766,230		25,953	71,660,837,970		940	974,220,790
	272,910	98,037,280,220		24,948	85,183,500,040		1,446	4,209,235,690
	329,046	156,025,610,540		26,900	117,360,544,460		2,044	8,957,871,790
	357,608	223,727,039,680		28,710	159,935,474,260		2,633	13,990,150,600
	366,774	281,052,584,550		32,004	225,102,590,090		3,654	22,305,578,470
	320,242	268,736,548,950		29,131	219,489,697,900		4,680	26,837,526,270
	326,702	303,595,435,749		28,618	236,123,311,260		6,629	32,024,530,650
	337,872	357,981,516,570		27,770	254,183,235,280		9,063	41,496,811,070
	373,383	435,728,944,010		28,450	287,341,212,880		12,198	60,410,112,760
	379,423	478,644,576,740		29,945	343,028,598,190		15,330	79,441,014,910
73,769	318,048	399,881,199,450	25,889	26,806	337,733,388,360	5,897	18,437	97,899,339,360
67,078	281,120	337,391,379,040	19,428	20,052	231,795,854,210	6,989	22,418	111,997,334,950
79,929	340,499	422,463,935,740	19,400	19,934	223,749,187,160	8,380	47,083	136,705,792,640
98,318	424,237	526,306,466,240	23,799	24,354	278,884,387,900	10,428	95,744	168,120,367,450
105,135	458,388	628,738,746,680	24,484	25,015	302,844,828,400	12,499	117,066	211,553,215,240
119,243	556,772	819,680,896,250	28,105	28,726	371,292,101,850	15,157	142,703	254,930,157,310
123,275	613,040	954,612,290,550	31,361	32,067	429,629,455,700	18,250	172,393	322,658,082,730
121,180	584,388	938,439,334,570	33,394	34,176	505,783,095,010	22,427	209,428	416,402,113,270
120,764	534,686	848,134,638,170	34,150	34,875	531,305,386,920	27,772	261,136	536,079,724,330

구 분 연 도	유 족 금 여						유족특별급여			장	
	일 시 금			연 금							
	수급자수	건수	금 액	수급자수	건수	금 액	수급자수	건수	금 액	수급자수	건수
'67		319	101,417,293								320
'68		370	143,015,707								364
'69		524	272,076,771								520
'70		639	420,298,175								633
'71		693	570,905,823					13	8,412,620		692
'72		658	614,469,821								650
'73		835	802,655,683					5	4,189,280		798
'74		845	1,033,466,328								844
'75		1,006	1,590,102,839								1,001
'76		887	1,723,172,325								897
'77		1,174	3,063,649,342								1,175
'78		1,397	5,041,755,085								1,375
'79		1,702	8,813,882,449								1,678
'80		1,260	8,105,851,190								1,244
'81		1,264	10,138,719,291								1,258
'82		1,279	11,528,965,424								1,277
'83		1,419	14,217,753,590					1	17,681,122		1,411
'84		1,631	17,578,085,049		7	5,227,970					1,640
'85		1,778	20,721,118,450		23	20,327,630		1	21,906,800		1,774
'86		1,854	21,392,195,630		42	40,125,040		2	69,888,690		1,790
'87		1,831	23,575,606,960		96	115,653,480					1,830
'88		2,082	30,710,071,010		121	127,174,220					2,075
'89		1,891	37,519,936,720		158	176,679,490					1,918
'90		2,442	69,228,343,000		194	282,456,460					2,402
'91		2,534	92,345,140,720		226	367,463,300					2,594
'92		2,762	118,064,083,490		257	467,459,480					2,720
'93		2,408	106,382,623,330		315	670,012,000					2,365
'94		2,967	142,668,164,487		409	1,100,082,210					2,900
'95		3,105	159,604,738,910		512	1,307,529,160		1	47,311,600		2,788
'96		2,822	177,617,917,890		636	1,883,834,620					2,807
'97		2,861	196,064,647,670		687	2,573,781,410					2,852
'98	2,369	2,408	165,709,520,340	192	192	2,992,051,400				2,357	2,389
'99	2,165	2,560	153,905,753,660	231	877	3,836,178,980				2,183	2,235
'00	2,404	2,826	153,095,675,650	770	3,105	6,161,771,140				2,566	2,629
'01	2,323	2,671	116,864,270,970	2,500	19,990	17,711,567,850				2,643	2,692
'02	2,172	2,203	117,777,815,320	4,232	41,187	33,979,510,380				2,602	2,615
'03	2,376	2,410	137,234,529,090	6,223	64,105	55,348,708,490				2,921	2,950
'04	2,180	2,215	132,820,269,700	8,093	86,323	78,013,737,970				2,780	2,804
'05	1,811	1,837	116,274,885,810	9,776	107,381	104,301,741,810				2,464	2,483
'06	1,761	1,792	119,173,110,960	11,429	128,720	134,702,574,010				2,439	2,455

(단위: 명, 건, 원)

의 비	상병보상연금			장해특별급여			간 병 급 여			비 고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9,566,823 13,555,687 26,379,647										상병보상연금란중 '82년 이전분은 일시급여임.
41,481,144 52,446,592 55,388,822 71,909,969 93,682,533 143,396,607 165,367,844 277,542,550 457,558,792 788,374,503		(6) (6) (3) (1) (5) (2)	(2,645,239) (6,521,068) (3,041,933) (4,110,034) (22,908,021) (22,801,627)							
725,710,697 888,456,248 1,045,393,979 1,284,329,544 1,609,673,002 1,872,965,110 1,929,410,710 2,142,989,210 2,748,689,080 3,543,474,650		(2) (2) (1) 206 2,288 2,942 3,563 5,752 10,101 14,159	(23,545,930) (15,258,400) (8,940,065) 44,252,412 560,276,208 702,251,910 949,273,040 1,569,449,700 3,033,384,890 5,266,330,080	1	1	45,524,130				
6,371,621,370 8,857,592,830 10,962,049,690 9,941,278,120 13,304,701,624 13,981,288,780 16,598,240,290 18,371,594,340 15,389,030,270 14,522,928,550		16,862 19,151 21,953 22,949 25,322 27,057 29,630 33,532 37,476 41,613	7,495,873,440 10,052,417,660 13,615,059,360 16,451,755,800 20,560,824,110 25,557,046,740 32,782,487,610 41,182,224,620 51,793,589,800 62,082,349,770							
17,174,865,850 18,255,039,250 19,091,452,100 22,677,888,550 22,811,378,670 21,221,358,820 22,161,957,270	4,161 4,498 4,926 5,258 5,660 5,938 6,182	45,906 49,475 53,552 57,080 61,850 65,359 66,726	71,677,836,050 80,761,096,480 94,134,549,100 105,337,452,530 123,143,028,830 140,345,209,330 151,580,190,250				51 228 476 782 1,175 1,653 2,291	105 1,562 3,748 6,725 10,652 15,298 21,524	83,184,670 1,192,817,710 3,213,330,900 5,734,702,320 9,433,230,540 13,836,643,270 20,240,353,760	

제 4-2 표 연도별 · 업종별

구분 연도	총 계			광 업			제 조 업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67		62,939	581,945,485		39,576	339,543,431		13,222	129,415,662
'68		64,567	837,976,609		32,998	400,100,999		19,489	263,591,561
'69		79,428	1,306,542,681		31,985	515,889,269		28,543	434,618,148
'70		86,805	1,843,599,713		30,797	604,369,315		32,021	588,471,948
'71		93,154	2,539,336,601		28,990	746,579,219		34,599	794,839,417
'72		100,139	3,456,740,887		30,861	979,837,601		36,489	1,136,771,138
'73		113,903	4,368,090,297		26,364	1,162,169,763		43,781	1,480,787,575
'74		131,716	6,516,929,206		27,662	1,442,925,276		64,843	2,743,771,067
'75		163,343	10,380,390,721		37,226	2,592,577,212		78,612	4,202,862,723
'76		164,322	12,670,839,899		36,853	3,561,907,038		79,554	5,136,424,394
'77		227,727	21,618,770,449		39,997	4,794,493,799		119,137	9,632,205,524
'78		266,004	30,418,532,981		56,573	5,830,953,536		129,613	13,209,918,917
'79		301,672	53,976,684,427		46,129	10,040,758,742		157,120	23,704,054,428
'80		271,490	62,504,522,834		46,244	12,690,983,082		134,362	26,348,342,378
'81		283,548	76,219,581,029		66,889	18,364,291,283		129,666	31,118,678,373
'82		336,775	97,140,814,082		65,507	22,860,695,606		158,773	39,201,120,438
'83		388,439	117,610,686,323		70,889	24,703,295,787		181,676	48,486,945,475
'84		409,893	142,176,576,812		76,156	27,539,531,602		184,169	58,780,912,702
'85		483,336	185,998,958,370		97,835	38,340,809,358		206,542	74,241,505,104
'86		526,961	214,730,693,470		116,937	48,007,276,098		223,151	84,705,264,309
'87		576,945	241,255,121,540		117,603	50,104,175,180		255,931	101,559,862,220
'88		635,190	296,994,666,360		128,016	57,765,655,380		286,227	128,743,829,860
'89		677,484	369,305,325,880		142,684	72,393,158,650		302,337	158,577,420,080
'90		802,872	539,351,470,010		166,530	98,653,017,280		341,989	217,153,231,700
'91		835,029	701,514,052,030		167,506	112,111,779,210		325,374	256,812,639,260
'92		932,395	931,564,168,860		172,850	140,138,273,159		343,681	315,040,007,321
'93		784,770	872,530,590,480		139,167	128,163,584,390		288,192	288,839,214,843
'94		804,575	998,562,724,840		126,584	129,438,225,917		306,931	341,962,646,647
'95		826,651	1,133,577,490,290		115,624	133,824,986,103		319,925	390,162,936,571
'96		928,764	1,355,337,130,080		116,849	145,038,908,030		365,732	465,583,169,500
'97		956,763	1,556,041,967,620		111,937	155,979,759,180		369,260	521,646,804,980
'98	105,491	845,108	1,451,065,987,070	6,731	101,230	152,365,857,220	43,898	313,296	470,647,038,620
'99	97,784	781,427	1,274,225,648,770	6,528	98,839	153,109,149,114	43,131	305,875	434,490,556,050
'00	114,401	982,753	1,456,265,790,350	7,056	110,198	163,470,592,348	51,952	406,861	538,234,648,454
'01	143,216	1,505,803	1,744,560,198,260	7,868	125,656	176,479,421,450	62,298	637,965	653,054,995,540
'02	162,283	1,732,467	2,020,335,492,620	8,444	135,883	193,623,067,630	68,100	718,790	744,220,865,170
'03	180,441	2,008,450	2,481,814,399,410	9,874	142,119	225,961,733,360	74,775	842,663	925,528,573,720
'04	189,275	2,220,793	2,859,913,663,370	12,086	150,754	258,864,228,770	77,731	931,615	1,079,369,005,104
'05	196,515	2,261,110	3,025,771,182,820	13,132	158,199	286,209,439,330	80,482	955,017	1,169,330,578,170
'06	206,333	2,329,289	3,163,768,608,840	12,834	165,751	297,099,423,780	82,170	937,616	1,186,432,563,020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건, 원)

전기가스수도사업			건 설 업			운수창고및통신업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273	9,934,769					9,868	103,051,623
	214	19,897,000					11,866	154,387,049
	276	22,577,100		1,822	81,179,884		16,693	244,278,132
	283	29,100,320		6,182	273,573,690		17,277	333,530,877
	289	54,679,049		9,121	403,074,805		19,794	520,234,371
	238	51,942,687		13,648	592,968,283		18,425	625,815,811
	284	52,400,655		15,575	786,220,085		27,542	853,550,778
	402	65,692,960		14,483	1,050,845,709		23,762	1,167,623,885
	535	111,562,927		21,858	1,783,805,616		24,322	1,576,378,771
	548	103,897,880		24,706	2,174,412,346		21,996	1,619,333,857
	871	185,173,543		35,953	4,111,257,631		30,797	2,754,975,112
	1,138	317,155,689		49,168	7,390,342,908		28,049	3,368,912,885
	1,112	365,068,780		65,486	14,125,062,423		29,530	5,159,134,522
	1,127	428,451,874		57,891	15,622,901,236		29,340	6,432,817,595
	1,296	738,211,091		54,193	17,179,874,581		28,625	7,525,382,228
	1,698	794,371,507		75,059	23,575,673,953		32,427	9,156,877,040
	1,831	950,719,871		95,102	30,805,306,241		34,515	10,448,372,670
	1,162	670,996,554		107,696	39,282,336,826		33,840	12,376,233,564
	1,079	827,730,630		130,267	52,698,953,287		37,633	15,593,938,832
	1,424	1,170,841,600		133,048	58,405,807,530		40,405	16,663,566,433
	1,117	974,974,210		143,152	62,390,104,950		43,728	19,360,279,550
	1,086	1,172,887,920		154,130	74,826,059,800		46,719	24,486,101,110
	1,156	1,043,886,290		161,804	97,991,287,740		48,206	26,718,094,450
	1,413	1,660,367,970		207,277	160,535,091,410		58,805	40,821,047,800
	1,365	1,538,251,880		249,269	256,643,800,160		60,034	48,011,625,280
	1,506	2,141,149,960		306,135	370,271,247,451		65,284	60,149,835,147
	1,492	2,509,913,600		249,759	335,540,136,264		58,830	61,813,635,953
	1,387	3,031,432,890		250,276	374,229,687,046		63,341	75,615,297,922
	1,414	3,037,999,690		264,751	433,595,582,772		66,345	85,038,470,972
	1,728	4,697,036,070		300,176	538,817,697,830		78,412	106,012,628,570
	1,772	3,546,472,360		314,801	630,830,768,550		85,328	123,650,893,250
250	1,736	4,119,481,910	30,891	278,066	583,648,429,810	10,560	67,963	108,005,671,990
241	1,882	4,748,114,590	24,434	227,474	452,859,439,482	7,968	56,338	85,707,337,220
271	2,402	4,939,875,470	26,216	266,656	479,138,222,288	8,775	66,886	92,452,098,810
293	3,207	4,965,770,300	32,685	401,146	553,584,935,740	10,190	96,757	108,854,058,680
324	3,616	5,807,234,770	40,276	478,919	661,881,265,180	10,309	105,136	118,053,269,150
346	4,026	6,670,267,600	45,481	562,791	824,271,621,140	11,101	117,405	136,065,227,720
373	4,465	7,367,915,160	45,784	617,394	932,667,715,380	11,221	127,337	150,973,044,740
391	4,405	7,616,195,940	44,147	589,980	919,954,664,270	11,352	129,327	158,922,390,770
396	4,746	8,763,759,540	45,949	605,009	946,684,000,650	12,110	137,047	174,246,947,260

구분 연도	임 업			어 업			농 업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283	229,643,090		26	52,636,910		239	143,632,680
'92		364	357,109,160		222	373,647,070		524	692,862,610
'93		700	673,982,440		533	828,002,570		640	851,880,170
'94		958	1,149,049,230		1,285	1,799,326,880		670	998,577,960
'95		1,060	1,513,158,140		1,286	1,717,127,740		1,012	1,593,641,580
'96		1,535	1,774,677,520		1,284	1,616,819,120		1,185	1,746,207,470
'97		1,854	2,313,315,330		1,281	1,829,468,600		1,093	2,194,391,720
'98	624	2,886	3,239,637,630	177	924	1,944,678,040	227	1,246	2,277,828,720
'99	1,548	7,790	6,640,800,084	183	1,257	1,753,537,730	235	1,324	2,325,588,760
'00	1,592	10,826	8,555,935,460	208	1,700	3,449,983,920	278	1,707	1,844,915,100
'01	1,644	16,592	11,360,789,980	231	2,103	2,532,568,370	438	3,200	3,130,305,690
'02	1,453	15,218	10,627,088,110	275	2,488	3,290,497,440	502	4,733	3,738,918,490
'03	1,380	14,154	12,265,923,140	300	2,982	3,367,116,500	581	5,146	5,077,664,170
'04	1,610	17,511	16,059,345,820	229	3,173	3,695,159,990	606	5,470	6,300,918,180
'05	1,875	18,986	19,426,846,430	144	1,945	2,257,276,530	720	6,089	6,784,278,440
'06	2,105	22,612	22,208,231,100	115	1,537	1,767,210,060	838	7,576	8,408,388,200

(단위: 명, 건, 원)

기타의 사업			금융 및 보험업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109	8,000,148			
	245	14,553,563			
	361	19,929,740			
	478	69,405,367			
	357	32,961,541			
	564	46,070,309			
	790	113,203,472			
	665	74,864,384			
	972	140,664,840			
	1,463	301,249,046			
	2,295	582,605,532			
	2,526	981,026,669			
	2,879	1,293,143,473			
	3,311	1,552,075,538			
	4,426	2,216,046,279			
	6,870	3,526,565,564			
	9,980	4,296,021,159			
	11,996	5,777,937,500			
	15,414	6,865,725,430			
	19,012	10,000,132,290			
	21,297	12,581,478,670			
	26,858	20,528,713,850			
	30,933	25,970,043,560			
	41,829	42,400,036,982			
	45,958	53,310,240,250			
	53,143	70,338,480,348			
	55,234	83,093,613,722			
	61,863	90,049,985,970			
	69,437	114,050,093,650			
12,983	77,553	124,015,203,170	96	208	802,159,960
13,263	78,663	124,540,662,930	521	1,985	8,050,462,810
17,611	111,716	154,777,641,370	763	3,801	9,401,877,130
27,385	212,605	219,713,069,670	951	6,572	10,884,282,840
31,653	259,901	266,397,796,200	1,063	7,783	12,695,490,480
35,598	308,679	328,173,141,760	1,137	8,485	14,433,130,300
38,672	353,654	388,567,499,444	1,129	9,420	16,048,830,782
43,266	386,965	437,473,109,610	1,214	10,197	17,796,403,330
48,895	436,513	497,672,202,010	1,279	10,882	20,485,883,220

제 4-3 표 '06년도 업종별

구 분 업 종	총 계			요 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전 산 업	206,333	2,329,289	3,163,768,608,840	166,443	1,278,061	800,390,673,170
금 융 및 보 험 업	1,279	10,882	20,485,883,220	993	5,969	4,097,078,450
금 융 및 보 험 업	1,279	10,882	20,485,883,220	993	5,969	4,097,078,450
광 업	12,834	165,751	297,099,423,780	8,039	75,982	92,327,860,090
석 탄 광 업	10,726	141,853	261,936,661,150	7,328	64,583	82,147,040,630
금속 및 비금속 광 업	908	9,937	15,074,878,510	725	4,519	5,236,259,620
채 석 업	270	2,671	3,773,759,460	206	1,235	777,674,900
석 회 석 광 업	160	2,120	2,978,610,160	116	1,105	718,054,040
제 염 업	5	78	107,510,400	3	39	6,548,870
기 타 광 업	640	7,676	11,276,803,440	443	3,732	2,807,682,240
연탄응집고체연료생산	126	1,416	1,951,200,660	106	769	634,599,790
제 조 업	82,170	937,616	1,186,432,563,020	67,481	526,382	278,775,863,700
식 료 품 제 조 업	4,830	49,667	54,715,113,640	3,966	28,259	16,808,283,990
담 배 제 조 업	27	274	388,876,200	17	111	42,455,280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289	13,829	14,928,695,180	975	7,075	4,274,026,380
제재업/베니아판제조업	805	9,248	10,601,891,610	645	5,035	2,816,634,070
목 재 품 제 조 업	2,359	23,392	28,301,288,860	2,022	13,371	7,497,775,390
펄프 및 지류 제조업	1,482	14,965	19,130,780,360	1,238	8,359	5,008,641,280
신문·화페발행/출판업	478	4,501	6,823,165,050	391	2,503	1,811,127,130
인 쇄 업	837	7,178	9,602,216,440	683	3,792	2,461,941,720
경 인 쇄 업	11	154	301,338,020	4	38	93,335,210
화 학 제 품 제 조 업	6,716	69,451	84,309,319,340	5,293	37,164	22,389,209,650
의약품 화장품향료제조	361	3,482	4,638,099,420	297	1,941	1,404,574,510
코크스/ 석탄 가스제조	15	200	246,372,650	13	112	86,492,620
고 무 제 품 제 조 업	1,952	20,430	25,700,444,510	1,611	11,294	6,026,646,610
도 자 기 제품 제조업	319	3,474	4,511,708,480	246	1,750	1,022,871,190
유 리 제 조 업	826	7,992	10,346,111,390	696	4,648	2,556,569,700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건, 원)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120,764	534,686	848,134,638,170	6,182	66,726	151,580,190,250	34,150	34,875	531,305,386,920
400	1,336	3,834,166,510	32	313	943,459,220	141	147	2,983,458,680
400	1,336	3,834,166,510	32	313	943,459,220	141	147	2,983,458,680
5,726	25,497	43,283,870,120	2,551	27,827	57,410,859,880	1,611	1,645	29,411,391,280
4,659	21,236	37,352,863,840	2,342	25,587	53,263,332,740	1,364	1,391	25,584,204,000
432	1,542	1,942,212,440	151	1,626	2,895,236,210	57	58	788,006,500
148	509	639,622,270	16	157	346,367,920	46	49	597,430,910
86	421	724,694,970	6	72	108,443,900	19	21	450,665,220
3	13	16,435,410	-	-	-	2	2	19,920,050
325	1,504	2,293,801,220	24	264	579,105,440	102	103	1,692,445,820
74	272	314,239,970	12	121	218,373,670	21	21	278,718,780
50,922	226,962	370,482,578,500	1,201	12,701	28,535,436,190	16,591	16,923	241,036,015,660
2,918	11,037	13,022,128,020	67	705	1,355,903,740	907	918	10,304,162,840
12	47	89,054,750	-	-	-	5	5	81,268,540
681	2,746	3,163,018,240	25	237	375,316,380	181	183	1,964,239,040
513	2,078	2,475,671,280	15	176	450,424,150	179	182	2,313,013,250
1,557	6,042	7,745,297,130	23	240	475,147,550	615	622	8,207,301,530
927	3,596	4,894,761,320	11	98	220,695,630	280	285	4,077,762,670
223	820	1,332,163,840	11	117	315,414,130	64	64	802,886,730
458	1,556	2,189,266,630	11	114	273,990,490	149	151	2,072,692,130
2	3	1,478,230	2	24	28,538,480	1	1	267,710
3,843	15,056	20,587,793,530	76	814	1,850,266,040	1,163	1,177	15,366,414,970
193	657	972,102,440	6	69	147,570,980	58	58	824,064,560
9	17	12,882,320	5	58	101,937,580	1	1	26,743,700
1,190	5,063	8,683,112,100	20	232	452,472,930	349	351	5,057,764,170
185	708	1,031,756,520	15	149	341,988,450	73	75	883,719,960
504	1,835	2,764,928,330	10	121	284,291,200	151	158	2,167,088,210

구 분 업 종	총 계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요업 / 토석제품 제조업	1,242	13,897	17,267,002,540	912	6,905	4,408,265,640
시멘트제조업	167	2,127	3,432,326,810	129	1,091	667,906,390
시멘트원료채굴 / 제조	44	762	1,077,312,200	18	333	221,317,96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1,025	111,302	142,301,195,650	9,776	65,976	39,249,811,290
금속제련업	355	5,150	7,240,931,730	251	2,622	1,720,041,390
금속재료품제조업	2,658	32,124	44,842,924,620	2,107	17,356	10,624,232,390
금속제품 제조 / 가공	1,494	22,284	27,636,248,440	339	5,413	3,973,797,470
도금업	992	10,179	12,515,750,250	822	5,606	3,505,778,350
기계기구제조업	11,021	120,441	154,590,428,070	9,235	68,707	37,533,715,750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1,995	19,442	23,207,798,000	1,632	10,948	5,783,407,570
전자제품제조업	2,084	20,450	25,289,384,000	1,683	10,854	6,243,987,330
선박 건조 및 수리업	6,650	101,771	143,405,893,010	5,724	61,722	26,874,231,570
수송용 기계 제조업(갑)	5,953	72,800	105,722,370,390	5,354	44,898	17,627,827,330
계량/광학/기타정밀기계	636	5,892	6,697,677,530	548	3,391	1,507,917,470
수제품제조업	550	5,531	6,896,780,360	428	2,848	1,922,372,030
기타제조업	3,594	37,260	45,668,918,560	2,903	20,021	12,493,982,140
섬유 / 섬유제품제조(을)	3,607	61,898	63,688,211,920	2,871	36,342	12,838,138,070
금속제품제조 / 가공(을)	85	995	1,096,149,240	7	37	11,337,450
수송용 기계 제조업(을)	5,852	64,580	78,782,818,010	4,763	35,708	17,178,832,730
제본 / 인쇄물 가공업	29	494	527,020,540	6	152	88,378,650
전기·가스및상수도사업	396	4,746	8,763,759,540	263	2,346	1,764,931,53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96	4,746	8,763,759,540	263	2,346	1,764,931,530
건설업	45,949	605,009	946,684,000,650	35,539	321,044	207,883,151,890
일반건설공사(갑)	45,244	592,442	924,607,852,030	35,276	316,389	204,410,430,210
중건설공사	315	5,784	10,007,129,220	124	2,281	1,671,110,230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30	543	868,314,420	11	189	161,118,620
일반건설공사(을)	359	6,239	11,200,396,040	128	2,185	1,640,492,830

(단위: 명, 건, 원)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667	2,798	3,739,770,590	36	372	775,633,040	199	204	2,609,631,680
92	498	1,003,316,510	-	-	-	22	24	512,580,850
10	67	137,818,880	6	72	187,493,860	-	-	-
7,794	31,403	43,302,432,010	97	869	1,646,923,460	2,739	2,770	36,432,981,230
181	994	1,839,208,330	15	164	291,078,890	49	50	805,378,410
1,615	7,475	12,073,751,290	50	540	1,251,047,010	599	608	9,230,321,280
175	1,483	2,517,223,460	89	994	2,365,879,660	24	25	614,200,010
637	2,593	3,222,249,280	5	50	80,867,670	185	187	2,337,218,550
6,967	29,626	47,910,064,070	164	1,780	4,334,441,770	2,258	2,308	31,952,935,910
1,170	4,366	6,404,538,590	27	236	462,272,720	385	393	4,642,686,380
1,183	4,413	6,107,733,780	29	282	617,826,410	336	339	4,204,330,250
4,478	27,327	58,497,497,640	62	650	1,774,443,830	1,494	1,571	29,575,024,470
4,033	20,306	47,235,232,660	53	586	1,448,418,820	1,382	1,441	25,821,705,810
355	1,421	1,978,163,380	3	25	51,095,440	116	117	1,592,011,210
308	1,171	1,377,864,390	25	254	403,159,410	88	88	1,022,010,370
2,221	8,927	11,522,685,420	46	467	878,873,080	667	673	9,266,969,060
2,193	14,973	27,565,965,770	165	1,822	4,505,431,580	477	483	6,173,383,090
5	12	45,143,370	-	-	-	-	-	-
3,711	15,824	25,003,044,410	31	348	708,320,820	1,395	1,411	20,093,257,090
2	24	33,459,990	3	36	78,270,990	-	-	-
131	472	1,223,338,990	22	214	636,817,960	42	45	791,277,170
131	472	1,223,338,990	22	214	636,817,960	42	45	791,277,170
28,599	148,512	260,038,931,540	1,230	13,607	40,286,923,790	7,658	7,891	151,458,023,840
28,463	147,254	256,835,462,850	1,144	12,633	37,302,334,850	7,637	7,869	150,749,341,420
69	632	1,712,002,500	39	442	1,415,452,920	10	11	369,297,270
2	18	46,290,550	5	61	160,229,130	-	-	-
64	607	1,444,866,700	42	471	1,408,906,890	11	11	339,385,150

구 분 업 종	총 계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운송·창고 및 통신업	12,110	137,047	174,246,947,260	9,136	71,280	49,654,554,740
철도궤도및삭도 운수업	479	3,661	5,812,228,720	422	2,549	1,331,654,050
자동차 여 객 운수업	4,211	49,074	58,225,681,190	3,232	26,148	18,882,698,890
소 형 자동차 운수업	465	8,673	9,038,000,530	153	3,117	2,649,285,480
화 물 자동차 운수업	1,507	19,658	24,991,091,990	1,001	9,270	6,626,461,040
수 상 운 수 업	2,713	26,814	32,612,684,640	2,368	15,981	9,895,656,390
항만하역화물 취급사업	465	7,128	9,768,651,320	157	2,125	1,816,934,430
항 공 운 수 업	163	1,299	2,401,069,780	130	759	424,486,300
운 수 관 련 서비스업	763	7,323	8,669,264,890	621	4,012	2,863,114,080
창 고 업	565	5,682	7,183,895,850	486	3,330	2,030,620,520
통 신 업	789	7,735	15,544,378,350	572	3,989	3,133,643,560
임 업	2,105	22,612	22,208,231,100	1,869	14,117	7,330,308,240
별 목 업	207	3,032	3,961,921,760	175	1,758	1,190,166,570
기 타 의 임 업	1,899	19,580	18,246,309,340	1,695	12,359	6,140,141,670
여 업	115	1,537	1,767,210,060	43	438	350,443,040
여 업	115	1,537	1,767,210,060	43	438	350,443,040
농 업	838	7,576	8,408,388,200	712	4,536	2,500,957,010
농 업	838	7,576	8,408,388,200	712	4,536	2,500,957,010
기 타 의 사 업	48,895	436,513	497,672,202,010	41,734	255,967	155,705,524,480
농 수산물 위탁판매업	168	1,670	1,634,451,200	141	1,005	492,362,200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7,937	82,892	79,578,403,430	6,627	48,300	29,648,273,53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4,585	45,388	54,234,720,890	3,753	25,833	16,046,720,680
건설 기계 관리 사업	907	12,201	18,076,566,630	656	6,124	4,559,072,140
골프장및경마장 운영업	570	4,196	5,445,521,500	484	2,543	1,418,805,280
기 타 의 각 종 사 업	29,474	258,419	308,063,100,340	25,090	149,313	93,351,417,980
해 외 파 건 사 업	31	390	990,287,730	20	175	364,566,670
컴퓨터운용및무회계관련서비스	705	4,688	7,788,827,780	640	2,909	1,880,643,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56	15,830	14,615,890,510	2,419	11,421	4,824,273,220
교 육 서 비 스 업	2,003	10,512	6,665,194,060	1,911	8,063	2,761,808,790
주 한 미 군	86	327	579,237,940	85	281	357,580,990

(단위: 명, 건, 원)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6,452	26,255	38,232,848,910	403	4,464	8,859,982,860	1,509	1,535	22,524,963,190
150	501	1,400,954,020	4	42	123,557,400	57	58	1,290,513,440
2,320	10,199	12,214,034,470	112	1,187	2,176,619,910	534	545	7,615,896,680
59	419	478,296,320	73	844	1,217,018,420	8	8	139,908,780
711	3,051	4,147,742,430	104	1198	2,574,036,820	161	166	2,159,201,700
1,950	7,605	10,947,562,780	20	195	329,931,850	442	447	6,172,141,260
86	539	836,601,060	43	486	1,021,344,550	12	12	236,379,210
81	169	696,404,420	3	30	125,652,660	27	27	491,792,610
407	1,472	1,934,781,430	17	168	305,390,230	86	86	1,119,834,120
318	1,264	1,733,061,310	9	90	202,595,360	96	98	1,457,531,910
374	1,036	3,843,410,670	20	224	783,835,660	86	88	1,841,763,480
1,498	6,095	8,068,541,220	14	127	231,811,950	280	282	3,385,786,880
156	863	1,518,146,780	5	50	122,876,840	37	37	534,838,650
1,343	5,232	6,550,394,440	9	77	108,935,110	243	245	2,850,948,230
29	181	320,549,020	4	47	79,399,070	11	11	211,794,020
29	181	320,549,020	4	47	79,399,070	11	11	211,794,020
498	1,764	2,057,551,460	6	66	157,766,000	115	116	1,643,591,760
498	1,764	2,057,551,460	6	66	157,766,000	115	116	1,643,591,760
26,636	97,612	120,592,261,900	725	7,360	14,437,733,330	6,192	6,280	77,859,084,440
100	370	476,412,870	3	36	81,415,720	19	20	226,799,890
4,135	16,913	16,131,205,970	150	1,401	1,498,157,820	1,082	1,084	12,279,000,000
2,651	10,192	13,582,305,880	61	638	1,237,226,150	658	674	9,924,997,630
504	2,591	4,072,872,550	41	475	1,205,306,600	134	137	2,229,749,690
324	869	1,225,043,220	6	70	141,956,500	62	62	1,194,339,780
16,432	59,697	76,111,084,650	459	4,687	10,105,200,560	3,761	3,821	46,218,670,400
15	84	240,700,330	1	12	34,428,600	3	3	37,720,230
290	974	1,825,371,420	4	41	134,041,380	78	79	1,244,566,260
1,270	3,714	4,637,004,590	-	-	-	244	247	2,977,458,570
952	2,183	2,255,193,940	-	-	-	142	144	1,354,280,920
9	25	35,066,480	-	-	-	9	9	171,501,070

구 분 업 종	장 해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전 산 업	27,772	261,136	536,079,724,330	1,761	1,792	119,173,110,960
금 융 및 보 험 업	106	863	3,033,079,160	10	11	1,152,843,680
금 융 및 보 험 업	106	863	3,033,079,160	10	11	1,152,843,680
광 업	925	8,952	20,717,136,240	437	441	28,577,279,810
석 탄 광 업	675	6,550	15,878,642,320	382	385	25,487,838,570
금속 및 비금속 광 업	31	276	667,404,180	36	37	2,014,543,610
채 석 업	36	350	755,219,000	5	5	240,724,750
석 회 석 광 업	36	376	695,717,550	2	2	105,190,630
제 염 업	2	24	64,606,070	-	-	-
기 타 광 업	132	1,242	2,311,824,880	11	11	696,551,310
연탄응집고체연료생산	13	134	343,722,240	1	1	32,430,940
제 조 업	11,927	116,605	196,212,643,990	383	390	24,703,271,960
식 료 품 제 조 업	661	6,398	9,636,768,690	26	26	1,241,582,900
담 배 제 조 업	9	87	155,883,940	-	-	-
섬유/섬유제품제조(갑화)	228	2,375	3,418,073,820	10	10	461,424,100
제재업/베니아판제조업	144	1,408	2,124,153,900	2	2	96,135,000
목 재 품 제 조 업	248	2,273	3,256,918,650	8	8	343,820,680
펄프 및 지류 제조업	203	1,917	3,551,026,520	8	8	523,794,740
신문·화폐발행/출판업	52	500	1,520,534,750	5	5	296,321,980
인 쇄 업	120	1,191	2,060,275,660	3	3	168,561,470
경 인 쇄 업	8	88	177,718,390	-	-	-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152	11,651	17,321,838,580	42	43	2,327,894,590
의약품 화장품향료제조	46	479	841,599,330	-	-	-
코크스/ 석탄 가스제조	1	12	18,316,430	-	-	-
고 무 제 품 제 조 업	264	2,698	3,928,353,880	8	8	650,355,900
도 자 기 제품 제조업	39	381	708,273,820	2	2	119,753,980
유 리 제 조 업	104	860	1,944,970,490	4	5	274,215,620

(단위: 명, 건, 원)

유 족 보 상 연 금			장 의 비			간 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11,429	128,720	134,702,574,010	2,439	2,455	22,161,957,270	2,291	21,524	20,240,353,760
189	2,015	3,997,466,130	23	23	240,815,790	25	213	203,515,600
189	2,015	3,997,466,130	23	23	240,815,790	25	213	203,515,600
2,232	24,735	20,357,924,350	483	486	4,732,530,450	36	328	280,571,560
1,953	21,608	17,853,620,130	422	424	4,197,417,760	23	198	171,701,160
161	1,827	1,187,108,700	36	37	316,872,770	3	36	27,234,480
32	342	336,539,660	7	7	64,941,710	2	21	15,238,340
11	115	150,676,830	2	2	19,331,060	1	7	5,835,960
-	-	-	-	-	-	-	-	-
67	758	726,026,990	14	14	119,428,360	6	54	49,937,180
8	85	103,952,040	2	2	14,538,790	1	12	10,624,440
2,814	31,803	36,344,695,940	605	612	5,286,658,690	581	5,379	5,055,398,390
182	2,001	1,756,847,960	38	38	307,450,440	35	299	281,985,060
2	24	20,213,690	-	-	-	-	-	-
78	915	936,611,190	13	13	102,772,350	27	279	233,213,680
27	313	241,205,950	6	6	48,241,610	4	48	36,412,400
60	652	486,612,100	15	15	115,155,440	21	174	173,260,390
52	586	641,470,170	12	12	108,427,030	10	107	104,201,000
37	414	609,728,910	7	7	62,545,380	9	75	72,442,200
26	299	278,679,820	3	3	29,722,980	7	70	67,085,540
-	-	-	-	-	-	-	-	-
268	2,952	3,358,118,700	68	69	576,496,700	59	543	531,286,580
22	260	394,052,080	1	1	9,447,360	3	17	44,688,160
-	-	-	-	-	-	-	-	-
59	682	722,176,420	11	11	96,981,140	11	92	82,581,360
30	358	318,741,770	5	5	39,344,090	5	46	45,258,700
27	329	298,706,560	4	5	31,224,300	3	32	24,116,980

구 분 업 종	장 해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요업/토석제품 제조업	247	2,484	3,708,413,970	13	13	772,082,790
시멘트제조업	32	289	897,638,650	-	-	-
시멘트원료채굴/제조	24	266	513,547,550	-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885	6,655	13,641,959,620	62	62	4,076,446,070
금속제련업	69	692	1,363,267,940	3	3	193,047,210
금속재료품제조업	440	4,440	8,071,799,370	17	21	1,458,780,240
금속제품제조/가공	1,109	12,888	16,595,425,550	1	1	29,878,290
도금업	119	1,122	1,960,948,890	11	11	668,198,370
기계기구제조업	1,410	13,589	24,185,172,700	40	40	2,935,493,650
전기기계기구제품제조	249	2,519	4,224,085,440	6	7	404,890,620
전자제품제조업	276	2,854	4,811,163,310	11	11	613,805,270
선박 건조 및 수리업	965	8,497	20,816,771,340	29	29	2,534,087,470
수송용기계제조업(갑)	439	3,839	10,027,586,980	13	13	1,003,905,280
계량/광학/기타정밀기계	70	619	1,108,413,240	1	1	77,940,080
수제품제조업	81	754	1,309,703,780	8	8	472,400,640
기타제조업	565	5,407	8,612,096,870	17	17	937,776,270
섬유/섬유제품제조(을)	618	6,375	9,702,616,420	15	15	900,186,190
금속제품제조/가공(을)	79	946	1,039,668,420	-	-	-
수송용기계,제조업(을)	967	9,818	12,666,129,480	18	18	1,120,492,560
제본/인쇄물가공업	20	234	291,527,620	-	-	-
전기·가스및상수도사업	70	723	2,119,600,990	3	3	341,232,22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0	723	2,119,600,990	3	3	341,232,220
건설업	8,782	80,547	206,538,327,820	475	483	39,201,230,390
일반건설공사(갑)	8,320	75,328	195,462,730,280	472	480	39,024,316,760
중건설공사	193	2,188	4,422,240,970	3	3	176,913,630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21	244	471,952,740	-	-	-
일반건설공사(을)	248	2,787	6,181,403,830	-	-	-

(단위: 명, 건, 원)

유 족 보 상 연 금			장 의 비			간 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93	1,004	960,953,950	21	22	188,704,670	11	103	103,546,210
18	211	316,050,900	2	2	21,175,210	1	12	13,658,300
1	12	8,105,670	-	-	-	1	12	9,028,280
292	3,217	2,954,086,280	86	87	738,471,090	35	283	258,084,600
50	583	936,073,770	6	6	56,378,670	3	36	36,457,120
127	1,445	1,691,714,260	26	26	232,119,910	22	218	209,158,870
90	1,077	1,148,279,940	3	3	29,155,020	43	401	362,409,040
48	539	565,511,390	15	15	122,662,450	6	59	52,315,300
330	3,712	4,475,313,780	75	77	702,938,480	61	617	560,351,960
74	842	1,029,261,290	13	13	119,048,600	16	122	137,606,790
123	1,426	2,338,920,940	15	15	124,576,810	24	260	227,039,900
152	1,660	2,622,195,140	48	48	464,191,730	28	274	247,449,820
120	1,405	2,070,599,390	20	20	189,940,440	34	299	297,153,680
22	247	279,391,610	5	5	44,244,960	7	66	58,500,140
25	293	232,231,940	8	8	62,598,380	11	108	94,439,420
127	1,410	1,405,920,350	31	31	249,339,870	38	312	301,275,500
140	1,592	1,567,769,890	21	21	175,128,540	33	282	259,592,370
-	-	-	-	-	-	-	-	-
117	1,307	1,657,425,140	27	28	238,175,040	13	121	117,140,740
3	36	21,724,990	-	-	-	1	12	13,658,300
71	788	1,627,346,070	11	11	117,413,990	16	145	141,800,620
71	788	1,627,346,070	11	11	117,413,990	16	145	141,800,620
2,289	25,538	28,740,465,330	624	626	5,920,672,730	727	6,937	6,616,273,320
2,276	25,383	28,557,309,370	621	623	5,896,756,510	702	6,658	6,369,169,780
10	119	123,760,540	3	3	23,916,220	9	106	92,434,940
-	-	-	-	-	-	3	31	28,723,380
3	36	59,395,420	-	-	-	13	142	125,945,220

구 분 업 종	장 해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운송·창고 및 통신업	1,947	18,942	35,193,682,500	97	99	5,001,789,490
철도궤도및삭도 운수업	24	196	825,034,830	3	3	239,171,040
자동차 여 객 운수업	570	4,878	10,278,003,130	44	46	2,019,490,280
소 형 자동차 운수업	280	3,110	3,583,048,510	3	3	86,624,850
화 물 자동차 운수업	390	4,116	7,147,710,520	12	12	549,458,490
수 상 운 수 업	157	1,126	2,508,639,960	20	20	1,116,329,120
항만하역화물 취급사업	260	2,950	4,696,133,000	3	3	198,971,660
항 공 운 수 업	18	184	453,903,990	-	-	-
운 수 관 련 서비스업	69	673	1,186,606,340	4	4	235,980,890
창 고 업	51	421	910,292,180	6	6	282,986,000
통 신 업	128	1,288	3,604,310,040	2	2	272,777,160
임 업	112	857	1,672,037,720	13	13	552,745,140
별 목 업	11	87	256,351,750	2	2	104,390,000
기 타 의 임 업	101	770	1,415,685,970	11	11	448,355,140
어 업	41	398	511,033,680	-	-	-
어 업	41	398	511,033,680	-	-	-
농 업	57	469	1,053,759,170	5	5	375,217,700
농 업	57	469	1,053,759,170	5	5	375,217,700
기 타 의 사 업	3,830	32,780	69,028,423,060	338	347	19,267,500,570
농 수산물 위탁판매업	14	106	256,667,310	-	-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800	6,906	11,814,706,000	62	64	2,478,192,64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467	4,097	7,399,241,990	36	38	1,925,100,850
중 기 관 리 사 업	181	1,774	3,858,029,050	15	15	1,001,019,850
골프장및경마장 운영업	44	349	888,678,880	3	3	208,444,600
기 타 의 각 종 사 업	2,260	19,243	43,338,930,540	191	195	11,400,281,940
해 외 파 견 사 업	2	25	40,536,940	1	1	82,473,570
컴퓨터운용및법무회계관련서비스	22	107	724,684,750	11	12	944,110,0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5	133	596,105,760	16	16	1,109,057,060
교 육 서 비 스 업	10	40	110,841,840	3	3	118,820,000
주 한 미 군	-	-	-	-	-	-

(단위: 명, 건, 원)

유 족 보 상 연 금			장 의 비			간 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1,037	11,660	10,873,332,550	156	156	1,318,910,080	277	2,711	2,586,882,940
27	287	499,723,050	9	9	87,854,010	2	18	13,766,880
447	5,024	3,542,434,080	67	67	531,880,260	102	1,007	964,623,490
56	628	352,912,850	4	4	30,154,690	54	543	500,750,630
129	1,455	1,253,143,400	17	17	135,059,320	43	378	398,278,270
120	1,306	1,303,728,980	28	28	238,670,040	13	117	100,024,260
65	774	701,711,630	4	4	40,574,220	23	237	220,001,560
11	116	178,046,940	2	2	21,629,880	1	12	9,152,980
70	787	849,239,700	7	7	72,414,780	11	115	101,903,320
40	425	445,425,160	11	11	86,878,310	6	40	34,505,100
73	858	1,746,966,760	7	7	73,794,570	23	244	243,876,450
89	999	706,217,120	18	18	151,343,810	12	113	109,439,020
17	187	153,048,310	4	4	37,901,880	4	46	44,200,980
72	812	553,168,810	14	14	113,441,930	8	67	65,238,040
35	424	260,854,790	-	-	-	4	38	33,136,440
35	424	260,854,790	-	-	-	4	38	33,136,440
47	552	489,296,950	8	8	61,780,550	8	61	68,467,600
47	552	489,296,950	8	8	61,780,550	8	61	68,467,600
2,667	30,206	31,304,974,780	511	515	4,331,831,180	609	5,599	5,144,868,270
8	98	73,533,790	-	-	-	3	35	27,259,420
580	6,571	3,703,721,010	83	84	626,240,340	175	1,602	1,398,906,120
292	3,327	3,106,576,770	61	61	512,180,220	56	541	500,370,720
82	916	824,458,240	23	23	191,569,320	16	152	134,489,190
20	236	274,414,830	4	4	34,770,150	6	61	59,068,260
1,611	18,160	22,035,397,970	297	299	2,581,224,140	340	3,091	2,920,892,160
8	90	179,046,450	1	1	10,814,940	-	-	-
45	474	798,745,460	17	18	166,966,970	9	79	69,698,480
25	245	252,317,710	22	22	185,489,680	4	38	34,183,920
8	77	41,673,150	3	3	22,575,420	-	-	-
1	12	15,089,400	-	-	-	-	-	-

제 4-4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보 험 금 여 합 계			요 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206,333	2,329,289	3,163,768,608,840	166,443	1,278,061	800,390,673,170
서울 지역 본부	서울 본부	5,195	37,426	54,470,676,610	3,698	17,409	11,287,506,660
	서울 강남	5,872	28,294	44,315,253,270	4,069	11,654	9,611,777,540
	서울 동부	6,907	46,165	75,560,789,780	5,431	22,889	20,590,670,930
	서울 서부	4,541	30,045	41,236,879,070	3,464	16,325	10,022,922,170
	서울 남부	9,064	70,919	108,190,932,660	7,242	37,629	31,036,391,900
	서울 북부	8,622	83,765	127,242,644,350	6,815	43,466	29,887,910,340
	서울 관악	6,532	44,113	59,531,608,120	5,172	23,801	13,091,607,730
	의정부	6,386	62,668	80,899,678,200	4,999	35,164	15,664,133,470
	춘천	1,889	16,594	20,612,087,580	1,463	8,951	4,824,927,660
	강릉	3,747	43,127	57,567,723,340	3,110	23,663	21,422,267,840
	원주	2,118	19,049	24,830,615,890	1,800	11,221	6,778,454,970
	태백	4,646	44,880	79,366,852,590	2,833	18,972	17,127,585,400
	영월	3,560	33,580	61,185,611,760	2,269	13,756	15,486,726,820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본부	13,300	129,589	152,454,203,790	10,685	74,672	42,044,712,550
	부산 동부	5,199	43,158	52,974,963,120	4,228	24,382	14,081,439,050
	부산 북부	4,667	33,046	42,450,197,910	3,022	16,091	9,010,134,310
	창원	9,961	138,289	168,141,572,590	8,347	84,506	39,913,811,740
	울산	8,685	103,690	134,392,932,490	7,132	63,644	22,244,521,860
	양산	5,820	46,764	60,379,632,160	4,336	24,503	15,228,166,610
	진주	2,821	25,385	28,657,034,960	2,214	13,585	6,080,860,070
	통영	3,620	45,102	66,920,097,890	2,929	25,051	10,801,333,360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8,389	72,390	82,190,813,320	7,385	46,916	28,060,135,900
	대구 서부	3,601	29,182	33,844,216,230	2,780	16,600	8,380,919,510
	대구 북부	4,118	30,440	36,417,732,050	2,330	10,832	4,923,694,390

지사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건, 원)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120,764	534,686	848,134,638,170	6,182	66,726	151,580,190,250	34,150	34,875	531,305,386,920
2,484	7,889	13,737,091,070	65	712	1,937,886,360	361	368	5,768,112,230
2,840	5,867	10,250,034,040	32	192	470,922,700	220	230	3,154,718,260
3,468	10,586	15,803,533,380	84	729	1,911,825,170	729	749	13,660,795,610
2,291	6,382	10,476,090,360	57	557	1,542,764,330	449	454	6,654,976,710
4,387	15,639	25,614,863,080	151	1,589	3,377,411,810	853	875	16,048,521,040
4,289	19,007	29,427,241,540	146	1,467	3,438,193,990	1,134	1,157	22,251,394,180
3,625	11,509	17,144,917,800	14	56	158,865,510	706	726	11,258,705,920
4,021	15,635	26,771,051,600	130	1,403	3,465,870,630	929	938	13,985,203,670
1,147	4,136	5,863,695,780	22	156	337,107,740	188	191	2,820,046,380
1,851	9,613	14,484,489,160	315	3,414	6,919,138,410	360	378	4,752,879,850
1,050	4,204	6,281,236,040	61	630	1,631,549,920	258	264	3,905,970,190
2,406	8,050	12,399,774,080	380	3,880	7,959,286,690	762	775	13,471,274,390
1,753	5,101	8,042,245,990	535	5,616	11,380,752,090	448	454	8,010,317,590
6,126	25,191	37,922,211,860	195	2,087	5,067,373,420	1,613	1,635	23,497,593,020
2,573	9,652	13,854,630,000	41	348	733,178,310	704	715	10,277,333,630
3,071	8,242	11,520,418,440	36	355	693,664,570	669	676	8,246,518,230
6,485	35,035	59,616,643,000	269	2,910	6,758,327,900	2,157	2,217	34,046,862,940
5,610	25,570	53,425,948,800	41	435	1,085,482,160	1,719	1,766	28,509,381,850
3,500	10,660	15,861,347,570	227	2,298	5,255,079,090	815	820	10,403,892,830
1,482	5,960	8,383,347,390	37	393	866,475,180	304	308	4,266,477,230
2,496	13,585	27,885,878,530	11	113	345,117,240	748	794	14,243,085,090
4,340	17,810	24,120,330,560	84	501	1,255,149,580	1,233	1,262	16,630,595,400
2,189	6,668	8,991,352,870	64	661	1,476,339,250	541	550	7,184,421,960
2,063	5,450	7,307,558,010	97	915	2,080,209,050	416	425	4,692,708,600

구 분 지 사			보 험 금 여 합 계			요 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대구 지역 본부	포항		4,611	55,830	70,300,486,290	3,628	32,141	18,492,111,450
	구미		1,962	15,471	20,605,488,570	1,469	7,909	4,094,593,970
	영주		2,423	27,193	39,945,744,860	1,791	13,492	12,207,460,150
	안동		1,041	9,868	13,585,011,510	808	5,492	4,308,303,340
경인 지역 본부	경인본부		8,904	67,284	86,793,279,220	7,073	36,370	19,095,219,810
	인천북부		10,099	114,742	168,113,670,430	8,277	66,048	55,001,767,590
	수원		8,289	63,961	86,687,973,150	6,508	35,944	20,184,616,070
	부천		5,813	41,364	52,236,944,160	4,620	23,501	12,436,215,760
	안양		7,100	55,638	86,110,770,770	5,873	28,783	21,858,952,620
	안산		9,107	73,874	107,676,088,600	7,411	39,807	27,425,298,870
	성남		6,343	49,314	75,163,457,840	4,903	25,599	18,112,167,730
	평택		6,051	36,210	54,620,264,710	4,771	20,155	11,962,185,770
	고양		4,023	26,920	41,006,766,560	3,229	14,878	12,400,040,460
광주 지역 본부	광주본부		8,464	83,648	115,004,429,560	7,017	47,149	32,531,818,820
	전주		4,425	39,370	48,780,032,930	3,523	21,686	11,765,832,090
	익산		2,090	16,382	19,413,400,500	1,594	8,548	5,143,715,430
	군산		2,008	21,972	25,787,320,210	1,525	11,797	6,332,192,230
	목포		2,394	21,290	27,169,248,680	1,932	12,108	6,724,973,690
	여수		3,614	31,310	42,918,387,600	2,965	16,461	11,568,406,690
	제주		1,407	9,895	11,096,894,590	1,129	5,162	2,623,052,270
대전 지역 본부	대전본부		7,841	87,184	112,902,173,700	6,590	52,927	37,272,463,000
	청주		4,312	39,670	49,823,056,940	3,499	23,076	13,925,121,110
	천안		4,711	31,582	40,224,153,590	3,692	17,612	9,736,920,890
	충주		2,597	26,636	34,736,944,580	1,962	14,534	9,878,876,910
	보령		3,206	25,021	39,231,869,560	2,130	11,200	7,705,753,670

(단위: 명, 건, 원)

휴 업 급 여			상 병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2,926	13,258	21,896,990,990	168	1,940	3,656,602,680	751	773	10,772,859,040
1,179	3,566	5,149,117,170	11	78	211,937,850	277	282	3,960,883,610
1,175	5,142	7,559,368,540	327	3,479	6,964,868,960	290	293	3,926,210,960
544	1,802	2,760,211,890	93	963	2,265,322,310	83	84	1,187,817,160
4,875	16,342	24,363,054,440	43	358	724,321,270	1,165	1,182	17,866,345,860
5,572	22,290	32,204,565,980	900	9,467	25,107,402,770	1,300	1,329	21,387,476,730
4,997	17,176	30,492,432,810	81	857	2,228,870,020	1,005	1,023	15,516,891,580
3,318	9,829	14,658,762,930	38	326	799,344,250	778	789	11,098,485,010
4,022	15,495	23,789,455,130	63	477	1,074,742,450	944	963	17,097,606,850
5,381	18,990	29,221,900,340	228	2,255	4,695,603,710	1,278	1,303	21,034,789,650
3,843	11,541	17,664,039,500	128	1,177	2,700,326,570	855	876	13,373,236,070
3,690	9,014	16,000,995,620	23	194	462,984,440	762	766	13,016,226,900
2,448	6,954	11,000,395,830	36	292	749,991,780	490	501	6,943,099,660
4,669	19,464	31,572,385,150	210	2,101	5,064,333,630	1,142	1,168	17,628,361,080
2,429	8,392	12,285,642,770	27	253	531,453,840	574	587	8,594,699,920
1,228	3,681	4,777,483,480	14	132	210,457,560	241	251	3,307,068,290
1,294	5,453	7,783,822,040	14	146	331,098,200	302	318	3,811,699,710
1,645	5,735	9,031,072,560	15	135	326,260,790	332	335	4,853,542,930
1,839	6,871	10,292,225,680	125	1,195	2,582,872,120	375	381	5,412,880,250
754	2,270	2,952,671,140	3	16	35,316,300	121	123	1,786,986,160
4,051	16,201	24,141,804,120	513	5,517	12,906,203,400	1,031	1,046	15,791,867,960
2,567	9,165	13,746,349,230	50	515	1,019,523,660	595	603	8,798,845,460
2,727	7,533	12,550,238,720	46	494	1,117,821,710	453	465	6,674,898,450
1,536	5,877	8,611,625,660	136	1,164	2,369,202,380	345	355	4,393,883,150
1,799	5,204	8,442,095,500	191	1,778	3,295,356,500	349	352	5,326,937,680

구 분 지 사		장 해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합 계		27,772	261,136	536,079,724,330	1,761	1,792	119,173,110,960
서울 지 역 본 부	서울 본 부	652	6,221	13,153,665,520	31	33	2,196,620,980
	서울 강남	439	4,439	10,285,672,530	33	33	2,600,950,180
	서울 동 부	815	6,851	16,791,022,520	40	42	2,320,725,850
	서울 서 부	397	3,921	7,592,912,850	29	29	1,808,527,730
	서울 남 부	1,117	10,392	23,364,403,120	46	47	3,132,287,250
	서울 북 부	1,622	13,452	35,776,988,770	26	26	1,649,548,410
	서울 관 악	611	5,294	12,758,626,520	30	31	1,844,324,030
	의 정 부	669	5,326	13,002,261,000	49	51	3,387,333,280
	춘 천	208	1,917	4,282,217,760	15	15	1,068,186,570
	강 릉	342	3,408	6,429,705,120	23	25	1,279,102,960
	원 주	186	1,756	3,900,710,840	15	16	1,108,830,790
	태 백	411	4,143	8,411,417,930	150	152	10,579,698,480
	영 월	268	2,573	5,528,236,020	99	99	6,601,932,810
부 산 지 역 본 부	부 산 본 부	1,970	19,501	34,504,701,970	40	42	2,752,096,600
	부 산 동 부	612	6,023	9,888,464,580	28	30	1,800,525,830
	부 산 북 부	546	5,531	9,118,835,070	24	24	1,406,882,710
	창 원	1,003	9,307	18,786,940,730	44	46	3,290,130,410
	울 산	883	8,716	18,938,678,460	46	46	4,169,720,020
	양 산	542	5,545	8,379,228,760	28	28	1,716,622,670
	진 주	317	3,478	5,678,464,690	22	23	1,530,169,560
	통 영	512	4,419	10,538,578,050	24	25	1,615,067,640
대구 지역 본부	대 구 본 부	512	3,187	7,084,511,840	35	35	1,965,095,240
	대 구 서 부	326	3,143	4,936,440,320	16	16	1,115,464,410
	대 구 북 부	915	10,156	13,851,738,300	11	11	662,170,130

(단위: 명, 건, 원)

유 족 보 상 연 금			장 의 비			간 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11,429	128,720	134,702,574,010	2,439	2,455	22,161,957,270	2,291	21524	20,240,353,760
312	3,569	4,811,872,230	48	48	432,900,580	118	1191	1,145,020,980
465	5,440	6,954,264,010	63	63	576,080,330	41	389	410,833,680
291	3,297	3,168,034,240	56	58	485,449,240	96	983	828,732,840
184	2,029	2,447,052,930	41	42	369,927,730	33	322	321,704,260
316	3,585	3,874,453,940	65	66	590,796,080	112	1112	1,151,804,440
222	2,532	2,131,597,820	35	35	301,776,480	272	2636	2,377,992,820
200	2,216	2,422,017,320	40	41	365,077,410	57	460	487,465,880
303	3,450	3,459,963,380	66	66	585,203,930	71	655	578,657,240
95	1,043	1,061,102,400	21	21	197,531,910	19	171	157,271,380
209	2,368	1,824,490,210	27	28	229,412,390	24	246	226,237,400
71	795	901,571,700	19	19	168,672,420	21	148	153,619,020
795	8,761	7,714,884,430	167	168	1,693,828,090	1	12	9,103,100
526	5,845	5,026,827,780	108	108	1,074,912,180	3	37	33,660,480
425	4,754	4,607,361,100	69	69	616,859,070	173	1,660	1,441,294,200
156	1,721	1,730,780,790	41	41	350,892,840	24	253	257,718,090
179	1,968	1,966,374,300	46	46	387,771,180	13	125	99,599,100
348	4,040	4,936,270,100	66	67	613,508,410	18	176	179,077,360
290	3,215	5,050,701,340	76	76	722,916,760	30	232	245,581,240
249	2,612	2,670,160,580	71	71	641,838,250	23	241	223,295,800
124	1,372	1,364,431,570	34	34	292,793,710	21	243	194,015,560
95	1,051	1,214,228,980	26	26	234,609,620	8	46	42,199,380
210	2,003	2,025,038,970	52	52	425,437,350	78	641	624,518,480
126	1,387	1,401,590,300	24	24	205,340,020	18	136	152,347,590
215	2,457	2,578,659,200	20	20	173,385,490	20	178	147,608,880

구 분 지 사			장 해 보 상 연 금			유 족 보 상 일 시 금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대구 지역본부	포항		513	5,133	9,779,461,450	29	29	2,310,450,500
	구미		241	2,413	4,180,620,460	22	22	1,293,992,670
	영주		130	1,277	2,530,715,550	48	48	3,326,873,090
	안동		84	812	1,571,855,370	7	7	614,142,410
경인 지역본부	경인본부		983	9,316	18,621,553,270	30	30	2,093,452,190
	인천북부		1,275	11,176	27,503,702,560	35	35	2,433,163,220
	수원		605	5,565	11,766,220,690	38	38	2,357,750,960
	부천		515	4,797	8,432,032,820	34	34	2,486,313,880
	안양		811	7,222	16,992,674,090	23	23	1,741,791,990
	안산		880	7,891	17,478,844,070	55	56	3,326,785,360
	성남		654	5,957	14,683,785,210	51	53	3,886,982,950
	평택		343	2,808	5,991,906,150	53	53	3,310,886,220
	고양		288	2,076	5,628,678,390	30	31	1,957,674,290
광주 지역본부	광주본부		856	8,072	16,399,090,450	75	75	5,183,466,010
	전주		600	5,846	10,191,591,750	38	39	2,235,995,450
	익산		241	2,577	4,312,872,960	8	9	442,775,170
	군산		307	3,062	5,520,847,650	14	14	870,300,060
	목포		179	1,524	3,828,037,150	19	19	882,397,940
	여수		400	3,898	7,969,178,160	25	25	1,929,405,700
	제주		120	1,270	2,121,109,330	10	11	543,150,190
대전 지역본부	대전본부		815	7,601	13,976,943,750	50	54	3,527,752,480
	청주		389	3,823	6,776,359,500	37	37	2,487,685,060
	천안		331	3,350	5,730,203,770	27	28	1,683,370,100
	충주		294	2,645	5,669,009,270	26	26	1,899,075,540
	보령		238	2,326	5,438,007,240	71	71	4,745,462,990

(단위: 명, 건, 원)

유 족 보 상 연 금			장 의 비			간 병 금 여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수급자수	지급건수	금 액
215	2,466	2,973,032,900	38	38	349,630,290	10	61	69,346,990
103	1,067	1,272,690,170	40	40	358,395,530	8	101	83,257,140
299	3,356	2,784,952,090	61	61	585,323,640	6	69	59,971,880
56	614	694,085,660	12	12	109,742,950	7	85	73,530,420
289	3,327	3,303,232,710	48	49	420,950,850	34	320	305,148,820
194	2,197	2,333,207,530	44	44	367,021,700	240	2171	1,775,362,350
295	2,951	3,277,007,880	50	50	449,738,950	44	381	414,444,190
153	1,757	1,677,104,630	41	41	356,590,330	31	303	292,094,550
170	1,957	2,508,816,490	39	40	367,669,950	78	687	679,061,200
289	3,125	3,435,585,040	74	74	677,573,180	49	402	379,708,380
263	3,073	3,173,269,330	62	63	556,531,480	110	985	1,013,119,000
280	3,084	3,096,557,280	72	72	641,376,750	16	87	137,145,580
154	1,762	1,645,715,410	35	35	305,861,040	43	400	375,309,700
430	4,781	4,963,950,370	100	100	931,122,000	79	781	729,902,050
195	2,124	2,283,081,300	56	57	488,945,960	45	405	402,789,850
80	906	874,509,150	13	13	103,364,120	27	268	241,154,340
87	968	777,443,900	20	20	179,858,440	22	199	180,057,980
113	1,233	1,156,163,630	22	22	191,148,630	23	183	175,651,360
171	1,978	2,324,746,560	37	37	337,060,930	53	477	501,611,510
79	920	812,793,010	13	13	112,851,510	12	114	108,964,680
313	3,489	4,320,684,110	77	77	695,976,900	33	294	268,477,980
199	2,203	2,411,983,080	47	47	415,977,870	27	223	241,211,970
179	1,986	2,273,630,600	41	45	352,917,900	9	78	104,151,450
170	1,955	1,582,461,430	31	31	281,500,570	6	63	51,309,670
353	3,931	3,402,140,130	85	85	787,904,330	9	94	88,211,520

제 4-5 표 연도별

연 도	구 분	수 급 자 1 인 당 보 험 금 여	적용 근로자 1 인 당 보 험 금 여	수 급 자 1 인 당 요 양 금 여
'67		31,962	1,731	16,987
'68		36,498	1,714	19,708
'69		41,209	1,911	20,993
'70		48,834	2,366	23,762
'71		57,006	3,046	28,937
'72		74,174	3,499	33,364
'73		73,577	3,744	34,572
'74		92,919	4,816	45,744
'75		128,837	6,474	64,566
'76		132,973	5,582	63,718
'77		183,193	8,169	86,222
'78		218,461	10,086	83,327
'79		414,227	14,913	153,506
'80		551,308	16,655	213,880
'81		646,245	22,049	244,374
'82		704,859	28,035	287,759
'83		749,246	29,832	293,053
'84		892,475	32,426	348,725
'85		1,311,616	41,377	587,921
'86		1,511,251	45,213	695,188
'87		1,691,879	45,039	747,225
'88		2,086,677	51,705	892,742
'89		2,753,400	55,221	1,022,400
'90		4,058,539	71,308	1,328,893
'91		5,473,352	88,545	1,527,280
'92		8,670,956	131,973	2,475,999
'93		9,663,860	125,679	1,545,144
'94		7,280,064	137,294	1,783,963
'95		8,690,213	143,605	2,103,054
'96		10,417,096	166,158	3,075,590
'97		12,199,275	188,917	3,589,295
'98		13,755,353	191,371	4,155,188
'99		13,031,024	171,240	4,297,279
'00		12,729,485	153,525	4,386,554
'01		12,181,322	164,874	4,326,533
'02		12,449,459	191,116	4,361,042
'03		13,754,160	234,147	4,652,299
'04		15,109,833	273,073	5,011,415
'05		15,397,151	250,694	4,812,857
'06		15,333,314	270,667	4,808,797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단위 : 원)

1 인 당 장 해 보 상 금	1 인 당 유 족 보 상 금	1 인 당 장 의 비
72,258	317,923	29,896
78,074	386,529	37,241
96,747	519,230	50,730
117,231	657,744	65,531
149,452	823,818	75,790
231,967	933,845	85,214
229,978	961,264	90,113
252,541	1,223,037	110,998
302,103	1,580,619	143,253
350,915	1,942,697	184,357
440,526	2,609,582	236,207
612,063	3,614,161	332,770
896,721	5,178,544	469,830
1,252,555	6,433,215	583,369
1,545,078	8,021,139	706,245
1,687,315	9,014,046	818,633
1,931,734	10,019,559	910,226
2,102,695	10,779,489	981,508
2,331,307	11,654,172	1,055,786
2,417,364	11,654,778	1,079,089
2,475,884	12,875,809	1,171,032
2,761,177	14,750,274	1,324,669
3,414,442	19,841,320	1,847,484
4,362,846	28,349,035	2,652,632
5,570,724	36,442,439	3,414,646
7,033,577	42,745,867	4,030,165
7,835,280	45,618,621	4,318,540
8,601,002	50,041,447	4,731,402
9,537,475	54,564,723	5,102,660
10,528,790	64,284,444	5,994,309
11,933,505	69,948,144	6,542,591
13,045,440	69,949,143	6,529,075
11,931,020	71,088,108	6,652,739
11,533,463	63,683,725	6,693,245
11,718,324	50,307,478	6,906,939
12,369,091	54,225,513	7,337,222
13,210,891	57,758,640	7,763,741
13,699,482	60,926,729	8,205,532
15,145,927	64,204,796	8,612,564
15,557,991	67,673,544	9,086,493

제 4-6 표 '06년도 업종별

업 종 \ 구 분	수 급 자 1인 평 균 보 험 금 여	수 급 자 1인 평 균 요 양 금 여
합 계	15,333,314	4,808,797
금 용 및 보 험 업	16,017,110	4,125,960
금 용 및 보 험 업	16,017,110	4,125,960
광 업	23,149,402	11,484,993
석 탄 광 업	24,420,722	11,210,022
금 속 및 비 금 속 광 업	16,602,289	7,222,427
채 석 업	13,976,887	3,775,121
석 회 석 광 업	18,616,314	6,190,121
제 염 업	21,502,080	2,182,957
기 타 광 업	17,620,005	6,337,883
연 탄 응 집 고 체 연 료 생 산	15,485,720	5,986,790
제 조 업	14,438,756	4,131,176
식 료 품 제 조 업	11,328,181	4,238,095
담 배 제 조 업	14,402,822	2,497,369
섬 유 / 섬 유 제 품 제 조 (갑)	11,581,610	4,383,617
제 재 업 / 베 니 아 판 제 조 업	13,170,052	4,366,875
목 재 품 제 조 업	11,997,155	3,708,099
펄 프 및 지 류 제 조 업	12,908,759	4,045,752
신 문 · 화 폐 발 행 / 출 판 업	14,274,404	4,632,039
인 쇄 업	11,472,182	3,604,600
경 인 쇄 업	27,394,365	23,333,803
화 학 제 품 제 조 업	12,553,502	4,229,966
의 약 품 / 화 장 품 향 료 제 조 업	12,847,921	4,729,207
코 크 스 / 석 탄 가 스 제 조 업	16,424,843	6,653,278
고 무 제 품 제 조 업	13,166,211	3,740,935
도자기 제 품 제 조 업	14,143,287	4,158,013
유 리 제 조 업	12,525,559	3,673,232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단위: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보 상 일시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유 족 보 상 일시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의 비
15,557,991	67,673,544	9,086,493
21,159,281	115,284,368	10,470,252
21,159,281	115,284,368	10,470,252
18,256,605	65,394,233	9,798,200
18,756,748	66,722,090	9,946,488
13,824,675	55,959,545	8,802,021
12,987,628	48,144,950	9,277,387
23,719,222	52,595,315	9,665,530
9,960,025	-	-
16,592,606	63,322,846	8,530,597
13,272,323	32,430,940	7,269,395
14,528,119	64,499,405	8,738,279
11,360,709	47,753,188	8,090,801
16,253,708	-	-
10,852,149	46,142,410	7,905,565
12,921,862	48,067,500	8,040,268
13,345,206	42,977,585	7,677,029
14,563,438	65,474,343	9,035,586
12,545,105	59,264,396	8,935,054
13,910,685	56,187,157	9,907,660
267,710	-	-
13,212,739	55,426,062	8,477,893
14,208,010	-	9,447,360
26,743,700	-	-
14,492,161	81,294,488	8,816,467
12,105,753	59,876,990	7,868,818
14,351,578	68,553,905	7,806,075

업 종 \ 구 분	수 급 자 1인 평 균 보 험 금 여	수 급 자 1인 평 균 요 양 금 여
요 업 / 토 석 제 품 제 조 업	13,902,579	4,833,625
시 멘 트 제 조 업	20,552,855	5,177,569
시 멘 트 원 료 채 굴 / 제 조	24,484,368	12,295,442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12,907,138	4,014,915
금 속 제 련 업	20,396,991	6,852,755
금 속 재 료 품 제 조 업	16,870,927	5,042,350
금 속 제 품 제 조 / 가 공	18,498,158	11,722,116
도 금 업	12,616,684	4,264,937
기 계 기 구 제 조 업	14,026,897	4,064,290
전 기 기 계 기 구 제 품 제 조	11,632,981	3,543,755
전 자 제 품 제 조 업	12,135,021	3,710,034
선 박 건 조 및 수 리 업	21,564,796	4,695,009
수 송 용 기 계, 제 조 업 (갑)	17,759,511	3,292,459
계 량 / 광 학 / 기 타 정 밀 기	10,530,940	2,751,674
수 제 품 제 조 업	12,539,601	4,491,523
기 타 제 조 업	12,706,989	4,303,817
섬 유 / 섬 유 제 품 제 조 (을)	17,656,837	4,471,661
금 속 제 품 제 조 / 가 공 (을)	12,895,873	1,619,636
수 송 용 기 계, 제 조 업 (을)	13,462,546	3,606,725
제 본 / 인 쇄 물 가 공 업	18,173,122	14,729,775
전 기 · 가 스 및 상 수 도 사 업	22,130,706	6,710,766
전 기 가 스 및 수 도 사 업	22,130,706	6,710,766
건 설 업	20,602,929	5,849,437
일 반 건 설 공 사 (갑)	20,436,032	5,794,603
중 건 설 공 사	31,768,664	13,476,695
철 도 또 는 궤 도 신 설 공 사	28,943,814	14,647,147
일 반 건 설 공 사 (을)	31,198,875	12,816,350

(단위: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보 상 일시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유 족 보 상 일시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의 비
13,113,727	59,390,984	8,985,937
23,299,130	-	10,587,605
-	-	-
13,301,563	65,749,130	8,586,873
16,436,294	64,349,070	9,396,445
15,409,551	85,810,602	8,927,689
25,591,667	29,878,290	9,718,340
12,633,614	60,745,306	8,177,497
14,150,990	73,387,341	9,372,513
12,058,926	67,481,770	9,157,585
12,512,888	55,800,479	8,305,121
19,795,866	87,382,327	9,670,661
18,684,302	77,223,483	9,497,022
13,724,235	77,940,080	8,848,992
11,613,754	59,050,080	7,824,798
13,893,507	5,516,251	8,043,222
12,942,103	60,012,413	8,339,454
-	-	-
14,403,769	62,249,587	8,821,298
-	-	-
18,839,933	-	10,673,999
18,839,933	113,744,073	10,673,999
19,777,752	82,528,906	9,488,258
19,739,340	82,678,637	9,495,582
36,929,727	58,971,210	7,972,073
-	-	-
30,853,195	-	-

업 종	구 분	수 급 자 1인 평 균 보 험 금 여	수 급 자 1인 평 균 요 양 금 여
운 송 · 창 고 및 통 신 업		14,388,683	5,435,043
철 도 궤 도 및 삭 도 운 수 업		12,134,089	3,155,578
자 동 차 여 객 운 수 업		13,827,044	5,842,419
소 형 자 동 차 운 수 업		19,436,560	17,315,591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업		16,583,339	6,619,841
수 상 운 수 업		12,020,894	4,178,909
항 만 하 역 화 물 취 급 사 업		21,007,852	11,572,831
항 공 운 수 업		14,730,489	3,265,279
운 수 관 련 서 어 비 스 업		11,362,077	4,610,490
창 고 업		12,714,860	4,178,232
통 신 업		19,701,367	5,478,398
임	업	10,550,229	3,922,048
별 목	업	19,139,719	6,800,952
기 타 의 임	업	9,608,378	3,622,502
어	업	15,367,044	8,149,838
어	업	15,367,044	8,149,838
농	업	10,033,876	3,512,580
농	업	10,033,876	3,512,580
기 타 의 사 업		10,178,386	3,730,903
농 수 산 물 위 탁 판 매 업		9,728,876	3,491,930
건 물 등 의 종 합 관 리 사 업		10,026,257	4,473,860
위 생 및 유 사 서 어 비 스 업		11,828,729	4,275,705
건 설 기 계 관 리 사 업		19,930,062	6,949,805
골 프 장 및 경 마 장 운 영 업		9,553,546	2,931,416
기 타 의 각 종 사 업		10,452,029	3,720,662
해 외 파 건 사 업		31,944,765	18,228,334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11,047,983	2,938,505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사 업		5,718,267	1,994,325
교 육 서 비 스 업		3,327,606	1,445,217
주 한 미 군		6,735,325	4,206,835

(단위: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보 상 일시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유 족 보 상 일시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의 비
14,927,080	51,564,840	8,454,552
22,640,587	79,723,680	9,761,557
14,261,979	45,897,506	7,938,511
17,488,598	28,874,950	7,538,673
13,411,191	45,788,208	7,944,666
13,964,120	55,816,456	8,523,930
19,698,268	66,323,887	10,143,555
18,214,541	-	10,814,940
13,021,327	58,995,223	10,344,969
15,182,624	47,164,333	7,898,028
21,415,854	136,388,580	10,542,081
12,092,096	42,518,857	8,407,989
14,455,099	52,195,000	9,475,470
11,732,297	40,759,558	8,102,995
19,254,002	-	-
19,254,002	-	-
14,292,102	75,043,540	7,722,569
14,292,102	75,043,540	7,722,569
12,574,142	57,004,440	8,477,165
11,936,836	-	-
11,348,429	39,970,849	7,545,064
15,083,583	53,475,024	8,396,397
16,639,923	66,734,657	8,329,101
19,263,545	69,481,533	8,692,538
12,288,931	59,687,340	8,690,990
12,573,410	82,473,570	10,814,940
15,955,978	85,828,187	9,821,586
12,202,699	69,316,066	8,431,349
9,537,190	39,606,667	7,525,140
19,055,674	-	-

제 4-7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수급자 1인 평균 보 험 금 여	수급자 1인 평균 요 양 금 여	수급자 1인평균 휴 업 금 여
합	계	15,333,314	4,808,797	7,023,075
서울 지역 본부	서울 본부	10,485,212	3,052,327	5,530,230
	서울 강남	7,546,876	2,362,196	3,609,167
	서울 동부	10,939,741	3,791,322	4,556,959
	서울 서부	9,081,013	2,893,453	4,572,715
	서울 남부	11,936,334	4,285,611	5,838,811
	서울 북부	14,757,904	4,385,607	6,861,096
	서울 관악	9,113,841	2,531,247	4,729,632
	의정부	12,668,287	3,133,453	6,657,809
	춘천	10,911,640	3,297,968	5,112,202
	강릉	15,363,684	6,888,189	7,825,224
	원주	11,723,615	3,765,808	5,982,130
	태백	17,082,835	6,045,741	5,153,688
	영월	17,186,970	6,825,353	4,587,705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본부	11,462,722	3,934,929	6,190,371
	부산 동부	10,189,452	3,330,520	5,384,621
	부산 북부	9,095,821	2,981,514	3,751,357
	창원	16,879,989	4,781,815	9,193,006
	울산	15,474,143	3,118,974	9,523,342
	양산	10,374,507	3,512,031	4,531,814
	진주	10,158,467	2,746,549	5,656,780
	통영	18,486,215	3,687,721	11,172,227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9,797,451	3,799,612	5,557,680
	대구 서부	9,398,560	3,014,719	4,107,516
	대구 북부	8,843,548	2,113,174	3,542,200

지사별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단위: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일 시 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유 족 일 시 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의 비
15,557,991	67,673,544	9,086,493
15,978,150	70,858,741	9,018,762
14,339,628	78,816,672	9,144,132
18,739,089	58,018,146	8,668,736
14,821,774	62,363,025	9,022,628
18,814,210	68,093,201	9,089,170
19,622,041	63,444,170	8,622,185
15,947,176	61,477,468	9,126,935
15,054,041	69,129,251	8,866,726
15,000,247	71,212,438	9,406,281
13,202,444	55,613,172	8,496,755
15,139,419	73,922,053	8,877,496
17,678,838	70,531,323	10,142,683
17,880,173	66,686,190	9,952,891
14,567,634	68,802,415	8,939,987
14,598,485	64,304,494	8,558,362
12,326,634	58,620,113	8,429,808
15,784,359	74,775,691	9,295,582
16,584,864	90,646,087	9,512,063
12,765,513	61,307,953	9,039,975
14,034,465	69,553,162	8,611,580
19,041,558	67,294,485	9,023,447
13,487,912	56,145,578	8,181,488
13,279,893	69,716,526	8,555,834
11,280,550	60,197,285	8,669,275

구 분 지 사			수급자 1인 평균 보 험 금 여	수급자 1인 평균 요 양 금 여	수급자 1인평균 휴 업 금 여		
대구 지역 본부	포	항	15,246,256	5,097,054	7,483,592		
	구	미	10,502,288	2,787,334	4,367,360		
	영	주	16,486,069	6,816,002	6,433,505		
	안	동	13,049,963	5,332,059	5,073,919		
경인 지 역 본 부	경	인	본	부	9,747,673	2,699,734	4,997,550
	인	천	북	부	16,646,566	6,645,133	5,779,714
	수		원		10,458,194	3,101,508	6,102,148
	부		천		8,986,228	2,691,822	4,417,951
	안		양		12,128,278	3,721,940	5,914,832
	안		산		11,823,442	3,700,621	5,430,571
	성		남		11,849,828	3,694,099	4,596,419
	평		택		9,026,651	2,507,270	4,336,313
고		양		10,193,081	3,840,211	4,493,626	
광 주 지 역 본 부	광	주	본	부	13,587,480	4,636,143	6,762,130
	전		주		11,023,736	3,339,720	5,057,902
	익		산		9,288,708	3,226,923	3,890,459
	군		산		12,842,291	4,152,257	6,015,318
	목		포		11,348,893	3,480,835	5,490,014
	여		수		11,875,591	3,901,655	5,596,643
	제		주		7,886,919	2,323,341	3,916,009
대 전 지 역 본 부	대	전	본	부	14,398,951	5,655,912	5,959,468
	청		주		11,554,512	3,979,743	5,355,025
	천		안		8,538,347	2,637,303	4,602,214
	충		주		13,375,797	5,035,105	5,606,527
	보		령		12,237,015	3,617,725	4,692,660

(단위: 원)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해 일 시 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유 족 일 시 금	수 급 자 1인 평 균 장 의 비
14,344,686	79,670,707	9,200,797
14,299,219	58,817,849	8,959,888
13,538,658	69,309,856	9,595,470
14,311,050	87,734,630	9,145,246
15,335,919	69,781,740	8,769,809
16,451,905	69,518,949	8,341,402
15,439,693	62,046,078	8,994,779
14,265,405	73,126,879	8,697,325
18,111,872	75,730,087	9,427,435
16,459,147	60,487,007	9,156,394
15,641,212	76,215,352	8,976,314
17,081,663	62,469,551	8,908,010
14,169,591	65,255,810	8,738,887
15,436,393	69,112,880	9,311,220
14,973,345	58,841,986	8,731,178
13,722,275	55,346,896	7,951,086
12,621,522	62,164,290	8,992,922
14,619,105	46,441,997	8,688,574
14,434,347	77,176,228	9,109,755
14,768,481	54,315,019	8,680,885
15,317,040	70,555,050	9,038,661
14,787,976	67,234,731	8,850,593
14,734,875	62,347,041	8,607,754
12,735,893	73,041,367	9,080,664
15,263,432	66,837,507	9,269,463

제 4-8 표 '06년도 임금변동순응률

지 사		구 분	임 금 변 동 순 응 률		최 저 보 상 기 준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4,490	39,985,781,590	138,850	221,854,830,040
서울 지역 본부	서울본부	부	4,897	807,345,810	2,872	3,869,161,290
	서울강남	남	3,510	569,373,820	2,861	2,979,502,430
	서울동부	부	4,606	745,515,780	3,878	6,204,152,520
	서울서부	부	2,981	426,247,640	2,107	3,457,076,130
	서울남부	부	9,073	1,559,337,710	4,606	6,752,217,070
	서울북부	부	10,946	2,046,740,290	5,822	10,209,178,590
	서울관악	악	3,510	509,347,610	3,276	4,907,200,160
	의정	부	7,781	1,187,606,810	3,976	8,225,916,730
	춘천	천	1,725	233,621,400	1,052	1,463,105,610
	강릉	릉	4,356	621,118,050	2,096	2,254,236,850
	원주	주	1,387	200,641,070	1,113	1,870,893,030
	태백	백	11,517	2,164,035,825	999	1,491,696,850
	영월	월	8,465	1,345,351,580	522	587,773,980
부산 지역 본부	부산본부	부	12,995	1,840,181,920	8,243	11,741,157,370
	부산동부	부	3,876	535,754,750	3,255	4,950,475,110
	부산북부	부	3,334	447,658,760	2,763	4,310,013,120
	창원	원	12,799	2,422,804,540	5,329	8,773,697,830
	울산	산	10,506	2,098,054,340	2,483	3,769,437,740
	양산	산	4,783	621,860,360	2,920	4,700,237,960
	진주	주	1,882	266,589,200	2,053	2,852,929,060
	통영	영	8,379	1,609,729,900	1,213	1,984,060,870
대구 지역 본부	대구본부	부	5,679	707,512,790	5,025	9,755,265,040
	대구서부	부	2,752	337,838,280	2,479	4,427,287,250
	대구북부	부	3,157	350,862,190	3,741	4,437,768,580

및 최저보상기준적용 수혜현황

(단위: 건, 원)

구 분 지 사			임 금 변 동 순 응 룰		최 저 보 상 기 준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대구 지역 본부	포	항	5,411	827,594,265	2,897	4,444,999,260
	구	미	1,928	250,781,510	1,242	2,126,050,530
	영	주	3,945	788,264,525	923	1,206,396,070
	안	동	755	120,978,230	564	718,481,920
경 인 지 역 본 부	경	인	6,687	1,025,968,450	4,021	6,419,983,190
	인	천	13,364	2,287,379,280	4,956	8,653,595,010
	수	원	6,794	1,154,026,075	3,474	6,189,163,700
	부	천	3,953	539,979,695	2,720	4,768,133,160
	안	양	5,338	849,849,410	3,656	6,452,467,780
	안	산	8,486	1,205,687,080	3,557	7,037,444,580
	성	남	4,857	711,578,320	3,485	6,483,603,690
	평	택	2,474	305,149,520	2,520	4,679,544,600
	고	양	1,901	292,924,730	2,032	3,523,576,800
광 주 지 역 본 부	광	주	8,144	1,330,031,040	5,981	8,553,817,350
	전	주	3,921	532,919,295	2,967	4,938,777,950
	익	산	1,700	205,915,240	1,513	2,114,185,560
	군	산	2,729	427,064,280	1,668	2,137,045,320
	목	포	1,487	257,048,940	1,585	2,633,768,230
	여	수	3,421	556,907,360	1,541	2,269,732,460
	제	주	854	86,603,460	1,017	1,450,295,780
대 전 지 역 본 부	대	전	7,711	1,098,363,370	4,673	7,338,983,140
	청	주	3,441	441,399,450	2,605	4,458,182,890
	천	안	3,114	72,928,240	2,027	3,496,944,680
	충	주	3,121	381,782,610	1,530	2,265,314,330
	보	령	4,058	579,526,790	1,012	1,519,900,890

제 4-9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합 계		1 급		2 급		3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합	계	61,894	1,067,385,111,250	1,409	56,066,667,600	2,137	74,576,312,070	2,481
서울 지역 본부	서울 본부	1,011	18,921,777,750	50	1,908,580,030	72	2,245,043,940	70
	서울 강남	657	13,440,390,790	43	1,760,911,510	77	2,398,035,750	56
	서울 동부	1,544	30,451,818,130	45	1,910,755,380	78	2,589,989,960	66
	서울 서부	846	14,247,889,560	25	1,010,346,710	35	808,073,930	52
	서울 남부	1,969	39,412,924,160	75	2,818,271,200	100	3,531,271,450	105
	서울 북부	2,755	58,028,382,950	86	3,664,733,470	169	6,688,755,230	158
	서울 관악	1,316	24,017,332,440	34	1,681,407,660	41	1,810,607,240	51
	의 정 부	1,597	26,987,464,670	35	1,466,877,630	57	2,223,119,050	55
	춘 천	396	7,102,264,140	18	560,924,900	21	700,532,720	22
	강 릉	701	11,182,584,970	20	799,546,600	24	849,221,130	29
	원 주	444	7,806,681,030	9	417,035,380	12	692,262,970	11
	태 백	1,173	21,882,692,320	15	534,242,130	14	439,416,900	94
	영 월	716	13,538,553,610	17	579,255,750	14	427,708,960	53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본부	3,583	58,002,294,990	83	2,739,292,780	179	6,173,128,560	189
	부산 동부	1,316	20,165,798,210	17	586,843,920	33	933,737,940	52
	부산 북부	1,215	17,365,353,300	11	396,201,630	35	1,354,679,210	49
	창 원	3,158	52,833,803,670	29	1,231,669,580	27	1,054,779,290	70
	울 산	2,599	47,448,060,310	58	2,508,113,790	38	1,586,715,110	59
	양 산	1,356	18,783,121,590	15	430,584,760	30	872,027,290	34
	진 주	620	9,944,941,920	9	289,880,290	34	1,229,759,590	24
	통 영	1,257	24,781,663,140	11	457,374,710	14	555,224,640	17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1,745	23,715,107,240	12	437,722,140	43	1,123,141,480	54
	대구 서부	866	12,120,862,280	10	478,565,900	16	407,412,870	27
	대구 북부	1,331	18,544,446,900	36	1,176,189,670	60	1,740,920,940	72

지사별 장애등급별 장애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금	4 금		5 금		6 금		7 금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70,637,664,040	1,607	34,934,480,140	4,954	96,369,642,660	9,035	148,022,829,640	7,415	109,913,644,580
1,765,773,130	37	826,235,190	119	2,252,658,330	162	2,608,285,920	158	2,196,651,890
1,771,312,960	22	568,683,460	72	1,401,252,140	97	1,524,747,060	80	1,089,613,240
1,991,850,540	59	1,333,508,610	152	3,068,196,440	242	4,262,282,470	201	3,074,942,140
1,336,140,740	24	567,846,070	65	1,157,894,090	103	1,688,421,430	99	1,317,242,740
3,124,546,750	99	2,427,755,800	185	4,012,288,850	304	5,026,184,210	285	4,176,501,530
4,822,005,780	127	3,265,293,140	283	6,160,222,690	449	7,623,505,190	412	6,302,930,180
1,693,582,690	36	898,502,010	106	1,967,019,120	211	3,486,460,200	153	2,237,717,730
1,694,641,270	40	755,041,090	130	2,411,636,340	213	3,497,391,690	178	2,732,931,880
784,003,680	13	230,695,140	43	809,112,410	67	1,053,824,690	35	555,849,930
786,984,160	23	405,012,770	59	1,046,679,850	126	2,068,529,610	85	1,331,010,570
404,082,890	16	359,104,120	35	930,633,110	65	953,397,350	50	683,659,080
2,792,829,050	20	423,601,660	94	2,964,210,940	129	2,199,807,360	155	4,139,969,350
1,594,940,410	14	292,353,140	67	2,249,838,660	99	1,594,845,580	79	2,213,433,220
4,480,507,050	87	1,699,594,320	319	5,383,378,880	600	8,656,342,210	545	6,732,736,640
1,184,352,670	39	966,466,350	104	1,845,041,310	209	2,907,158,590	176	2,290,329,160
1,005,879,450	29	635,290,410	94	1,537,593,250	174	2,550,864,860	165	2,122,483,770
1,846,388,900	40	846,936,660	159	3,357,843,600	431	7,843,520,110	286	4,384,100,770
1,860,674,330	43	937,956,420	137	2,688,440,090	377	7,271,232,740	204	3,387,618,600
886,829,270	29	411,793,640	96	1,626,506,470	187	2,818,718,060	173	2,213,693,430
618,825,400	23	592,898,310	45	736,035,000	117	1,742,943,080	77	1,005,064,550
524,777,330	13	350,089,390	81	2,001,920,900	275	5,224,676,110	116	2,119,634,270
1,347,117,790	26	352,003,860	97	1,608,456,260	144	1,845,093,590	171	1,778,691,720
665,280,630	17	272,368,930	59	943,898,240	116	1,573,823,900	94	1,100,359,110
1,677,436,380	50	1,079,835,530	161	2,370,633,100	245	3,106,296,210	299	2,983,681,730

구 분 지 사			합 계		1 급		2 급		3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대구 지역 본부	포	항	1,264	20,552,320,490	27	887,400,870	42	1,420,629,860	44
	구	미	518	8,141,504,070	8	263,225,220	14	392,118,330	17
	영	주	420	6,456,926,510	3	54,401,470	8	239,798,520	24
	안	동	167	2,759,672,530	5	168,325,560	7	218,435,860	6
경 인 지 역 본 부	경인	본부	2,147	36,487,899,130	32	1,139,511,990	55	1,704,939,180	84
	인천	북부	2,575	48,891,179,290	66	3,857,960,910	173	5,744,824,720	84
	수	원	1,609	27,283,112,270	31	1,144,290,630	38	1,236,692,190	71
	부	천	1,293	19,530,517,830	15	511,836,620	31	1,057,352,020	30
	안	양	1,755	34,090,280,940	31	1,477,279,950	62	3,077,994,970	67
	안	산	2,157	38,513,633,720	36	1,886,182,130	37	1,708,992,100	60
	성	남	1,509	28,057,021,280	54	2,347,643,300	92	3,402,688,400	64
	평	택	1,105	19,008,133,050	16	880,144,320	21	750,632,520	26
	고	양	778	12,571,778,050	5	152,892,270	28	1,419,868,680	18
광 주 지 역 본 부	광주	본부	1,997	34,027,451,530	68	2,304,944,600	64	1,891,292,470	84
	전	주	1,172	18,786,291,670	27	809,122,810	50	1,530,317,210	45
	익	산	482	7,619,941,250	23	735,109,700	17	573,805,500	26
	군	산	609	9,332,547,360	17	775,085,300	24	642,872,790	30
	목	포	511	8,681,580,080	27	1,006,137,680	20	554,190,250	15
	여	수	775	13,382,058,410	57	2,026,894,230	26	740,714,950	39
	제	주	241	3,908,095,490	13	508,591,630	6	128,615,080	10
대 전 지 역 본 부	대전	본부	1,845	29,768,811,710	37	1,274,155,040	27	733,901,650	46
	청	주	984	15,575,204,960	13	466,902,710	32	1,022,774,130	26
	천	안	784	12,405,102,220	16	573,530,160	24	746,902,340	24
	충	주	639	10,062,892,420	12	414,519,020	17	538,912,420	46
	보	령	587	10,764,944,920	15	555,251,960	13	661,479,780	43

(단위 : 명, 원)

금	4	금	5	금	6	금	7	금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1,241,195,460	30	671,814,250	87	1,489,202,880	171	2,729,468,500	121	1,780,718,750
488,795,820	20	475,161,440	39	795,975,450	82	1,264,989,540	70	896,916,380
774,484,940	7	162,460,820	36	848,236,700	27	408,974,630	49	1,007,631,870
180,701,770	6	169,601,520	13	237,457,360	30	420,279,030	20	276,013,500
2,823,162,190	56	1,165,757,750	219	4,371,587,300	305	5,251,816,720	271	3,782,186,270
2,494,107,180	76	1,724,587,020	263	5,053,633,960	379	6,204,970,250	286	4,551,173,570
1,910,315,480	33	800,751,630	132	2,508,194,050	198	3,825,179,860	148	2,261,683,830
670,832,020	33	637,946,830	99	1,678,042,250	161	2,503,311,370	169	2,354,188,680
2,229,861,820	39	999,746,680	111	1,943,931,920	302	5,120,576,800	237	3,702,154,930
2,009,810,580	34	736,406,110	167	3,485,108,780	336	5,962,599,280	278	4,513,574,200
1,927,303,350	37	726,349,030	109	2,335,652,970	175	2,937,832,390	152	2,328,602,760
451,165,820	20	275,440,570	53	950,964,300	132	2,320,409,280	103	1,682,003,720
418,171,440	15	257,325,240	58	1,241,698,560	100	1,568,215,320	78	1,098,264,810
3,014,921,100	54	1,042,151,930	166	2,809,513,920	238	3,513,555,480	218	3,345,881,510
1,137,287,020	38	707,461,090	97	1,617,968,690	222	3,516,859,280	141	1,719,653,920
600,156,990	15	247,101,260	56	966,390,380	58	759,127,930	53	641,512,880
666,136,130	19	348,577,590	46	767,303,300	104	1,535,960,510	72	943,331,360
380,376,200	12	216,379,790	25	422,438,820	48	832,739,190	33	441,563,630
1,060,419,880	25	491,366,700	66	1,024,088,390	115	1,925,437,550	77	935,189,890
246,628,240	11	180,249,880	32	526,792,140	33	418,039,350	18	237,346,610
1,281,850,830	49	1,014,564,970	157	2,878,447,890	283	4,534,867,740	248	3,630,953,680
865,033,350	29	577,336,460	70	1,296,452,000	130	1,850,144,360	111	1,552,417,530
500,509,540	13	255,878,280	61	1,221,878,500	121	1,951,528,940	84	1,083,470,700
1,343,771,140	17	318,687,340	33	617,301,850	99	1,584,164,840	78	1,183,396,820
1,259,902,500	10	232,509,940	34	749,990,230	96	1,953,429,280	72	1,792,965,550

구 분 지 사		8 급		9 급		10 급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합 계		3,574	124,350,456,520	2,026	52,877,117,740	5,137	103,787,810,950
서울 지 역 본 부	서울 본부	44	1,409,618,740	18	529,692,650	60	1,209,424,470
	서울 강남	27	860,123,370	5	119,478,790	25	576,887,140
	서울 동부	113	3,777,365,470	67	1,937,482,020	158	3,332,675,570
	서울 서부	46	1,462,115,160	20	488,485,140	91	1,906,013,270
	서울 남부	142	5,035,741,240	68	1,856,761,090	155	3,509,110,510
	서울 북부	186	6,523,629,830	107	2,836,708,740	262	5,284,723,820
	서울 관악	73	2,436,415,960	51	1,221,725,450	146	3,064,487,720
	의 정 부	108	3,358,523,020	48	1,151,888,830	167	3,076,648,700
	춘 천	16	522,103,340	18	446,649,350	21	408,137,970
	강 릉	33	1,038,031,470	17	460,779,970	37	717,641,360
	원 주	23	860,987,000	16	379,401,050	28	533,060,760
	태 백	32	1,157,155,090	45	905,533,530	30	688,877,110
	영 월	16	657,715,370	36	650,051,930	8	180,914,970
부산 지 역 본 부	부산 본부	150	4,849,115,930	129	3,399,036,550	246	4,773,583,670
	부산 동부	61	2,090,214,270	36	1,014,506,090	113	2,354,470,700
	부산 북부	36	1,129,670,820	38	921,801,450	108	2,037,630,280
	창 원	241	9,297,658,680	96	2,645,877,280	259	5,817,133,430
	울 산	142	7,208,372,790	48	1,737,550,350	152	3,744,548,250
	양 산	44	1,446,803,710	35	893,014,660	157	2,946,252,980
	진 주	39	1,080,703,190	20	478,516,520	33	599,601,150
	통 영	100	4,918,230,720	21	791,291,620	72	2,046,893,120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129	3,848,380,550	91	2,003,718,420	172	3,137,342,490
	대구 서부	58	1,796,962,720	29	632,673,740	97	1,630,563,060
	대구 북부	32	946,216,880	17	353,386,150	61	1,030,043,610

(단위 : 명, 원)

11 금		12 금		13 금		14 금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3,731	54,024,699,960	8,846	97,200,348,310	2,081	14,153,473,170	7,722	30,469,963,870
33	449,248,000	119	1,215,667,120	13	76,617,800	61	228,280,540
22	301,941,170	76	814,078,700	5	29,753,980	56	223,571,520
71	1,032,353,530	160	1,614,697,440	19	114,256,050	115	411,462,510
62	883,162,400	117	1,136,465,700	30	175,143,550	79	310,538,630
72	1,053,689,660	204	2,117,062,970	20	122,856,580	164	600,882,320
92	1,344,372,530	292	2,933,807,920	20	134,735,480	123	442,958,950
67	1,005,714,520	164	1,757,389,360	15	102,717,830	173	653,584,950
121	1,671,854,430	222	2,075,325,060	56	318,250,130	168	553,335,550
17	227,144,950	64	645,305,350	6	30,477,600	37	127,502,110
31	389,116,960	59	563,633,260	44	295,591,470	125	430,805,790
30	497,465,110	73	767,612,160	9	56,229,610	72	271,750,440
169	2,547,712,200	70	683,257,790	234	2,114,362,890	78	291,716,320
92	1,325,627,730	11	103,246,080	179	1,540,764,550	33	127,857,260
187	2,746,524,420	420	4,510,686,090	83	508,335,750	371	1,350,032,140
86	1,121,606,710	207	2,091,196,750	33	209,245,630	154	570,628,120
70	912,159,390	190	1,896,753,970	45	256,881,440	176	607,463,370
170	2,899,791,850	763	9,019,917,620	57	323,112,060	544	2,265,073,840
126	2,546,359,460	521	7,885,501,250	47	385,323,060	661	3,699,654,070
100	1,334,810,480	190	1,867,003,430	57	312,337,430	211	722,745,980
32	404,188,130	84	839,539,540	13	73,403,600	74	253,583,570
50	1,012,547,400	230	3,332,651,390	16	118,229,630	250	1,328,121,910
158	1,996,410,190	291	2,865,903,280	80	448,679,300	286	922,446,170
53	630,405,990	160	1,507,490,270	21	119,669,300	112	361,387,620
49	581,235,370	100	926,441,860	27	151,074,280	126	421,055,190

구 분 지 사			8 급		9 급		10 급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대구 지역 본부	포	항	87	3,033,946,640	31	833,485,010	93	1,873,433,410
	구	미	27	793,345,200	15	309,405,060	45	802,062,290
	영	주	13	415,150,370	13	237,635,420	28	578,828,490
	안	동	12	363,573,550	3	95,002,600	11	218,909,140
경 인 지 역 본 부	경인	본부	113	3,627,852,810	82	2,402,700,180	184	3,787,918,120
	인천	북부	142	4,833,986,310	98	2,641,449,880	244	4,808,933,130
	수	원	81	2,693,372,090	79	2,099,420,560	123	2,435,653,910
	부	천	78	2,674,892,560	44	1,251,493,860	107	2,036,779,620
	안	양	132	4,683,772,510	63	1,701,231,480	202	4,349,809,210
	안	산	165	5,717,924,720	72	1,989,799,060	206	4,074,099,170
	성	남	109	3,639,711,480	55	1,419,412,830	157	3,099,326,030
	평	택	84	3,166,862,120	34	1,026,006,360	102	2,238,762,630
	고	양	51	1,724,052,550	33	834,844,330	78	1,386,628,570
광 주 지 역 본 부	광주	본부	115	4,131,320,660	75	1,813,746,570	138	2,690,916,730
	전	주	60	1,948,551,210	32	842,352,850	102	1,927,429,760
	익	산	26	848,222,020	13	346,370,190	31	537,737,500
	군	산	24	716,904,460	16	424,193,030	38	746,984,830
	목	포	32	1,153,474,380	13	330,776,810	64	1,277,989,730
	여	수	33	1,149,805,630	20	472,412,090	57	1,125,604,690
	제	주	19	564,255,570	8	170,600,820	24	401,746,620
대 전 지 역 본 부	대전	본부	120	3,696,046,060	78	2,049,270,070	182	3,591,910,320
	청	주	61	1,927,037,320	30	770,842,470	109	2,246,144,800
	천	안	51	1,663,374,060	19	488,211,580	69	1,307,426,400
	충	주	34	996,721,170	7	108,617,460	63	1,205,933,730
	보	령	14	474,445,750	17	361,825,800	22	430,176,010

(단위 : 명, 원)

11 금		12 금		13 금		14 금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61	987,221,690	210	2,451,595,090	21	158,869,820	241	993,338,260
40	585,515,350	72	760,096,050	22	142,646,440	49	171,251,500
54	696,398,110	33	291,513,320	66	537,255,510	59	204,156,340
7	101,837,140	22	201,874,990	3	26,727,570	24	80,932,940
124	1,859,206,150	330	3,334,351,490	64	388,965,090	240	847,943,890
151	2,079,914,710	359	3,753,595,630	66	388,750,870	205	753,291,150
95	1,416,227,700	305	3,666,898,990	40	273,083,130	243	1,011,348,220
108	1,363,299,170	189	1,828,090,900	65	366,018,160	170	596,433,770
114	1,600,806,330	210	2,322,121,450	42	252,870,450	151	628,122,440
153	2,081,148,310	271	2,895,879,610	96	562,817,930	253	889,291,740
76	1,106,352,500	180	1,806,916,950	26	154,321,210	226	824,908,080
77	1,068,162,860	265	3,383,056,210	36	199,694,840	137	614,827,500
49	649,706,600	120	1,228,427,900	32	194,231,920	115	397,449,860
165	2,475,601,380	291	3,418,653,070	53	353,320,460	277	1,221,631,650
48	704,794,340	152	1,684,350,240	19	116,393,650	143	523,749,600
31	399,559,540	65	616,365,070	31	191,848,470	41	156,633,820
22	299,892,370	102	1,062,224,170	10	64,482,770	89	338,598,750
23	364,916,070	117	1,342,261,060	12	82,812,710	72	275,523,760
41	594,038,680	130	1,446,674,370	14	82,840,080	78	306,571,280
12	141,592,780	30	264,432,740	10	63,793,940	16	55,410,090
94	1,340,952,960	252	2,601,577,120	44	273,573,490	236	866,739,890
62	883,580,220	122	1,282,835,560	39	281,319,750	151	552,384,300
62	861,985,190	107	1,139,154,900	27	156,373,120	111	454,878,510
43	565,505,480	77	709,897,600	26	163,931,790	88	311,531,760
59	881,041,750	48	536,869,470	88	658,481,000	58	216,575,900

제 4-10 표 중소기업 사업주

구 분		'04		'05		'06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합 계	합 계	211	2,528,857,380	203	2,624,374,870	228	2,604,458,200
	요 양 금 여	198	747,337,870	185	560,014,470	202	674,136,650
	휴 업 금 여	148	1,077,833,410	137	1,072,381,510	143	1,001,925,110
	장 해 금 여	33	593,887,310	45	834,355,710	46	778,366,070
	유 족 금 여	6	84,195,440	8	140,593,470	10	130,033,630
	상 병 연 금	-	-	-	-	1	1,656,660
	장 의 비	3	25,603,350	2	17,029,710	2	18,340,080
금 보 험 업	합 계	-	-	-	-	-	-
	요 양 금 여	-	-	-	-	-	-
	휴 업 금 여	-	-	-	-	-	-
	장 해 금 여	-	-	-	-	-	-
	유 족 금 여	-	-	-	-	-	-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	-	-	-	-	-
광 업	합 계	1	29,147,780	1	28,608,180	1	14,460,680
	요 양 금 여	1	6,957,120	1	1,997,740	1	3,609,660
	휴 업 금 여	1	22,190,660	1	26,610,440	1	10,851,020
	장 해 금 여	-	-	-	-	-	-
	유 족 금 여	-	-	-	-	-	-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	-	-	-	-	-
제 조 업	합 계	110	1,147,800,120	93	1,197,303,090	81	837,929,450
	요 양 금 여	101	344,611,030	85	222,872,230	70	214,058,870
	휴 업 금 여	75	432,771,840	59	365,882,720	45	244,390,840
	장 해 금 여	19	338,222,670	31	573,786,210	17	329,516,390
	유 족 금 여	4	32,194,580	4	34,761,930	5	42,438,210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	-	-	-	1	7,525,140
전 기 수 도 업	합 계	-	-	-	-	-	-
	요 양 금 여	-	-	-	-	-	-
	휴 업 금 여	-	-	-	-	-	-
	장 해 금 여	-	-	-	-	-	-
	유 족 금 여	-	-	-	-	-	-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	-	-	-	-	-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04		'05		'06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수급자수	금 액
건 설 업	합 계	4	53,148,720	3	56,231,970	3	72,804,760
	요 양 금 여	4	6,920,490	3	5,432,550	2	7,428,500
	휴 업 금 여	4	30,168,230	2	41,097,420	2	42,083,920
	장 해 금 여	1	16,060,000	1	9,702,000	1	23,292,340
	유 족 금 여	-	-	-	-	-	-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	-	-	-	-	-
운 수 창 고 통 신 업	합 계	6	131,384,010	22	255,390,050	32	452,461,180
	요 양 금 여	5	25,110,200	17	62,884,540	29	154,557,280
	휴 업 금 여	3	36,888,870	17	91,458,390	19	128,971,600
	장 해 금 여	2	22,616,000	2	18,003,660	6	128,821,590
	유 족 금 여	1	40,099,500	2	72,683,190	2	40,110,710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1	6,669,440	1	10,360,270	-	-
임 업	합 계	14	232,458,170	16	138,840,830	27	369,067,960
	요 양 금 여	13	48,749,280	14	38,108,110	24	86,618,800
	휴 업 금 여	13	91,261,530	13	79,250,680	22	169,377,270
	장 해 금 여	4	71,786,000	1	3,630,0000	8	92,440,620
	유 족 금 여	1	11,901,360	1	17,852,040	1	20,631,270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1	8,760,000	-	-	-	-
어 업	합 계	0	0	1	24,604,620	2	20,755,040
	요 양 금 여	-	-	1	6,259,720	2	1,677,340
	휴 업 금 여	-	-	1	18,344,900	2	3,017,700
	장 해 금 여	-	-	-	-	1	16,060,000
	유 족 금 여	-	-	-	-	-	-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	-	-	-	-	-
농 업	합 계	2	25,762,380	2	28,835,930	1	313,700
	요 양 금 여	2	4,784,080	2	4,170,730	1	313,700
	휴 업 금 여	2	4,808,300	2	24,665,200	-	-
	장 해 금 여	1	16,170,000	-	-	-	-
	유 족 금 여	-	-	-	-	-	-
	상 병 연 금	-	-	-	-	-	-
	장 의 비	-	-	-	-	-	-
기 타 의 사 업	합 계	74	909,156,200	65	894,560,200	81	836,665,430
	요 양 금 여	72	310,205,670	62	218,288,850	73	205,872,500
	휴 업 금 여	50	459,743,980	42	425,071,760	52	403,232,760
	장 해 금 여	6	129,032,640	10	229,233,840	13	188,235,130
	유 족 금 여	-	-	1	15,296,310	2	26,853,440
	상 병 연 금	-	-	-	-	1	1,656,660
	장 의 비	1	10,173,910	1	6,669,440	1	10,814,940

제 4-11 표 연도별 사업규모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04		'05		'06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수	금액
합 계	189,275	2,859,913,663,370	196,515	3,025,771,182,820	206,333	3,163,768,608,840
건 설 업	45,784	932,667,715,380	44,147	919,954,664,270	45,949	946,684,000,650
5 인 미 만	29,286	312,247,855,610	34,622	362,438,787,840	40,682	426,024,437,390
5 ~ 29 인	45,028	492,760,453,962	48,832	532,374,165,480	52,534	589,351,334,400
30 ~ 49 인	10,872	134,239,434,172	12,600	150,415,906,930	13,452	164,899,900,330
50 ~ 99 인	11,630	148,640,396,856	13,182	163,861,979,460	13,841	182,518,022,560
100 ~ 299 인	16,271	238,692,239,960	17,633	255,292,959,200	17,886	267,474,213,030
300 ~ 499 인	5,695	98,942,414,750	6,060	101,177,597,010	5,884	101,880,586,580
500 ~ 999 인	6,539	123,761,720,670	6,983	132,408,693,190	6,738	132,864,350,200
1000인 이 상	18,636	377,961,432,010	19,231	407,846,429,440	16,965	352,071,763,700

제 4-12 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04		'05		'06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합	계	4,238	58,868,882,640	4,117	59,938,431,190	4,963	67,732,488,330
방	글 라 데 시	244	2,371,998,670	200	2,856,755,280	175	2,338,210,640
중	국	2,117	38,454,292,330	1,943	37,032,669,180	2,052	37,572,773,060
가	나	15	161,779,370	13	257,644,070	9	153,017,150
인	도	24	283,429,390	31	444,647,340	33	483,422,870
인	도 네 시 아	266	1,992,450,880	285	2,322,610,570	326	3,092,808,490
이	란	30	333,239,160	20	166,611,440	18	88,216,740
일	본	3	12,338,900	3	42,507,440	4	40,457,050
말	레 이 시 아	3	47,129,690	2	10,266,490	-	-
몽	골	140	1,944,924,540	144	1,982,735,560	230	2,503,193,010
모	로 코	2	12,619,110	2	9,503,730	2	34,006,270
미	얀 마	30	257,723,940	28	234,588,210	28	344,264,250
네	팔	74	597,393,480	83	674,228,610	81	876,098,070
나	이 지 리 아	12	192,786,900	23	235,992,310	11	109,936,750
파	키 스 탄	181	1,729,817,890	194	1,702,777,770	202	1,801,973,160
페	루	8	103,043,210	3	9,107,160	4	47,659,450
필	리 핀	160	1,489,341,760	158	1,712,010,070	276	2,497,564,120
러	시 아	95	1,190,454,320	71	1,249,328,780	49	738,348,130
스	리 랑 카	82	912,560,750	117	989,373,280	228	2,319,140,520
대	만	9	28,295,390	6	111,980,290	16	105,217,730
태	국	157	1,545,457,820	156	1,696,679,710	248	2,193,264,030
우	즈 베 키 스 탄	168	1,630,969,140	172	1,964,580,600	158	1,718,658,800
베	트 남	251	1,974,110,420	271	2,417,784,300	499	5,039,726,670
기	타	167	1,602,725,580	192	1,814,049,000	314	3,634,531,370

제 4-13 표 '06년도 월별 업종별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수급자수	206,333	95,550	93,502	97,499	93,612	95,344
	금 액	3,163,768,608,840	256,059,467,440	243,293,969,290	275,707,346,930	245,039,484,890	261,555,755,370
금 융 보 험 업	수급자수	1,279	586	525	559	534	548
	금 액	20,485,883,220	1,908,641,100	1,533,626,760	1,576,875,860	1,728,235,180	1,715,321,350
광 업	수급자수	12,834	7,323	7,172	7,562	7,721	7,519
	금 액	297,099,423,780	20,985,893,580	23,013,459,090	26,225,675,990	23,657,532,830	24,557,444,920
제 조 업	수급자수	82,170	38,187	37,411	39,083	37,119	38,159
	금 액	1,186,432,563,020	98,864,044,300	90,990,697,160	105,065,256,700	90,797,944,430	99,937,563,380
전 기 가 스 수 도 업	수급자수	396	233	230	242	228	233
	금 액	8,763,759,540	626,203,350	713,980,410	715,186,540	631,577,880	721,037,950
건 설 업	수급자수	45,949	24,231	23,589	24,175	23,229	23,438
	금 액	946,684,000,650	78,807,773,520	72,360,047,140	81,843,425,900	72,923,856,010	77,228,159,820
운 수 창 고 업	수급자수	12,110	5,910	5,829	6,053	5,936	6,072
	금 액	174,246,947,260	13,421,086,070	13,873,043,370	14,593,073,960	13,513,105,280	14,150,444,810
임 업	수급자수	2,105	851	803	833	792	772
	금 액	22,208,231,100	1,668,815,770	1,765,945,870	2,118,913,030	1,574,351,810	1,743,411,920
어 업	수급자수	115	92	91	89	91	87
	금 액	1,767,210,060	177,950,240	117,626,930	139,698,390	168,876,760	181,035,130
농 업	수급자수	838	289	292	299	281	312
	금 액	8,408,388,200	580,877,500	692,209,870	877,175,080	564,595,340	768,789,660
기 타 의 사 업	수급자수	48,895	17,848	17,560	18,605	17,681	18,205
	금 액	497,672,202,010	39,018,182,010	38,233,332,690	42,552,065,480	39,479,409,370	40,552,546,430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6,392 274,120,430,320	96,288 266,928,302,200	96,614 264,576,749,280	97,365 285,073,050,210	91,075 222,408,777,410	98,011 280,206,018,410	99,486 288,799,257,090
578 1,228,621,640	580 960,434,590	607 1,530,270,990	630 2,259,625,380	569 1,883,651,200	613 1,859,622,130	625 2,300,957,040
7,619 26,764,356,140	7,531 24,357,666,310	7,735 25,890,656,580	7,674 27,808,965,000	7,513 19,732,391,590	7,861 25,900,044,980	8,001 28,205,336,770
38,384 103,199,616,360	38,145 99,654,444,240	38,021 98,804,793,890	38,010 106,854,415,130	35,200 82,019,451,830	38,068 105,360,782,880	38,026 104,883,552,720
236 577,683,970	220 922,291,250	224 826,594,450	225 838,710,610	220 893,019,620	229 672,210,360	237 625,263,150
23,793 80,902,923,140	23,831 79,191,870,270	23,952 78,242,182,960	24,480 84,718,843,640	23,405 67,749,324,420	25,052 85,212,500,570	25,631 87,503,093,260
6,015 14,417,132,030	6,092 15,174,366,060	6,076 14,865,124,960	6,108 16,281,337,890	5,716 13,045,693,180	6,011 15,204,077,690	6,175 15,708,461,960
826 1,699,045,740	820 1,799,379,370	820 1,771,388,770	849 2,030,388,250	808 1,504,776,150	892 2,147,965,970	935 2,383,848,450
91 135,413,840	87 114,298,910	90 111,760,530	89 150,769,890	85 123,910,700	89 152,469,220	93 193,399,520
334 860,958,720	308 724,477,780	318 597,975,840	309 617,821,250	300 526,216,240	341 859,610,320	345 737,680,600
18,516 44,334,678,740	18,681 44,029,073,420	18,772 41,936,000,310	18,991 43,512,173,170	17,259 34,930,342,480	18,855 42,836,734,290	19,418 46,257,663,620

제 4-14 표 '06년도 월별 보험급여 종류별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수급자수	206,333	95,550	93,502	97,499	93,612	95,344
	금 액	3,163,768,608,840	256,059,467,440	243,293,969,290	275,707,346,930	245,039,484,890	261,555,755,370
요 양 급 여	수급자수	166,443	53,427	51,451	56,564	51,865	52,992
	금 액	800,390,673,170	62,663,246,870	58,842,052,660	70,382,320,020	60,879,456,090	65,800,355,730
휴 업 급 여	수급자수	120,764	41,369	37,995	40,941	36,997	38,762
	금 액	848,134,638,170	77,355,919,170	69,798,549,180	74,526,926,040	65,203,113,920	68,596,150,160
장 해 급 여	수급자수	61,894	22,113	22,326	23,363	23,210	23,668
	금 액	1,067,385,111,250	81,707,101,650	79,857,792,960	93,411,851,380	85,275,856,760	90,609,968,500
유 족 급 여	수급자수	12,166	9,862	9,997	10,148	10,246	10,379
	금 액	253,875,684,970	18,813,147,090	19,340,901,980	21,339,647,800	18,226,501,700	20,704,960,320
상 병 연 금	수급자수	6,182	5,430	5,341	5,394	5,402	5,455
	금 액	151,580,190,250	12,388,662,880	12,320,223,870	12,453,747,680	12,379,526,850	12,556,493,410
장 의 비	수급자수	2,439	184	191	228	183	186
	금 액	22,161,957,270	1,611,901,700	1,702,673,210	2,073,155,370	1,602,688,730	1,652,613,230
간 병 급 여	수급자수	2,291	1,481	1,448	1,548	1,466	1,660
	금 액	20,240,353,760	1,519,488,080	1,431,775,430	1,519,698,640	1,472,340,840	1,635,214,020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6,392	96,288	96,614	97,365	91,075	98,011	99,486
274,120,430,320	266,928,302,200	264,576,749,280	285,073,050,210	222,408,777,410	280,206,018,410	288,799,257,090
53,766	54,290	54,200	54,462	46,094	54,572	56,690
66,185,221,780	69,919,725,760	69,312,811,640	71,520,635,240	51,235,874,430	72,071,890,420	81,577,082,530
39,116	37,579	37,965	38,553	33,513	37,520	37,419
73,159,021,020	68,362,684,560	71,175,633,220	77,025,304,860	59,233,664,660	70,571,377,130	73,126,294,250
24,243	24,263	24,644	25,406	24,765	26,267	26,266
95,179,248,610	89,788,692,420	89,083,630,110	94,529,090,350	77,558,180,250	97,189,979,940	93,193,718,320
10,521	10,665	10,758	10,955	11,034	11,211	11,362
23,191,398,600	22,491,442,700	18,893,921,520	24,757,278,250	18,611,053,120	23,572,982,390	23,932,449,500
5,453	5,467	5,455	5,477	5,439	5,482	5,508
12,654,266,000	12,691,518,650	12,693,157,510	12,862,482,320	12,696,768,400	12,888,001,940	12,995,340,740
219	224	183	272	149	204	226
1,989,616,600	2,006,305,090	1,650,004,190	2,509,602,700	1,382,574,210	1,913,945,020	2,066,877,220
1,734	1,710	1,750	1,800	1,734	1,908	1,929
1,761,657,710	1,667,933,020	1,767,591,090	1,868,656,490	1,690,662,340	1,997,841,570	1,907,494,530

제 4-15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합계	양 방							한 방			
			소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소계	종합	병원	의원
합 계		4,635	4,235	44	226	721	2,943	19	282	400	16	99	285
서울 지역 본부	서울본부	55	54	4	4	6	37	-	3	1	-	1	-
	서울강남	60	54	1	2	14	35	-	2	6	-	3	3
	서울동부	113	107	2	5	17	77	-	6	6	1	4	1
	서울서부	97	87	2	3	13	61	-	8	10	-	4	6
	서울남부	115	106	3	6	21	71	-	5	9	-	4	5
	서울북부	164	161	2	6	16	131	-	6	3	-	3	-
	서울관악	112	104	1	5	12	80	-	6	8	-	1	7
	의정부	156	147	-	7	23	113	-	4	9	-	2	7
	춘천	49	45	1	2	11	28	-	3	4	-	2	2
	강릉	54	51	-	8	7	31	-	5	3	-	-	3
부산 지역 본부	원주	38	35	1	1	6	24	-	3	3	1	1	1
	태백	22	21	1	1	1	18	-	-	1	-	-	1
	영월	20	20	-	3	1	14	-	2	-	-	-	-
	부산본부	173	156	4	10	28	99	-	15	17	1	3	13
	부산동부	105	93	-	8	15	64	-	6	12	-	2	10
	부산북부	56	47	-	3	10	28	1	5	9	-	1	8
	창원	136	110	1	11	34	58	-	6	26	-	2	24
	울산	100	74	-	3	20	46	1	4	26	-	2	24
대구 지역 본부	양산	79	71	-	7	18	43	-	3	8	-	1	7
	진주	50	48	1	2	21	23	-	1	2	-	1	1
	통영	34	34	-	2	8	22	-	2	-	-	-	-
대구 지역 본부	대구본부	176	158	4	5	41	94	2	12	18	1	8	9
	대구서부	70	65	-	2	20	39	1	3	5	-	3	2
	대구북부	91	87	-	2	17	57	1	10	4	-	-	4

지사별 산재지정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지 사		합계	양 방							한 방			
			소계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소계	종합	병원	의원
대구 지역 본부	포 항	94	82	-	7	14	55	1	5	12	1	1	10
	구 미	48	43	-	2	8	28	-	5	5	-	2	3
	영 주	20	19	-	1	6	12	-	-	1	-	1	-
	안 동	29	25	-	3	9	12	-	1	4	-	3	1
경 인 지 역 본 부	경 인 본 부	165	154	2	4	14	123	1	10	11	-	3	8
	인 천 북 부	138	127	1	4	15	98	-	9	11	-	2	9
	수 원	126	117	1	3	10	98	-	5	9	-	1	8
	부 천	130	118	-	5	13	90	-	10	12	-	3	9
	안 양	120	111	-	6	8	88	1	8	9	1	5	3
	안 산	148	133	1	5	14	94	3	16	15	-	3	12
	성 남	138	135	-	3	24	100	-	8	3	-	1	2
	평 택	106	102	-	6	22	71	-	3	4	-	1	3
고 양	78	75	-	4	9	62	-	-	3	-	2	1	
광 주 지 역 본 부	광 주 본 부	213	184	2	17	40	106	3	16	29	2	4	23
	전 주	156	139	1	3	27	91	-	17	17	3	1	13
	익 산	46	40	1	1	6	29	1	2	6	1	2	3
	군 산	50	44	-	2	5	28	-	9	6	-	2	4
	목 포	65	61	-	8	14	35	-	4	4	-	2	2
	여 수	67	57	1	6	14	34	-	2	10	-	3	7
	제 주	42	36	-	5	3	26	-	2	6	-	1	5
대전 지역 본부	대 전 본 부	241	224	3	7	24	167	2	21	17	1	3	13
	청 주	81	79	1	6	11	58	-	3	2	1	-	1
	천 안	95	91	2	3	10	71	1	4	4	1	1	2
	충 주	56	51	-	3	8	38	-	2	5	1	1	3
	보 령	58	53	-	4	13	36	-	-	5	-	3	2

제 4-16 표 '06년도 의료기관

구 분			수급자수	지급건수	요양일수	지 급 총 액
합	계	합	143,099	722,057	16,505,429	614,054,736,380
		입원	90,214	265,142	7,540,546	538,750,440,740
		통원	120,807	456,915	8,964,883	75,304,295,640
3 의 기	차 료 관	소	12,714	37,344	989,666	111,488,231,250
		입원	23,937	91,111	1,022,878	16,305,438,600
		통원	48,297	186,321	4,140,177	204,683,545,530
중 병	합 원	소	27,624	70,350	2,199,613	184,818,209,130
		입원	35,835	115,971	1,940,564	19,865,336,400
		통원	44,914	178,248	4,306,971	155,709,778,520
병	원	소	31,060	73,777	2,113,544	141,318,965,200
		입원	33,382	104,471	2,193,427	14,390,813,320
		통원	56,994	224,746	5,908,736	122,435,198,600
의	원	소	48,995	142,486	3,719,132	23,671,031,960
		입원	354	451	17,418	524,204,730
		통원	-	-	-	-
치 병 의	과 원 원	소	1,059	3,836	119,583	2,908,339,150
		입원	457	1,411	48,119	2,360,868,520
		통원	735	2,425	71,464	547,470,630
한 병	방 원	소	1,352	5,571	186,697	3,946,459,990
		입원	534	1,713	62,808	3,030,878,880
		통원	986	3,858	123,889	915,581,110

※ 세부항목(기본,약가,행위,기타)의 합이 진료비 지급총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이후 진료비 통계 동일)

등급별 진료비 지급현황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기 본	약 가	행 위	기 타
4,291,118	37,203	242,599,160,660	46,493,461,422	213,154,555,181	112,103,841,553
5,971,916	71,447	216,184,578,076	39,649,070,489	176,148,747,008	106,975,099,360
623,344	8,400	26,414,582,584	6,844,390,933	37,005,808,173	5,128,742,193
4,324,074	63,499	49,275,296,906	13,650,674,869	45,359,386,430	19,538,859,382
8,768,934	112,652	46,343,273,390	9,674,999,847	38,216,655,820	17,276,037,778
681,181	15,941	2,932,023,516	3,975,675,022	7,142,730,610	2,262,821,604
4,238,018	49,438	79,144,988,958	17,749,606,738	71,501,708,192	36,343,174,185
6,690,494	84,023	73,768,329,497	15,417,790,715	61,135,168,252	34,547,126,807
554,356	10,237	5,376,659,461	2,331,816,023	10,366,539,940	1,796,047,378
3,466,843	36,153	56,735,876,679	10,292,241,697	59,191,637,421	29,516,310,243
4,549,870	66,864	50,716,003,554	9,935,196,270	51,570,129,458	29,115,595,170
431,095	6,561	6,019,873,125	357,045,427	7,621,507,963	400,715,073
2,148,212	20,721	55,985,303,587	4,744,513,099	36,253,378,528	25,635,494,385
2,865,803	45,106	44,118,578,482	4,586,696,024	24,719,966,682	25,455,072,463
483,132	6,365	11,866,725,105	157,817,075	11,533,411,846	180,421,922
1,480,804	30,096	17,534,913	49,777	19,819,036	486,807,600
-	-	-	-	-	-
1,480,804	30,096	17,534,913	49,777	19,819,036	486,807,600
2,746,307	24,321	1,440,159,617	56,375,242	828,625,574	583,195,758
5,166,014	49,063	1,238,393,153	34,387,633	506,826,796	581,267,142
744,858	7,661	201,766,464	21,987,609	321,798,778	1,928,616

제 4-17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143,099	722,057	16,505,429	614,054,736,380
서울 지역 본부	서울 본부	2,454	9,684	170,349	7,563,134,400
	서울 강남	1,683	4,334	92,036	5,212,108,090
	서울 동부	4,188	12,716	327,245	15,567,389,710
	서울 서부	2,377	8,773	167,819	7,088,963,540
	서울 남부	5,941	22,849	465,410	25,364,991,940
	서울 북부	5,770	25,165	530,868	21,486,746,860
	서울 관악	3,894	13,759	329,362	10,462,307,480
	의정부	3,914	17,950	318,471	10,396,383,240
	춘천	1,140	5,128	104,785	3,711,903,340
	강릉	2,822	15,692	387,193	18,928,154,040
	원주	1,577	6,536	98,345	4,865,900,900
	태백	2,199	12,626	313,541	15,894,577,340
	영월	1,764	11,163	288,363	14,525,970,320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본부	9,532	39,075	796,008	32,275,769,620
	부산 동부	3,628	13,849	331,007	11,584,063,350
	부산 북부	2,264	8,149	206,446	6,944,371,650
	창원	7,431	45,606	1,105,546	29,916,856,700
	울산	6,197	32,019	732,965	17,131,517,730
	양산	3,477	14,112	343,673	12,645,174,580
	진주	1,797	7,152	143,488	4,280,763,510
대구 지역 본부	통영	2,324	12,737	337,050	8,719,563,020
	대구 본부	6,518	27,067	560,490	21,349,981,450
	대구 서부	2,185	9,665	213,195	6,117,917,480
	대구 북부	1,642	5,976	149,171	3,749,191,06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총괄)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4,291,118	37,203	115	242,599,160,660	46,493,461,422	213,154,555,181	112,103,841,553
3,081,962	44,398	69	2,499,936,548	751,666,191	3,008,073,890	1,303,728,101
3,096,915	56,631	55	1,375,190,314	363,270,602	2,647,451,097	829,537,559
3,717,142	47,571	78	5,205,695,122	1,072,795,119	6,564,580,886	2,727,657,164
2,982,315	42,242	71	2,396,639,597	793,460,354	2,635,122,348	1,261,161,766
4,269,482	54,500	78	8,060,128,110	1,999,794,261	11,477,488,665	3,851,185,616
3,723,873	40,475	92	8,008,236,063	1,622,323,049	7,662,958,773	4,201,263,652
2,686,776	31,765	85	3,706,898,715	842,186,372	4,028,208,034	1,888,990,358
2,656,204	32,645	81	3,695,243,621	932,169,003	3,776,915,930	2,006,810,561
3,256,056	35,424	92	1,371,686,027	317,658,500	1,331,776,849	690,850,463
6,707,354	48,886	137	9,572,467,896	1,510,469,387	4,409,454,937	3,434,885,699
3,085,543	49,478	62	1,609,211,081	639,019,997	1,644,070,673	974,823,159
7,228,093	50,694	143	9,798,686,231	923,029,485	2,241,832,853	2,923,516,946
8,234,677	50,374	163	8,524,063,878	1,135,763,924	1,695,602,750	3,167,733,924
3,386,044	40,547	84	10,090,760,660	2,802,368,569	14,178,185,626	5,220,707,122
3,192,961	34,996	91	4,109,001,982	1,030,785,778	4,073,920,569	2,373,176,252
3,067,302	33,638	91	2,711,531,826	361,674,283	2,656,919,835	1,216,842,316
4,025,953	27,061	149	12,370,267,919	2,203,718,508	9,665,206,577	5,718,561,887
2,764,486	23,373	118	6,038,970,131	738,190,089	7,997,851,275	2,346,261,745
3,636,806	36,794	99	5,986,313,403	664,375,488	3,333,592,887	2,666,151,608
2,382,172	29,834	80	1,546,091,341	530,367,832	1,354,750,703	855,634,317
3,751,963	25,870	145	3,801,189,355	393,961,330	2,742,279,522	1,800,969,484
3,275,542	38,092	86	7,075,699,187	2,071,614,034	8,164,364,420	4,044,951,416
2,799,962	28,696	98	2,303,811,793	448,623,020	2,120,012,474	1,249,610,780
2,283,308	25,134	91	1,608,067,967	235,266,753	1,129,067,264	776,745,713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대구 지역 본부	포 향	3,142	19,449	446,694	14,930,725,960
	구 미	1,185	4,655	98,404	3,180,610,490
	영 주	1,495	9,136	231,777	10,676,964,970
	안 동	606	3,080	74,270	3,287,580,960
경 인 지 역 본 부	경 인 본 부	6,006	21,959	427,995	15,317,041,050
	인 천 북 부	7,245	38,270	912,538	34,669,938,810
	수 원	5,102	21,020	452,024	15,545,185,170
	부 천	3,641	13,565	287,413	9,610,718,360
	안 양	5,042	17,057	555,901	17,418,819,440
	안 산	6,125	23,730	552,361	22,769,926,380
	성 남	3,693	13,077	342,670	12,404,181,040
	평 택	3,523	10,864	276,374	9,489,204,470
	고 양	2,282	7,953	189,478	8,763,622,650
광 주 지 역 본 부	광 주 본 부	6,069	27,477	622,375	25,847,330,200
	전 주	2,822	11,250	274,403	9,218,784,340
	익 산	1,234	4,515	104,330	4,132,761,610
	군 산	1,232	5,597	151,027	4,901,309,380
	목 포	1,572	6,386	166,267	5,400,142,970
	여 수	2,569	9,947	242,093	9,156,370,830
	제 주	853	2,833	53,896	2,082,121,400
대 전 지 역 본 부	대 전 본 부	5,418	29,333	654,440	26,940,256,520
	청 주	2,929	12,873	294,614	10,842,105,790
	천 안	2,880	10,770	202,427	7,064,162,830
	충 주	1,575	8,702	211,702	8,505,576,180
	보 령	1,601	6,777	167,130	6,115,593,230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4,751,982	33,425	142	6,121,698,336	998,747,007	5,080,207,078	2,734,832,993
2,684,059	32,322	83	1,117,318,907	200,015,484	1,349,709,870	514,623,197
7,141,783	46,066	155	5,768,443,771	719,405,737	1,638,944,441	2,550,196,427
5,425,051	44,265	123	1,482,779,994	359,003,646	671,217,565	774,609,674
2,550,290	35,788	71	5,430,284,674	753,188,853	6,628,313,358	2,515,709,048
4,785,361	37,993	126	13,867,045,610	2,954,401,241	11,986,306,151	5,866,520,071
3,046,881	34,390	89	6,230,019,962	1,050,035,663	5,441,330,207	2,826,725,449
2,639,582	33,439	79	3,285,197,043	811,562,549	3,857,805,670	1,666,047,484
3,454,744	31,334	110	6,655,511,186	795,456,741	7,086,494,051	2,889,792,505
3,717,539	41,223	90	9,491,974,280	1,019,467,658	8,872,714,378	3,398,362,592
3,358,836	36,199	93	4,242,225,183	1,295,130,769	4,511,232,726	2,368,182,315
2,693,501	34,335	78	3,524,261,269	662,410,102	3,435,130,626	1,868,054,438
3,840,325	46,251	83	2,766,368,834	884,880,202	3,609,150,753	1,505,300,197
4,258,911	41,530	103	9,836,965,907	2,373,904,019	8,237,182,877	5,428,481,416
3,266,756	33,596	97	3,245,108,182	903,027,220	3,239,996,656	1,835,691,489
3,349,077	39,612	85	1,433,142,592	529,531,857	1,417,041,109	755,545,387
3,978,336	32,453	123	1,932,250,944	424,478,438	1,493,297,867	1,056,357,039
3,435,205	32,479	106	2,093,984,137	492,060,499	1,715,880,843	1,105,655,004
3,564,177	37,822	94	4,332,895,651	706,982,166	2,341,280,126	1,780,196,560
2,440,940	38,632	63	723,829,431	202,815,092	724,874,693	431,387,046
4,972,362	41,165	121	11,822,599,105	1,815,448,997	8,775,515,484	4,534,434,638
3,701,641	36,801	101	3,773,744,660	597,725,483	4,623,823,012	1,857,008,926
2,452,834	34,897	70	2,460,470,379	508,768,312	2,993,228,381	1,102,810,030
5,400,366	40,177	134	4,038,668,102	622,878,937	1,949,512,481	1,906,141,405
3,819,858	36,592	104	3,456,583,754	427,582,822	934,675,941	1,299,418,615

제 4-18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83,550	223,687	6,420,510	465,828,601,120
서울 지역 본부	서울 본부	1,339	2,447	74,663	6,528,683,590
	서울 강남	931	1,595	42,187	4,896,287,120
	서울 동부	2,757	5,307	176,361	14,332,592,330
	서울 서부	1,395	2,524	71,563	6,248,106,580
	서울 남부	3,506	8,238	236,944	22,732,022,520
	서울 북부	3,190	9,888	281,007	19,227,189,530
	서울 관악	2,224	4,184	118,977	8,852,112,370
	의정부	2,159	4,583	127,773	9,027,057,860
	춘천	699	1,629	42,522	3,195,549,860
	강릉	1,244	4,419	137,236	8,613,191,690
	원주	752	1,796	44,847	4,144,417,500
	태백	644	2,785	76,853	3,526,804,500
	영월	446	1,486	39,390	1,952,249,210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본부	5,016	9,788	299,501	27,002,335,580
	부산 동부	2,249	4,885	141,114	10,114,009,890
	부산 북부	1,527	2,805	88,683	6,029,729,250
	창원	4,055	12,919	380,705	24,381,674,110
	울산	3,139	6,358	161,073	12,094,867,720
	양산	2,097	3,916	104,484	6,942,236,400
	진주	867	1,506	44,397	3,495,388,730
	통영	1,478	4,777	141,331	7,563,984,540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3,171	7,397	222,172	18,255,645,030
	대구 서부	1,338	3,576	82,248	5,200,912,210
	대구 북부	882	1,991	59,771	3,059,259,54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입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5,575,447	72,553	77	172,920,855,978	35,033,226,266	166,317,104,660	91,766,388,251
4,875,791	87,442	56	2,206,308,069	601,456,355	2,506,913,318	1,213,997,240
5,259,170	116,062	45	1,263,410,734	336,688,392	2,496,367,378	803,198,249
5,198,619	81,268	64	4,776,455,617	953,569,155	5,947,461,619	2,658,080,828
4,478,929	87,309	51	2,104,915,876	691,566,268	2,254,990,968	1,194,031,102
6,483,749	95,938	68	7,299,322,695	1,515,161,441	10,318,088,319	3,621,158,937
6,027,332	68,422	88	7,155,760,119	1,406,881,552	6,694,146,894	3,977,190,035
3,980,266	74,402	53	3,100,461,437	751,928,794	3,233,482,934	1,770,346,964
4,181,129	70,649	59	3,170,896,011	761,476,952	3,182,537,841	1,923,174,277
4,571,602	75,151	61	1,205,252,474	287,704,724	1,063,266,723	639,382,625
6,923,788	62,762	110	3,638,590,117	711,431,469	2,525,803,457	1,737,721,292
5,511,193	92,412	60	1,444,750,240	540,123,740	1,368,807,145	791,714,211
5,476,405	45,890	119	1,875,592,842	207,265,997	550,912,882	892,979,611
4,377,240	49,562	88	1,022,977,997	219,699,194	213,015,575	496,563,224
5,383,241	90,158	60	8,532,763,143	2,262,998,894	11,529,917,574	4,685,070,855
4,497,114	71,673	63	3,557,617,055	981,947,764	3,321,123,019	2,254,095,995
3,948,742	67,992	58	2,326,730,115	354,577,199	2,168,228,788	1,182,272,320
6,012,743	64,043	94	10,413,217,602	1,821,463,696	6,980,187,391	5,202,355,956
3,853,096	75,089	51	4,043,933,537	484,305,163	5,444,702,882	2,101,059,967
3,310,556	66,443	50	2,608,579,263	523,429,118	2,409,054,662	1,403,739,622
4,031,590	78,730	51	1,277,997,650	463,813,987	1,010,236,724	747,674,134
5,117,716	53,520	96	3,256,050,635	376,191,830	2,190,041,863	1,752,593,448
5,757,062	82,169	70	6,113,196,026	1,762,255,426	6,534,231,853	3,849,565,499
3,887,079	63,235	61	1,945,601,210	419,330,130	1,644,638,215	1,194,623,706
3,468,548	51,183	68	1,252,155,984	229,958,970	821,589,099	755,499,071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대구 지역 본부	포 향	1,857	6,431	165,359	11,114,150,900
	구 미	656	1,332	37,682	2,721,897,600
	영 주	639	2,020	54,847	3,040,679,720
	안 동	321	1,005	28,135	1,989,447,680
경 인 지 역 본 부	경 인 본 부	3,124	6,114	171,452	12,583,802,230
	인 천 북 부	4,381	13,839	383,332	27,812,271,000
	수 원	3,156	8,230	236,184	13,704,663,250
	부 천	2,213	4,294	107,021	8,164,762,170
	안 양	3,003	6,725	213,779	15,074,968,690
	안 산	3,678	7,390	187,726	14,854,817,350
	성 남	2,220	4,655	146,450	10,694,592,420
	평 택	2,339	3,772	111,084	7,883,247,070
광 주 지 역 본 부	고 양	1,351	2,716	90,768	7,789,210,140
	광 주 본 부	3,651	10,232	335,396	23,014,055,410
	전 주	1,905	3,678	108,501	7,983,542,670
	익 산	796	1,314	37,329	3,519,310,530
	군 산	872	1,951	70,744	4,343,156,140
	목 포	1,121	2,680	78,680	4,646,401,850
	여 수	1,173	2,996	87,169	5,926,107,500
대 전 지 역 본 부	제 주	437	692	20,577	1,772,630,860
	대 전 본 부	3,065	10,506	270,063	19,704,058,850
	청 주	1,905	3,953	118,849	9,250,965,680
	천 안	1,326	3,075	76,755	5,896,679,700
	충 주	874	2,034	54,454	3,313,879,100
대 전 지 역 본 부	보 령	523	1,254	32,372	1,612,994,950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5,985,003	67,212	89	4,410,208,266	684,190,998	3,813,321,719	2,209,927,156
4,149,234	72,233	57	932,998,900	177,062,149	1,112,752,801	500,128,154
4,758,497	55,439	86	1,562,906,838	202,007,806	561,225,080	714,549,542
6,197,656	70,711	88	827,493,905	252,829,720	457,491,737	451,637,944
4,028,106	73,395	55	4,536,019,274	582,773,051	5,255,067,103	2,218,940,325
6,348,384	72,554	87	11,979,139,457	1,616,651,900	9,053,902,753	5,165,513,936
4,342,415	58,025	75	5,585,299,301	804,455,749	4,563,330,119	2,753,054,688
3,689,454	76,291	48	2,708,921,996	761,185,151	3,129,301,354	1,573,245,870
5,019,970	70,517	71	5,685,839,777	702,628,945	5,868,099,935	2,824,219,378
4,038,830	79,130	51	5,167,989,289	642,234,569	6,610,768,193	2,443,452,960
4,817,384	73,026	66	3,671,200,418	1,087,877,316	3,663,963,850	2,280,620,284
3,370,349	70,967	47	2,783,782,215	593,707,341	2,800,344,938	1,705,616,118
5,765,515	85,814	67	2,461,954,222	763,526,778	3,130,439,298	1,435,389,591
6,303,494	68,618	92	8,838,093,991	2,249,250,519	6,804,611,895	5,141,638,273
4,190,836	73,580	57	2,774,639,743	811,425,297	2,627,204,221	1,773,880,599
4,421,244	94,278	47	1,204,470,382	461,353,874	1,137,409,601	716,787,052
4,980,684	61,393	81	1,689,605,831	414,032,248	1,222,319,156	1,021,206,940
4,144,872	59,054	70	1,755,496,131	468,928,114	1,342,331,345	1,083,008,358
5,052,095	67,984	74	2,505,906,921	515,014,018	1,594,489,927	1,313,465,916
4,056,364	86,146	47	605,886,952	197,052,275	573,306,580	396,960,853
6,428,730	72,961	88	8,292,292,815	1,174,685,547	6,915,230,573	3,328,919,945
4,856,150	77,838	62	3,194,339,121	491,466,815	3,819,952,187	1,755,308,783
4,446,968	76,825	58	2,085,448,009	388,229,526	2,426,712,714	996,843,709
3,791,624	60,856	62	1,337,545,520	212,287,717	1,032,795,382	734,420,166
3,084,120	49,827	62	730,840,256	113,142,633	390,985,076	379,562,543

제 4-18-1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지 사	구 분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3,535	3,565	20,018	1,289,507,050
서 울 남 부		6	6	30	3,761,980
서 울 북 부		181	184	1,078	55,603,870
강 령		424	424	2,086	137,263,930
원 주		3	3	9	1,565,260
태 백		721	731	4,312	331,330,360
영 월		625	626	3,438	211,676,690
양 산		173	173	1,003	54,389,230
영 주		388	391	2,276	121,631,640
안 산		297	300	1,456	116,287,240
광 주 본 부		133	134	792	40,339,670
여 수		182	184	1,101	94,645,070
대 전 본 부		123	123	728	36,836,830
보 령		286	286	1,709	84,175,28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정밀진단입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364,783	64,417	6	733,856,461	1,703,482	312,681,595	241,221,961
626,997	125,399	5	1,627,410	80,692	1,366,822	687,080
307,204	51,581	6	31,640,230	-	11,120,986	12,843,250
323,736	65,802	5	82,431,960	-	27,155,657	27,616,760
521,753	173,918	3	249,830	6,640	1,155,709	153,099
459,543	76,839	6	193,621,670	-	85,411,752	52,301,256
338,683	61,570	6	118,407,120	-	53,666,003	39,607,700
314,389	54,227	6	32,183,040	-	10,036,595	12,170,360
313,484	53,441	6	70,442,580	132,155	23,772,736	27,286,280
391,540	79,868	5	63,874,390	43,700	33,373,323	18,996,648
303,306	50,934	6	21,888,430	307,678	7,315,793	10,828,648
520,028	85,963	6	48,270,230	-	33,012,628	13,363,358
299,486	50,600	6	20,753,300	-	8,405,003	7,679,320
294,319	49,254	6	48,466,271	1,132,617	16,888,588	17,688,202

제 4-18-2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지 사	구 분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3,587	36,953	1,087,229	69,773,572,940
서 울 남 부		80	195	2,707	673,665,350
서 울 북 부		56	221	5,750	331,547,460
강	릉	403	4,476	131,931	9,173,076,420
태	백	531	5,402	159,322	11,622,138,180
영	월	682	7,168	210,946	12,141,237,040
양	산	269	2,601	77,161	4,427,566,160
포	항	126	1,197	34,937	1,808,789,840
영	주	452	4,007	119,882	7,142,678,350
안	동	69	710	21,028	1,099,450,390
안	산	283	2,258	64,548	5,606,806,210
평	택	47	319	9,004	473,153,990
광 주 본 부		4	10	262	17,243,410
여	수	91	920	27,744	2,286,473,660
천	안	255	2,430	72,253	4,450,632,750
총	주	275	2,525	74,182	4,468,055,340
보	령	258	2,514	75,572	4,051,058,39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진폐입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19,451,791	64,176	303	41,847,617,060	4,555,455,961	8,823,029,447	14,545,347,289
8,420,817	248,860	34	196,418,980	201,624,553	205,993,047	69,629,587
5,920,490	57,660	103	193,928,510	20,430,152	48,169,107	69,019,662
22,761,976	69,529	327	5,562,908,449	649,759,289	1,374,860,673	1,584,086,220
21,887,266	72,947	300	7,584,173,375	622,719,800	1,437,085,863	1,970,682,250
17,802,400	57,556	309	7,317,629,961	826,469,362	1,366,307,721	2,626,650,967
16,459,354	57,381	287	2,816,685,240	115,631,255	286,002,524	1,210,992,210
14,355,475	51,773	277	946,176,740	164,247,650	257,214,012	442,706,318
15,802,386	59,581	265	3,973,503,323	498,569,361	868,105,620	1,802,502,990
15,934,064	52,285	305	583,935,139	89,613,506	122,224,731	303,681,260
19,812,036	86,863	228	3,425,697,234	222,410,706	1,104,354,965	854,344,358
10,067,106	52,549	192	249,873,028	53,470,856	43,337,967	126,473,610
4,310,853	65,815	66	8,184,380	1,618,801	3,673,201	3,767,060
25,126,084	82,413	305	1,465,836,526	135,715,668	287,501,862	397,423,690
17,453,462	61,598	283	2,557,398,066	307,220,472	528,842,799	1,057,115,100
16,247,474	60,231	270	2,448,201,862	347,738,198	548,374,799	1,131,788,398
15,701,777	53,605	293	2,517,066,247	298,216,332	340,980,556	894,483,609

제 4-18-3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731	937	12,789	1,858,759,630
서울 지 역 본 부	서 울 본 부	34	36	557	81,818,280
	서 울 강 남	2	2	17	2,648,200
	서 울 동 부	24	26	412	38,362,260
	서 울 서 부	14	16	270	34,017,860
	서 울 남 부	27	35	374	54,990,260
	서 울 북 부	22	22	318	60,923,310
	서 울 관 악	38	50	855	129,003,380
	의 정 부	5	5	62	9,745,690
	춘 천	6	6	54	9,167,080
	강 릉	5	5	23	3,065,370
	원 주	21	22	150	27,654,660
	태 백	1	3	71	5,274,850
부 산 지 역 본 부	부 산 본 부	85	87	1,035	199,596,950
	부 산 동 부	1	1	3	999,330
	창 원	2	2	14	1,880,320
	울 산	8	8	39	5,164,820
	진 주	1	1	6	1,038,570
대구 지역	대 구 본 부	11	14	111	19,857,94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특진입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2,542,763	145,340	17	682,248,577	58,684,780	695,931,306	422,141,859
2,406,420	146,891	16	28,317,020	3,742,407	30,457,814	19,301,185
1,324,100	155,776	9	917,100	138,486	1,189,044	403,580
1,598,428	93,112	17	14,825,160	2,179,051	10,541,710	10,816,450
2,429,847	125,992	19	13,116,366	1,378,037	6,366,685	13,156,852
2,036,676	147,033	14	23,714,487	3,054,758	20,212,407	8,008,746
2,769,241	191,583	14	25,396,790	2,306,286	18,690,891	14,529,445
3,394,826	150,881	23	46,656,610	5,870,040	35,948,680	40,528,290
1,949,138	157,189	12	2,409,150	1,065,462	3,357,992	2,913,113
1,527,847	169,761	9	2,459,870	285,536	4,207,089	2,214,624
613,074	133,277	5	682,600	26,916	2,141,752	214,130
1,316,889	184,364	7	6,337,920	1,823,440	10,259,278	9,234,114
5,274,850	74,294	71	2,932,691	142,908	1,207,510	991,760
2,348,199	192,847	12	61,148,000	3,194,733	77,905,593	57,349,069
999,330	333,110	3	67,550	103,030	393,012	435,744
940,160	134,309	7	514,880	42,359	1,133,995	189,090
645,603	132,431	5	1,753,494	119,560	2,714,626	577,173
1,038,570	173,095	6	240,330	347	603,451	194,450
1,805,267	178,900	10	5,458,250	950,637	6,701,758	6,747,364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경 인 지 역 본 부	경 인 본 부	102	110	1,350	288,107,740
	인 천 북 부	178	321	4,587	536,978,950
	수 원	10	10	81	15,208,330
	부 천	21	21	139	34,425,050
	안 양	4	5	119	12,230,520
	안 산	16	17	263	35,907,930
	평 택	2	2	5	1,758,990
	고 양	6	6	82	11,068,790
광 주 지 역 본 부	광 주 본 부	24	26	620	75,831,730
	전 주	1	1	1	27,140
	익 산	14	14	453	49,079,330
	여 수	2	2	18	2,544,520
	제 주	1	1	2	300,040
대 전 지 역 본 부	대 전 본 부	21	23	291	44,959,280
	청 주	9	10	113	18,554,900
	천 안	22	23	242	41,238,210
	총 주	4	4	52	5,329,050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2,824,586	213,413	13	87,532,930	5,683,817	140,348,163	54,786,016
3,016,736	117,065	26	234,512,748	7,707,672	181,294,658	113,465,230
1,520,833	187,757	8	3,822,869	871,255	6,661,295	3,852,955
1,639,288	247,662	7	5,287,772	1,628,344	20,003,757	7,505,278
3,057,630	102,777	30	4,484,848	720,035	3,654,720	3,370,949
2,244,246	136,532	16	11,263,820	1,030,728	16,032,280	7,581,172
879,495	351,798	3	290,250	147,638	782,147	538,965
1,844,798	134,985	14	3,800,958	747,723	3,169,743	3,350,394
3,159,655	122,309	26	30,872,217	7,100,445	24,956,334	12,902,832
27,140	27,140	1	15,230	-	6,482	5,430
3,505,666	108,343	32	23,531,620	3,789,074	14,072,409	7,686,283
1,272,260	141,362	9	658,410	43,719	1,343,900	498,500
300,040	150,020	2	41,300	30,000	-	228,740
2,140,918	154,499	14	17,548,900	1,188,878	19,919,306	6,302,310
2,061,656	164,203	13	6,359,090	389,550	7,070,218	4,736,094
1,874,464	170,406	11	13,452,457	1,048,577	20,217,716	6,519,582
1,332,263	102,482	13	1,824,890	133,332	2,364,891	1,005,950

제 4-19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116,108	428,674	8,827,950	70,066,686,580
서울 지역 본부	서울 본부	1,722	6,987	94,206	903,658,720
	서울 강남	1,151	2,652	49,571	302,031,240
	서울 동부	2,678	7,117	148,989	1,123,255,900
	서울 서부	1,855	6,113	95,647	790,883,390
	서울 남부	3,945	12,270	206,380	1,551,362,480
	서울 북부	4,041	14,372	240,683	1,731,723,400
	서울 관악	2,901	8,953	206,807	1,392,106,470
	의정부	3,215	13,258	190,238	1,344,336,020
	춘천	932	3,275	61,152	454,132,390
	강릉	1,396	5,516	113,768	777,256,740
	원주	1,085	4,061	51,015	504,311,680
	태백	695	2,891	68,499	290,637,890
	영월	382	1,178	28,395	140,607,500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본부	7,184	26,410	484,082	4,542,217,420
	부산 동부	2,877	8,824	189,102	1,436,858,200
	부산 북부	1,892	5,334	117,753	911,413,360
	창원	6,167	30,593	714,851	4,984,597,640
	울산	5,528	24,610	569,590	4,692,103,390
	양산	2,557	7,285	156,932	1,218,220,040
	진주	1,406	5,179	97,553	697,616,090
대구 지역 본부	통영	1,969	7,955	195,714	1,153,833,680
	대구 본부	5,542	18,961	334,952	2,968,150,800
	대구 서부	1,795	6,086	130,932	916,693,380
	대구 북부	1,405	3,985	89,400	689,931,52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통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603,461	7,937	76	25,948,663,316	6,384,452,005	34,663,766,221	3,152,429,023
524,773	9,592	55	261,269,269	146,067,292	442,612,845	53,987,418
262,408	6,093	43	109,520,830	26,410,581	146,754,439	19,308,987
419,438	7,539	56	409,388,025	114,175,324	562,639,769	37,415,492
426,352	8,269	52	276,500,345	100,371,483	367,416,023	46,618,058
393,248	7,517	52	497,938,278	137,248,294	817,320,100	100,742,180
428,538	7,195	60	592,282,084	191,567,227	850,726,288	98,391,349
479,871	6,731	71	550,015,738	83,369,412	711,794,611	46,793,304
418,145	7,067	59	520,339,944	169,382,668	584,663,639	73,678,136
487,267	7,426	66	158,910,093	29,662,164	242,421,289	23,149,784
556,774	6,832	81	276,333,280	68,905,890	391,877,772	40,426,878
464,803	9,886	47	148,096,691	96,986,570	221,557,123	37,914,758
418,184	4,243	99	129,350,093	14,660,086	140,502,391	6,135,989
368,082	4,952	74	55,196,660	33,831,684	48,529,339	4,409,478
632,269	9,383	67	1,450,485,927	535,250,882	2,331,331,045	231,636,251
499,429	7,598	66	548,637,537	48,733,518	741,480,705	100,053,278
481,720	7,740	62	384,787,901	7,097,084	487,827,528	32,218,229
808,269	6,973	116	1,919,896,507	382,123,108	2,455,236,102	232,683,722
848,789	8,238	103	1,977,330,130	253,515,933	2,349,880,175	121,994,906
476,426	7,763	61	527,253,950	25,310,840	627,855,222	38,746,446
496,171	7,151	69	259,831,921	66,494,298	312,494,158	60,541,323
586,000	5,896	99	545,083,960	17,769,500	551,262,087	47,661,556
535,574	8,861	60	943,655,641	308,042,020	1,579,328,880	140,165,617
510,693	7,001	73	358,162,623	29,292,890	475,154,321	54,943,074
491,054	7,717	64	355,911,983	5,307,783	307,478,165	21,246,642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대구 지역 본부	포 향	2,559	11,390	245,407	1,952,899,960
	구 미	1,046	3,286	60,458	455,192,640
	영 주	580	2,412	53,973	355,713,070
	안 동	416	1,325	25,007	197,695,470
경 인 지 역 본 부	경 인 본 부	4,684	13,909	246,390	1,974,384,520
	인 천 북 부	5,246	22,651	519,399	6,011,060,310
	수 원	3,921	12,225	213,813	1,773,790,660
	부 천	2,904	8,815	178,504	1,326,142,790
	안 양	3,878	9,978	340,738	2,279,815,010
	안 산	4,467	12,824	296,491	2,044,161,190
	성 남	2,928	8,158	195,231	1,658,257,940
	평 택	2,813	6,738	156,116	1,125,419,240
광 주 지 역 본 부	고 양	1,733	5,071	98,202	934,451,620
	광 주 본 부	4,399	14,350	272,132	2,300,355,330
	전 주	2,234	7,375	165,090	1,207,641,730
	익 산	975	2,964	65,400	523,273,220
	군 산	991	3,533	80,013	532,811,340
	목 포	1,198	3,589	87,263	729,020,240
	여 수	1,632	5,044	119,569	810,774,370
대 전 지 역 본 부	제 주	768	2,059	33,129	296,717,080
	대 전 본 부	4,043	15,384	306,063	2,542,389,210
	청 주	2,435	8,614	174,265	1,513,609,150
	천 안	2,210	6,722	121,079	974,304,260
	충 주	1,105	3,841	80,972	667,661,890
	보 령	865	2,552	57,035	361,205,000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763,150	7,958	96	760,057,400	150,295,448	979,260,619	62,992,792
435,175	7,529	58	183,809,097	22,953,335	234,889,982	13,552,733
613,298	6,591	93	158,239,640	12,365,018	179,870,821	5,247,675
475,229	7,906	60	70,931,120	16,560,420	90,993,321	19,230,610
421,517	8,013	53	772,485,980	164,167,925	963,208,355	75,732,147
1,145,837	11,573	99	1,632,501,975	1,329,317,146	2,593,796,836	456,836,132
452,382	8,296	55	633,195,182	242,975,522	845,216,058	53,852,308
456,661	7,429	61	564,145,770	46,421,779	669,441,140	48,134,728
587,884	6,691	88	958,020,761	92,021,773	1,191,639,528	40,747,664
457,614	6,895	66	809,912,927	100,883,819	1,069,017,029	67,306,995
566,345	8,494	67	566,429,115	206,534,272	830,270,992	58,543,287
400,078	7,209	55	489,765,036	15,084,267	587,862,656	33,154,123
539,210	9,516	57	298,002,394	120,008,249	466,166,277	50,251,716
522,927	8,453	62	884,304,924	94,718,667	1,210,281,918	115,527,999
540,574	7,315	74	466,641,609	91,196,933	602,117,016	49,117,545
536,690	8,001	67	200,235,320	63,063,779	246,845,219	14,917,023
537,650	6,659	81	241,374,513	10,367,012	263,005,427	19,130,854
608,531	8,354	73	336,620,206	22,971,653	356,864,046	16,639,281
496,798	6,781	73	309,624,304	52,097,509	417,372,285	33,888,942
386,350	8,956	43	116,593,199	5,732,817	148,265,680	26,334,200
628,837	8,307	76	920,237,472	332,216,515	1,211,917,101	78,742,611
621,605	8,686	72	568,566,549	105,568,038	770,639,911	68,928,735
440,862	8,047	55	346,419,763	118,274,347	466,223,831	43,944,254
604,219	8,246	73	246,286,540	62,037,736	337,293,687	22,450,417
417,578	6,333	66	158,083,110	15,041,495	183,162,470	6,361,397

제 4-19-1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지 사	구 분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408	497	953	23,231,130
서 울 남 부		82	87	165	6,571,300
서 울 북 부		7	7	81	5,582,050
강 령		6	6	6	783,310
원 주		1	1	24	457,620
태 백		14	15	15	3,492,360
창 원		1	1	1	349,920
영 주		4	5	21	544,050
안 산		5	5	5	637,790
광 주 본 부		1	1	153	1,968,290
여 수		282	363	475	2,152,620
대 전 본 부		1	1	1	161,700
보 령		5	5	6	530,12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정밀진단통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56,939	24,377	2	3,347,750	58,686	14,251,084	5,574,386
80,138	39,826	2	1,788,430	27,230	3,771,242	984,950
797,436	68,914	12	371,350	26,331	3,305,363	1,879,032
130,552	130,552	1	23,860	-	759,479	-
457,620	19,068	24	47,550	-	272,745	137,330
249,454	232,824	1	34,620	1,836	3,279,892	176,080
349,920	349,920	1	-	-	-	349,926
136,013	25,907	5	43,350	-	466,714	34,000
127,558	127,558	1	60	911	549,727	87,120
1,968,290	12,865	153	1,002,960	-	965,333	-
7,633	4,532	2	35,490	-	322,155	1,795,000
161,700	161,700	1	-	-	161,709	-
106,024	88,353	1	80	2,378	396,725	130,948

제 4-19-2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지 사	구 분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839	5,277	41,349	686,137,060
서 울 남 부		144	1,375	15,955	249,960,300
서 울 북 부		15	75	244	1,833,600
의 정 부		1	1	8	24,100
강 령		63	494	727	122,190,420
태 백		98	788	4,458	114,169,050
영 월		182	702	6,162	79,939,620
양 산		22	134	4,090	1,980,110
진 주		1	1	5	626,070
포 향		20	74	152	782,050
영 주		50	298	775	15,020,250
안 동		8	35	60	498,660
경 인 본 부		1	1	9	79,220
안 산		100	666	1,207	82,484,410
평 택		3	12	118	293,970
여 수		67	132	3,823	6,380,410
대 전 본 부		28	190	1,606	4,533,660
충 주		27	146	1,532	2,946,240
보 령		20	153	418	2,394,92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진폐통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817,803	16,594	49	80,603,350	420,309,812	179,471,121	5,770,756
1,735,835	15,667	111	28,731,610	142,583,487	75,290,729	3,360,162
122,240	7,515	16	943,420	252	890,039	-
24,100	3,013	8	10,050	-	9,298	4,760
1,939,530	168,075	12	5,833,910	80,345,548	36,005,141	8,000
1,164,990	25,610	45	12,813,410	78,238,858	23,109,903	10,000
439,229	12,973	34	9,844,140	55,584,440	14,068,768	444,875
90,005	484	186	1,577,280	4,275	398,829	-
626,070	125,214	5	34,710	1,752	67,404	522,213
39,103	5,145	8	714,940	-	67,136	-
300,405	19,381	16	3,266,610	6,331,397	5,322,934	100,000
62,333	8,311	8	302,130	-	196,567	-
79,220	8,802	9	43,440	-	35,788	-
824,844	68,338	12	8,836,920	52,838,782	20,691,286	120,000
97,990	2,491	39	165,040	-	128,937	-
95,230	1,669	57	857,730	4,067,078	255,695	1,200,000
161,916	2,823	57	2,411,830	-	2,122,139	-
109,120	1,923	57	2,292,350	266,576	387,480	-
119,746	5,729	21	1,923,830	47,367	423,048	746

제 4-19-3 표 '06년도 지역본부 및

구 분 지 사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합 계		15,148	22,467	94,631	4,528,240,870
서울 지역 본부	서울 본부	159	214	923	48,973,810
	서울 강남	66	85	261	11,141,530
	서울 동부	206	266	1,483	73,179,220
	서울 서부	104	120	339	15,955,710
	서울 남부	504	643	2,855	92,657,750
	서울 북부	336	396	1,707	72,343,640
	서울 관악	417	572	2,723	89,085,260
	의정부	89	103	390	15,219,570
	춘천	156	218	1,057	53,054,010
	강릉	251	352	1,416	101,326,160
	원주	382	653	2,300	187,494,180
	태백	11	11	11	730,150
	영월	3	3	32	260,260
부산 지역 본부	부산 본부	1,842	2,790	11,390	531,619,670
	부산 동부	129	139	788	32,195,930
	부산 북부	10	10	10	3,229,040
	창원	1,451	2,091	9,975	548,354,710
	울산	943	1,043	2,263	339,381,800
	양산	3	3	3	782,640
	진주	339	465	1,527	86,094,050
	통영	5	5	5	1,744,800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503	695	3,255	106,327,680
	대구 서부	3	3	15	311,890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 (특진통원)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298,933	47,852	6	381,968,168	39,570,430	2,148,319,747	1,964,968,028
308,011	53,059	6	4,042,190	400,137	28,089,913	16,442,258
168,811	42,688	4	1,341,650	33,143	3,140,236	6,626,743
355,239	49,345	7	5,026,320	2,871,589	43,937,788	21,344,394
153,420	47,067	3	2,107,010	144,566	6,348,672	7,355,754
183,845	32,455	6	10,586,220	13,806	35,445,999	46,613,974
215,308	42,381	5	7,913,560	1,111,249	35,909,205	27,410,879
213,634	32,716	7	9,764,930	1,018,126	46,981,809	31,321,800
171,006	39,025	4	1,588,466	243,921	6,347,160	7,040,275
340,090	50,193	7	5,063,590	6,076	21,881,748	26,103,430
403,690	71,558	6	5,663,720	275	50,851,006	44,812,419
490,822	81,519	6	9,728,850	79,607	42,018,673	135,669,647
66,377	66,377	1	167,530	-	322,660	240,000
86,753	8,133	11	8,000	179,244	15,344	57,680
288,610	46,674	6	46,363,590	924,060	239,031,414	246,650,947
249,581	40,858	6	2,679,840	1,466	10,923,833	18,591,235
322,904	322,904	1	13,810	-	863,519	2,351,767
377,915	54,973	7	36,638,930	89,345	228,649,089	282,983,193
359,896	149,970	2	15,952,970	249,433	200,553,592	122,629,699
260,880	260,880	1	34,630	-	245,055	502,970
253,965	56,381	5	7,986,730	57,448	31,348,966	46,702,197
348,960	348,960	1	54,760	-	975,572	714,480
211,387	32,666	6	13,389,270	365,951	44,101,929	48,472,936
103,963	20,793	5	47,960	-	219,938	44,000

지 사		구 분	수 급 자 수	지 급 건 수	요 양 일 수	지 급 총 액
대구 지역 본부	포	항	307	357	839	54,103,210
	구	미	31	37	264	3,520,250
	영	주	3	3	3	697,890
	안	동	4	5	40	488,760
경 인 지 역 본 부	경	인 본 부	1,189	1,825	8,794	470,667,340
	인	천 북 부	1,020	1,459	5,220	309,628,550
	수	원	449	555	1,946	51,522,930
	부	천	269	435	1,749	85,388,350
	안	양	296	349	1,265	51,805,220
	안	산	233	270	665	28,824,260
	성	남	216	264	989	51,330,680
	평	택	21	21	47	5,331,210
광 주 지 역 본 부	고	양	136	160	426	28,892,100
	광	주 본 부	1,458	2,724	13,020	397,536,360
	전	주	153	196	811	27,572,800
	익	산	167	223	1,148	41,098,530
	군	산	87	113	270	25,341,900
	목	포	105	117	324	24,720,880
	여	수	264	306	2,194	27,292,680
대 전 지 역 본 부	제	주	65	81	188	12,473,420
	대	전 본 부	501	676	3,435	156,684,240
	청	주	235	296	1,387	58,976,060
	천	안	510	950	4,351	151,940,660
	충	주	114	152	510	47,704,560
	보	령	12	13	18	3,234,570

(단위: 명, 건, 일, 원)

1인 평균 진료비	1일 평균 진료비	평 균 요양일수	기 본 진 료 료	약 가	행위진료료	기 타
176,232	64,485	3	4,540,990	12,911	30,343,592	19,206,727
113,556	13,334	9	510,910	-	2,067,087	942,310
232,630	232,630	1	41,430	-	180,536	475,940
122,190	12,219	10	117,700	-	311,209	59,860
395,851	53,521	7	34,203,050	564,060	269,653,949	166,250,560
303,557	59,316	5	20,891,430	724,523	157,311,904	130,704,773
114,750	26,476	4	7,702,610	1,733,137	26,122,735	15,965,498
317,429	48,821	7	6,841,505	2,327,275	39,059,419	37,161,608
175,018	40,953	4	7,165,800	85,988	23,099,868	21,454,514
123,709	43,345	3	4,399,640	24,443	17,927,575	6,473,339
237,642	51,902	5	4,595,650	719,181	16,997,884	29,018,744
253,867	113,430	2	385,700	-	2,673,981	2,271,622
212,442	67,822	3	2,611,260	597,452	9,375,435	16,308,496
272,659	30,533	9	52,619,005	20,907,909	185,378,403	143,816,604
180,214	33,999	5	3,811,600	404,990	10,668,937	12,687,915
246,099	35,800	7	4,905,270	1,325,130	18,713,880	16,155,029
291,286	93,859	3	1,270,600	79,178	7,973,284	16,019,245
235,437	76,299	3	1,867,800	160,732	16,685,452	6,007,365
103,381	12,440	8	1,706,040	44,174	6,981,674	18,561,154
191,899	66,348	3	1,307,980	-	3,302,433	7,863,253
312,743	45,614	7	11,956,722	137,585	88,916,854	55,675,352
250,962	42,521	6	4,479,900	301,080	26,160,696	28,035,314
297,923	34,921	9	15,150,150	1,215,862	80,074,120	55,502,485
418,461	93,538	4	2,516,940	415,378	28,296,242	16,476,474
269,548	179,698	2	203,960	-	1,839,478	1,191,170

제 4-20 표 지사별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6월미만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합 계		46,139	20,254	8,718	5,619	2,546	2,745	3,396	2,861
서울 지 역 본 부	서울 본부	674	262	117	84	43	41	38	89
	서울 강남	494	245	98	68	29	27	22	5
	서울 동부	924	481	189	115	41	37	38	23
	서울 서부	583	295	84	45	9	17	67	66
	서울 남부	1,534	621	355	210	94	95	107	52
	서울 북부	1,526	521	285	249	105	98	112	156
	서울 관악	981	534	271	114	26	21	13	2
	의 정 부	1,221	491	121	47	20	24	74	444
	춘 천	348	190	60	51	20	13	9	5
	강 릉	948	227	129	106	60	115	169	142
	원 주	331	139	46	40	24	21	29	32
	태 백	866	133	114	127	72	111	204	105
	영 월	700	85	44	46	73	113	199	140
부산 지 역 본 부	부산 본부	2,340	954	553	352	140	128	169	44
	부산 동부	834	383	221	126	35	32	34	3
	부산 북부	521	346	83	32	15	23	19	3
	창 원	2,656	828	541	448	264	240	236	99
	울 산	1,831	862	454	234	107	97	61	16
	양 산	854	422	125	70	35	57	85	60
	진 주	562	257	116	84	22	32	40	11
	통 영	790	292	198	169	67	43	19	2
대구 지역 본부	대구 본부	1,626	703	362	228	104	101	90	38
	대구 서부	575	323	120	56	22	18	26	10
	대구 북부	495	332	106	31	9	9	8	0

(단위 : 명)

구 분			합 계	6월미만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대구 지역 본부	포항		1,134	396	269	183	63	79	102	42
	구미		285	184	48	23	12	15	3	0
	영주		651	130	86	88	43	49	134	121
	안동		245	81	30	27	8	23	39	37
경인 지 역 본 부	경인 본부		1,256	679	248	156	64	48	43	18
	인천 북부		2,360	774	330	240	138	195	265	418
	수원		1,234	594	176	123	69	71	114	87
	부천		840	507	181	73	21	28	20	10
	안양		1,219	612	264	179	72	62	27	3
	안산		1,617	790	316	194	82	79	100	56
	성남		905	528	133	99	49	46	43	7
	평택		676	502	100	40	7	6	16	5
	고양		642	354	124	87	15	26	23	13
광주 지 역 본 부	광주 본부		1,706	747	337	194	104	127	112	85
	전주		709	430	138	80	20	25	10	6
	익산		356	206	69	45	13	13	9	1
	군산		360	163	77	60	22	22	12	4
	목포		418	245	111	38	12	4	4	4
	여수		646	315	110	75	34	31	51	30
	제주		178	129	24	14	4	3	2	2
대전 지 역 본 부	대전 본부		1,858	737	316	186	100	118	200	201
	청주		825	462	162	89	37	26	33	16
	천안		603	213	86	68	43	46	65	82
	충주		627	380	99	54	22	22	27	23
	보령		575	170	92	72	56	68	74	43

제 4-21 표 연도별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6월미만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97	계	33,329	16,439	6,312	4,542	2,075	1,612	1,510	839
	입원	13,090	7,008	1,768	1,474	836	650	783	571
	통원	20,239	9,431	4,544	3,068	1,239	962	727	268
'98	계	27,959	13,102	4,592	4,070	1,751	1,773	1,747	924
	입원	11,862	6,057	1,343	1,408	796	841	819	598
	통원	16,097	7,045	3,249	2,662	955	932	928	326
'99	계	31,658	16,581	5,152	3,438	1,861	1,903	1,782	941
	입원	13,461	7,725	1,559	1,213	789	853	729	593
	통원	18,197	8,856	3,593	2,225	1,072	1,050	1,053	348
'00	계	33,125	14,076	6,538	4,933	1,775	2,302	2,297	1,204
	입원	12,891	5,772	1,966	1,692	732	1,042	982	705
	통원	20,234	8,304	4,572	3,241	1,043	1,260	1,315	499
'01	계	36,300	13,371	7,390	5,843	2,446	2,647	3,390	1,213
	입원	13,583	5,407	2,141	1,875	946	1,160	1,448	606
	통원	22,717	7,964	5,249	3,968	1,500	1,487	1,942	607
'02	계	41,553	15,051	8,776	6,859	2,931	2,675	3,851	1,410
	입원	14,928	5,974	2,379	2,066	1,070	1,141	1,641	657
	통원	26,625	9,077	6,397	4,793	1,861	1,534	2,210	753
'03	계	49,351	17,280	11,259	8,211	3,569	3,355	3,862	1,815
	입원	17,625	6,846	3,027	2,543	1,321	1,402	1,726	760
	통원	31,726	10,434	8,232	5,668	2,248	1,953	2,136	1,055
'04	계	53,068	17,380	11,846	9,674	3,996	3,845	4,106	2,221
	입원	18,746	6,761	3,190	2,926	1,518	1,600	1,861	890
	통원	34,322	10,619	8,656	6,748	2,478	2,245	2,245	1,331
'05	계	50,332	18,823	10,058	7,859	3,503	3,594	3,834	2,661
	입원	16,859	6,633	2,360	2,340	1,256	1,583	1,680	1,007
	통원	33,493	12,190	7,698	5,519	2,247	2,011	2,154	1,654
'06	계	46,139	20,254	8,718	5,619	2,546	2,745	3,396	2,861
	입원	15,145	6,483	1,833	1,737	1,010	1,359	1,635	1,088
	통원	30,994	13,771	6,885	3,882	1,536	1,386	1,761	1,773

5. 재 활

제 5-1 표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위탁훈련 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선발인원	수료인원	취업자	중도탈락	지원금액
'98	225	138	-	74	151,958,000
'99	178	63	-	30	246,996,000
'00	810	496	-	131	958,551,000
'01	1,665	1,109	353	223	2,186,600,000
'02	2,813	2,191	437	233	4,988,595,000
'03	1,995	2,605	992	249	5,788,477,000
'04	2,838	1,972	715	100	4,878,564,000
'05	4,384	2,707	1,205	263	9,444,010,000
'06	5,680	3,361	1,779	237	11,478,885,000

※ 수료인원, 취업자, 중도탈락은 전년도 선발인원 포함, '98~'00년까지는 취업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음

제 5-2 표 산재근로자 자립점포임대지원 현황

(단위 : 명, 건, 원)

구 분	지원자수	지원건수	지원금액
'00	33	33	1,194,000,000
'01	68	68	3,063,600,000
'02	156	156	7,434,000,000
'03	154	154	8,151,000,000
'04	142	142	7,576,000,000
'05	151	151	8,564,000,000
'06	149	149	8,501,900,000

제 5-3 표 재활상담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상담자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직업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직업배치
'00	24,514	6,190	3,409	3,119	679
'01	22,570	4,937	3,030	2,970	683
'02	33,556	5,617	3,670	3,485	1,240
'03	34,370	3,614	2,617	3,031	1,526
'04	36,993	4,037	3,458	3,802	2,250
'05	52,847	5,360	5,258	5,493	2,668
'06	54,175	7,606	6,999	7,302	3,029

제 5-4 표 후유증상 관리제도 운영현황

(단위 : 명, 건, 원)

구 분	진료카드 발급자수	수급자수	총지급액
'00	977	47	11,950,000
'01	6,085	1,687	893,447,000
'02	14,935	7,313	4,212,795,000
'03	18,675	14,302	8,430,361,000
'04	19,399	20,481	12,307,332,000
'05	20,714	26,346	16,057,793,000
'06	21,101	31,038	20,276,189,000

제 5-5 표 재활스포츠 지원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선 발	종 료	중도탈락	지원금액
'01	574	443	131	115,034,000
'02	1,625	1,202	423	472,861,000
'03	1,427	1,052	375	554,084,000
'04	1,193	1,061	132	204,493,000
'05	1,808	1,640	168	395,926,000
'06	2,544	1,153	354	655,446,000

제 5-6 표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현황

(단위 : 명, 건, 원)

구 분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재활보조기구 수리		
	수급자수	지급건수	지원금액	수급자수	지급자수	지원금액
'02	355	371	274,143,020	56	130	38,082,000
'03	601	657	450,975,830	210	425	115,313,320
'04	826	867	522,684,110	421	841	250,492,000
'05	784	822	521,801,000	516	1,110	298,461,000
'06	958	1,041	622,910,000	578	1,165	302,281,000

제 5-7 표 재활훈련원 공과별 훈련현황

(단위 : 명, %)

구 분	'05			'06			입교 증감내역		수료 전년 대비	
	목표	입교	수료	목표	입교	수료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합 계	250	272	221	250	109	225	-163	-59.9	4	1.8
의상 디자인	60	69	58	60	27	55	-42	-60.9	-3	-5.2
사 진	25	25	13	25	6	23	-19	-76.0	10	76.9
전 자 출 판	30	24	23	30	12	21	-12	-50.0	-2	-8.7
광고 디자인	50	52	42	50	24	50	-28	-53.8	8	19.0
금 속 공 예	25	28	19	25	9	23	-19	-67.9	4	21.1
산 업 설 비	30	40	34	30	18	29	-22	-55.0	-5	-14.7
정 보 통 신	30	34	32	30	13	24	-21	-61.8	-8	-25.0

제 5-8 표 재활훈련원 공과별 수료생 직업복귀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5				'06				직업복귀전년대비	
	수료	계	취업	자영	수료	계	취업	자영	증 감	증감률
합 계	221	212	186	26	225	217	199	18	5	2.4
의상 디자인	58	56	37	19	55	53	41	12	-3	-5.4
사 진	13	13	13	0	23	23	22	1	10	76.9
전 자 출 판	23	23	23	0	21	21	21	0	-2	-8.7
광고 디자인	42	40	37	3	50	45	43	2	5	12.5
금 속 공 예	19	19	18	1	23	23	22	1	4	21.1
산 업 설 비	34	32	29	3	29	28	27	1	-4	-12.5
정 보 통 신	32	29	29	0	24	24	23	1	-5	-17.2

제 5-9 표 재 활훈련원 연도별 훈련현황

(단위 : 명, %)

구	분	선발인원	중도탈락	수 료	수 료 율
'98	합 계	478	170	308	64.4
	안산 훈련원	244	96	148	60.7
	광주 훈련원	234	74	160	68.4
'99	합 계	178	54	124	69.7
	안산 훈련원	101	48	53	52.5
	광주 훈련원	77	6	71	92.2
'00	합 계	219	98	121	55.3
	안산 훈련원	121	52	69	57.0
	광주 훈련원	98	46	52	53.1
'01	합 계	246	86	160	65.0
	안산 훈련원	123	27	96	78.0
	광주 훈련원	123	59	64	52.0
'02	합 계	232	84	148	63.8
	안산 훈련원	142	50	92	64.8
	광주 훈련원	90	34	56	62.2
'03	합 계	242	38	180	74.4
	안산 훈련원	121	25	91	75.2
	광주 훈련원	121	13	89	73.6
'04	합 계	232	38	210	90.5
	안산 훈련원	118	23	95	80.5
	광주 훈련원	114	15	115	100.9
'05	합 계	272	48	221	81.3
	안산 훈련원	133	21	104	78.2
	광주 훈련원	139	27	117	84.2
'06	합 계	109	33	225	206.4
	안산 훈련원	48	9	117	243.8
	광주 훈련원	61	24	108	177.0

※ 중도탈락 및 수료인원은 전년 선발인원 포함

제 5-10 표 재활훈련원 연도별 공과별 입교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의상디자인	사진인쇄	전자출판	광고디자인	금속공예	산업설비	정보통신
'98	169	50	28	0	61	13	17	0
'99	154	33	26	0	55	21	19	0
'00	205	62	31	0	59	18	20	15
'01	160	50	19	4	39	15	19	14
'02	232	59	19	34	50	27	21	22
'03	252	62	22	29	53	27	30	29
'04	232	56	21	24	51	17	32	31
'05	272	69	25	24	52	28	40	34
'06	109	27	6	12	24	9	18	13

제 5-11 표 재활훈련원 연도별 장애등급별 입교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 ~ 3급	4 ~ 7급	8 ~ 10급	11 ~ 14급
'98	169	21	73	35	40
'99	154	16	59	39	40
'00	205	15	78	54	58
'01	160	11	63	36	50
'02	232	15	88	61	68
'03	252	13	84	69	86
'04	232	3	67	68	94
'05	272	10	64	85	113
'06	109	4	30	30	45

제 5-12 표 재 활훈련원 연도별 수료생 직업복귀현황

(단위 : 명, %)

구	분	수료인원	직업복귀			복귀율
			합 계	취 업	자 영	
'98	합 계	11	1	1	0	9.1
	안산 훈련원	9	0	0	0	0.0
	광주 훈련원	2	1	1	0	50.0
'99	합 계	96	68	44	24	70.8
	안산 훈련원	53	38	22	16	71.7
	광주 훈련원	43	30	22	8	69.8
'00	합 계	121	92	65	27	76.0
	안산 훈련원	69	51	35	16	73.9
	광주 훈련원	52	41	30	11	78.8
'01	합 계	160	130	82	48	81.3
	안산 훈련원	96	77	47	30	80.2
	광주 훈련원	64	53	35	18	82.8
'02	합 계	148	126	89	37	85.1
	안산 훈련원	92	79	56	23	85.9
	광주 훈련원	56	47	33	14	83.9
'03	합 계	180	161	137	24	89.4
	안산 훈련원	91	85	68	17	93.4
	광주 훈련원	89	76	69	7	85.4
'04	합 계	210	200	171	29	95.2
	안산 훈련원	95	90	73	17	94.7
	광주 훈련원	115	110	98	12	95.7
'05	합 계	221	212	186	26	95.9
	안산 훈련원	104	104	88	16	100.0
	광주 훈련원	117	108	98	10	92.3
'06	합 계	225	217	199	18	96.4
	안산 훈련원	117	116	108	8	99.1
	광주 훈련원	108	101	91	10	93.5

제 5-13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획		실 시		지원금액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원	
'02	11	1,070	7	565	138,200,000
'03	19	740	14	341	102,033,810
'04	21	570	21	501	242,804,240
'05	21	483	19	406	233,645,590
'06	30	693	28	504	320,040,000

제 5-14표 의료재활지원사업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원)

구 분	대 상		취미활동반 운영현황			지 원 금		
	의료기관수	환자수	의료기관수	취미활동반	참여인원	의료기관수	취미활동반	지금액
'99	13	1,700	5	14	244	5	14	1,924,700
'00	13	1,700	4	19	401	4	19	10,413,000
'01	13	1,700	7	30	621	7	30	36,846,590
'02	23	2,600	9	30	667	7	30	85,653,440
'03	27	2,893	8	29	662	8	29	81,163,250
'04	26	2,938	10	34	960	10	34	106,168,960
'05	28	3,063	14	52	1,159	14	52	132,131,540
'06	29	2,785	26	93	2,186	26	93	172,210,740

제 5-15표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원)

구 분	장해급여자 지원인원			직업복귀 유형별		지원금액
	총인원	1~3급	4~9급	원직장	타직장	
'04	66	1	65	51	15	314,060,000
'05	441	2	439	335	106	2,202,969,000
'06	554	6	548	419	135	2,779,938,000

※ '03.7.1 사업시행 후 '04.7.1부터 지급 개시

6. 권 리 구 제

제 6-1표 연도별 심사

금 여	연 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처 리																
합 계			242	304	371	271	366	501	521	535	694	693	627	773	1,135	1,223	1,268
요 양 급 여	소 계	49	50	51	29	37	35	64	67	107	107	90	124	204	215	185	
	취 소	11	12	5	9	8	7	16	10	34	21	31	20	57	46	32	
	기 각	35	34	39	18	23	26	46	51	68	76	54	92	140	158	134	
	각 하	3	2	5	2	5	2	2	4	5	10	5	12	7	11	18	
	기 타	-	2	2	-	1	-	-	2	-	-	-	-	-	-	-	1
휴 업 급 여	소 계	5	4	5	-	4	9	5	16	9	15	-	4	4	4	8	
	취 소	-	1	-	-	1	2	1	2	1	1	-	1	-	-	4	
	기 각	3	2	3	-	3	7	4	10	8	11	-	3	4	3	2	
	각 하	2	-	1	-	-	-	-	4	-	3	-	-	-	1	2	
	기 타	-	1	1	-	-	-	-	-	-	-	-	-	-	-	-	
장 해 급 여	소 계	140	202	258	188	258	371	388	352	485	472	451	552	817	885	911	
	취 소	29	74	28	30	62	49	70	84	127	59	77	107	197	205	214	
	기 각	108	111	212	153	186	320	316	264	351	412	365	439	614	673	689	
	각 하	3	3	13	5	8	2	2	2	7	1	9	6	6	7	8	
	기 타	-	14	5	-	2	-	-	2	-	-	-	-	-	-	-	
유 족 급 여	소 계	48	48	57	54	67	86	64	93	93	72	60	89	101	105	130	
	취 소	5	4	5	2	12	28	19	23	20	14	15	24	29	22	21	
	기 각	33	38	49	51	54	53	45	67	72	56	42	59	70	80	101	
	각 하	6	-	2	1	1	45	-	-	1	2	3	6	2	3	8	
	기 타	4	6	1	-	-	-	-	3	-	-	-	-	-	-	-	
기 타	소 계	-	-	-	-	-	-	-	7	-	27	26	4	9	14	34	
	취 소	-	-	-	-	-	-	-	-	-	17	7	2	2	1	7	
	기 각	-	-	-	-	-	-	-	4	-	10	14	2	7	13	23	
	각 하	-	-	-	-	-	-	-	1	-	-	5	-	-	-	4	
	기 타	-	-	-	-	-	-	-	2	-	-	-	-	-	-	-	

청 구 심 사 현 황

(단위 : 건)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1,548	1,756	2,451	2,948	3,368	3,271	3,529	4,063	5,084	5,197	4,250	3,204	3,973	3,470	3,831	4,494	6,370	8,458
279	435	564	663	637	734	925	1,443	2,166	2,363	2,099	1,636	2,238	1,917	2,264	2,744	3,984	5,407
37	80	54	43	63	152	95	222	263	218	302	178	161	108	138	243	333	522
220	314	478	590	541	531	771	1,153	1,807	2,057	1,688	1,394	1,971	1,719	1,992	2,356	3,455	4,711
21	39	28	28	30	49	54	56	78	70	66	42	53	49	74	86	153	151
1	2	4	2	3	2	5	12	18	18	43	22	53	41	60	59	43	23
9	8	7	8	24	18	52	118	164	120	148	127	136	39	37	59	76	151
1	2	1	1	2	1	9	28	34	33	32	30	13	4	5	7	16	21
5	4	6	7	19	15	35	84	118	81	101	84	108	32	26	40	56	105
3	2	-	-	3	2	8	4	10	5	12	5	9	1	-	3	4	21
-	-	-	-	-	-	-	2	2	1	3	8	6	2	6	9	-	4
1,081	1,075	1,545	1,782	2,024	1,925	2,000	1,811	2,032	2,122	1,478	964	1,053	914	888	918	1,316	1,710
188	211	223	235	332	430	369	368	438	414	333	167	99	99	113	124	185	240
881	849	1,299	1,523	1,667	1,477	1,609	1,409	1,573	1,682	1,101	744	888	764	720	737	1,085	1,432
10	13	22	19	23	17	22	24	12	8	15	15	14	10	15	11	24	20
2	2	1	5	2	1	6	10	9	14	29	38	52	41	40	46	22	18
140	171	197	252	337	370	449	657	694	582	497	440	512	412	400	426	478	567
20	28	33	35	61	136	69	86	99	52	57	56	71	49	48	41	50	46
112	137	154	211	268	218	364	552	562	514	424	376	428	353	342	379	419	509
7	6	9	6	8	15	14	18	32	13	12	8	8	7	6	5	7	8
1	-	1	-	-	1	2	1	1	3	4	-	5	3	4	1	2	4
39	67	138	243	346	224	103	34	28	10	28	37	34	188	242	347	516	623
5	10	19	11	35	37	17	1	1	-	6	4	0	17	39	44	84	99
31	37	97	223	301	163	76	28	19	9	17	24	25	148	186	276	406	478
3	20	21	8	9	22	9	4	5	1	4	6	8	10	10	18	19	37
-	-	1	1	1	2	1	1	3	-	1	3	1	13	7	9	7	9

제 6-2표 연도별 재심

[illegible]

7. 재 해 근 로 자 복 지

제 7-1표 국고투자현황

1. 산재의료관리원 시설투자부분 출연금 현황(구, 정부출자금)

(단위: 원)

구 분	합 계	산 특	일 반	비고(현물 출자) 산특에 포함
'81	6,629,661,740	6,629,661,740	-	-
'82	7,956,999,250	7,956,999,250	-	-
'83	7,911,242,000	7,911,242,000	-	-
'84	13,467,108,850	13,467,108,850	-	3,504,698,850
'85	17,863,763,760	17,863,763,760	-	12,203,154,760
'86	7,322,133,000	4,945,457,000	2,376,676,000	-
'87	7,791,259,000	6,734,569,000	1,056,690,000	167,600,000
'88	8,256,200,400	7,252,338,400	1,003,862,000	19,680,000-
'89	9,851,323,000	9,851,323,000	-	-
'90	10,768,526,000	10,768,526,000	-	-
'91	10,119,401,000	10,119,401,000	-	-
'92	10,513,524,000	10,513,069,000	455,000	-
'93	5,710,755,000	5,693,363,000	17,392,000	-
'94	6,277,677,000	6,228,804,000	48,873,000	-
'95. 4. 30	6,000,000,000	6,000,000,000	-	-

구 분	계	시설투자출연금	비	고
'95. 5. 1	14,993,060,000	14,993,060,000	-	-
'96	7,220,450,000	7,220,450,000	-	-
'97	3,710,936,000	3,710,936,000	-	-
'98	2,757,380,000	2,757,380,000	-	-
'99	-	-	-	-
'00	100,000,000	100,000,000	-	-
'01	8,226,217,000	8,226,217,000	-	-
'02	18,785,068,000	18,785,068,000	-	-
'03	17,704,000,000	17,704,000,000	-	-
'04	13,673,000,000	13,673,000,000	-	-
'05	20,338,000,000	20,338,000,000	-	-
'06	12,447,000,000	12,447,000,000	-	-
누 계	119,955,111,000	119,955,111,000	4,503,948,000	15,895,133,610

* '95. 5. 1. 산특회계가 폐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의 신설로 정부출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변경

* '95. 5. 1. 이후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02년 이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된 금액임.

2. 산재의료관리원 경상비 부분 출연금 현황(구, 국고보조)

(단위: 천원)

구 분	'79	'80	'81	'82	'83	'84	'85	'86	'87
합 계	262,627	201,715	105,283	297,010	615,583	589,800	731,080	640,944	591,003
본 사	56,872	145,704	-	-	356,419	-	-	-	-
중 앙 병 원	-	-	-	178,955	133,258	460,000	-	-	-
동 해 병 원	-	-	-	-	-	-	-	-	297,472
창 원 병 원	178,597	-	-	-	-	-	-	-	159,731
순 천 병 원	-	-	-	-	-	-	222,362	63,351	133,800
안 산 중 앙 병 원	-	-	-	-	-	-	147,882	56,225	-
화 성 요 양 원	-	-	-	-	-	-	14,798	-	-
안산 재활 훈련원	-	-	-	-	-	-	219,912	258,856	-
직 업 병 연구소	-	-	-	-	-	-	-	135,356	-
재 활 적 응 훈 련	27,158	56,011	105,283	118,055	125,906	29,800	126,126	127,156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95. 4. 30
합 계	848,763	1,123,231	1,264,000	1,634,012	2,022,358	2,750,077	2,756,084	625,642
근 로 복 지 사 업	-	-	130,759	306,750	614,602	1,186,513	1,245,838	320,803
수 기 공 모 사 업	-	-	13,860	15,979	18,019	17,438	18,310	4,578
안산 재활 훈련원	396,342	428,010	427,568	433,916	419,362	420,479	441,504	86,141
직 업 병 연구소	211,555	325,600	406,581	433,248	-	-	-	-
재 활 적 응 훈 련	140,542	171,765	171,588	182,843	185,192	186,451	195,774	48,943
정 선 병 원	100,344	197,856	113,644	-	-	-	-	-
대 전 중 앙 병 원	-	-	-	261,276	697,787	423,575	-	-
안산 자립 작업장	-	-	-	-	17,762	23,124	24,280	5,783
광 주 재 활 훈 련 원	-	-	-	-	69,634	23,124	346,334	83,427
화 성 요 양 원	-	-	-	-	-	252,438	265,060	38,126
재 활공 학 연구 센터	-	-	-	-	-	-	218,984	37,841

* '95. 5. 1 산특회계가 폐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의 신설로 동시기에서의 산재의료관리원 경상운영비 부분에 출연된 금액임(경상비 보조금 포함)

* '96. 4. 26부로 화성요양원이 경기요양병원으로 변경

구 분	'95.5.1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1,863,199	3,030,910	1,192,621	1,138,952	589,781	1,490,638	2,268,490	3,253,000	2,465,000	2,688,000	2,847,000	5,193,000
재활적응훈련	146,830	262,583	196,047	311,595	-	341,430	431,673	625,000	625,000	649,000	745,000	-
안산재활훈련원	258,424	410,310	68,110	-	-	-	-	-	-	-	-	-
광주재활훈련원	250,282	398,115	69,451	-	-	-	-	-	-	-	-	-
산재근로자자립작업장 (안산자립작업장)	17,350	27,575	3,529	-	-	-	-	-	-	-	-	-
재활공학연구센터	113,525	592,235	542,910	727,357	580,781	1,149,208	1,836,817	2,628,000	1,840,000	2,039,000	2,102,000	2,165,000
경기요양원	114,378	249,361	92,929	-	-	-	-	-	-	-	-	-
재활전문센터	-	-	-	-	-	-	-	-	-	-	-	1,736,000
운동재활센터	-	-	-	-	-	-	-	-	-	-	-	295,000
직업성폐질환 케어센터	-	-	-	-	-	-	-	-	-	-	-	864,000
본 부	962,410	1,090,731	219,645	100,000	-	-	-	-	-	-	-	133,000

3. 연도별 산재보험기금 출현현황

(단위: 천원)

내 역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3,896,332	580,781	1,490,638	10,456,707	22,038,068	20,169,000	16,361,000	23,185,000	17,640,000
○ 보험시설 투자	2,757,380	-	100,000	8,226,217	18,785,068	17,704,000	13,673,000	20,338,000	12,447,000
- 시설확충	1,434,098	-	-	5,500,000	5,915,798	14,923,000	9,271,000	15,738,000	6,361,000
- 재활공학연구센터 연구장비	-	-	100,000	702,217	3,900,000	640,000	571,000	-	-
- 장비교체 및 보강	514,322	-	-	-	4,621,000	-	1,462,000	4,600,000	6,086,000
- 산재모병원 건립용역비	-	-	-	-	-	-	-	-	-
- 신정보시스템 구축	808,960	-	-	2,024,000	4,348,270	2,141,000	2,369,000	0	-
○ 보험시설 경상지원	1,138,952	580,781	1,390,638	2,230,490	3,253,000	2,465,000	2,688,000	2,847,000	5,193,000
- 재활적응훈련사업	311,595	-	341,430	418,103	625,000	625,000	649,000	745,000	-
- 안산재활훈련원	484,493	-	-	-	-	-	-	-	-
- 광주재활훈련원	358,409	-	-	-	-	-	-	-	-
- 산재근로자자립작업장	-	-	-	-	-	-	-	-	-
- 재활공학연구센터	727,357	580,781	1,049,208	1,812,387	2,628,000	1,840,000	2,039,000	2,102,000	2,165,000
- 재활전문센터	-	-	-	-	-	-	-	-	1,736,000
- 운동재활센터	-	-	-	-	-	-	-	-	295,000
- 직업성폐질환연구센터	-	-	-	-	-	-	-	-	864,000
- 케어센터	-	-	-	-	-	-	-	-	133,000
- 본부경상운영비	100,000	-	-	-	-	-	-	-	-

*1995. 5. 1 산재보험기금 신설

제 7-2표 보험시설현황

1. 병원시설

병 원 명	허 가 병상수	시설규모 (㎡)		개설 진료과	소 재 지
		부 지	건 물		
합 계	3,746	415,788	193,599	104 진료과	전국 9개 지역
인 천 중 앙 병 원	650	59,757	35,506	내과외 15개	인천 부평구 구산동 47-3
태 백 중 앙 병 원	544	35,642	30,393	내과외 12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95
창 원 병 원	400	28,056	23,235	내과외 17개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4-1
대 전 중 앙 병 원	450	32,442	25,337	내과외 15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5-3
안 산 중 앙 병 원	485	21,361	22,905	내과외 13개	경기도 안산시 일동 95
순 천 병 원	294	39,500	19,517	내과외 13개	전남 순천시 조례동 544
동 해 병 원	508	72,786	20,319	내과외 8개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190
정 선 병 원	241	44,665	11,106	내과외 2개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30
경 기 요 양 병 원	174	81,579	5,281	신경외과 1개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화수리 산 21-11

*97. 1. 1부로 정성병원이 태백중앙병원으로 변경

2. 재활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주 요 기 능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춘천	총 820세대 2,445명 정원	저소득여성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
재활 공학 연 구 소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47-3	보장구연구실	의지·보장구의 연구 및 제작, 보급
안 산 재활훈련원	경기 안산 일동 95	5개 훈련공과 130명 정원	산재장해근로자의 자활능력 배양
광 주 재활훈련원	광주시 북구 대촌동 870-1	4개 훈련공과 120명 정원	"

* 2002년 2월 21일부로 재활공학연구센터가 재활공학연구소로 변경

제 7-3표 병원별 연도별

1. 환자 진료현황 (일평균)

구 분			'79	'80	'81	'82	'83	'84	'85	'86
합 계	합	계	690	1,211	1,331	1,576	2,028	2,290	2,807	3,068
	입	원	304	539	630	746	1,115	1,341	1,778	1,961
	외	래	386	672	701	830	913	949	1,029	1,107
인 천 중 양 병 원	합	계	0	0	0	0	299	516	592	548
	입	원	-	-	-	-	188	321	378	348
	외	래	-	-	-	-	111	195	214	200
태 백 중 양 병 원	합	계	396	424	492	548	503	512	483	561
	입	원	186	206	225	234	233	257	259	297
	외	래	210	218	267	314	270	255	224	264
창 원 병 원	합	계	165	398	428	542	483	487	435	518
	입	원	16	87	134	173	125	144	149	209
	외	래	149	311	294	369	358	343	286	309
대 전 중 양 병 원	합	계	0	0	0	0	0	0	0	0
	입	원	-	-	-	-	-	-	-	-
	외	래	-	-	-	-	-	-	-	-
안 산 중 양 병 원	합	계	0	0	0	0	0	0	123	199
	입	원	-	-	-	-	-	-	79	118
	외	래	-	-	-	-	-	-	44	81
순 천 병 원	합	계	0	0	0	0	0	0	170	267
	입	원	-	-	-	-	-	-	96	182
	외	래	-	-	-	-	-	-	74	85
산 업 재 활 원	합	계	129	389	411	486	451	477	557	494
	입	원	102	246	271	339	295	343	401	361
	외	래	27	143	140	147	156	134	156	133
동 해 병 원	합	계	0	0	0	0	292	298	354	357
	입	원	-	-	-	-	274	276	323	322
	외	래	-	-	-	-	18	22	31	35
정 선 병 원	합	계	0	0	0	0	0	0	0	0
	입	원	-	-	-	-	-	-	-	-
	외	래	-	-	-	-	-	-	-	-
경 기 요 양 병 원	합	계	0	0	0	0	0	0	93	124
	입	원	-	-	-	-	-	-	93	124
	외	래	-	-	-	-	-	-	-	-

[illegible]

(단위: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합 계	5,940	5,791	5,838	6,044	5,784	5,706	5,662	5,659	6,321	6,405
	입 원	3,228	3,180	3,227	3,323	3,255	3,205	3,148	3,124	3,177	3,184
	외 래	2,712	2,611	2,611	2,721	2,529	2,501	2,514	2,535	3,144	3,221
인 중 병	합 계	1,132	1,245	1,231	1,304	1,308	1,302	1,224	1,226	1,383	1,265
	입 원	669	688	655	648	617	601	543	562	599	515
	외 래	463	557	576	656	691	701	681	664	784	750
태 중 병	합 계	812	794	841	793	734	726	765	756	813	839
	입 원	526	513	546	555	527	521	539	522	510	535
	외 래	286	281	295	238	207	205	226	234	303	304
창 병	합 계	992	983	1,004	1,058	956	904	945	915	987	969
	입 원	383	390	400	407	340	335	350	330	315	329
	외 래	609	593	604	651	616	569	595	585	672	640
대 중 병	합 계	832	752	855	872	802	781	787	738	832	827
	입 원	347	323	373	412	422	405	404	380	398	403
	외 래	485	429	482	460	380	376	383	358	434	424
안 중 병	합 계	687	627	599	617	532	511	520	544	623	695
	입 원	283	274	253	286	275	268	295	312	323	358
	외 래	404	353	346	331	257	243	225	232	300	337
순 병	합 계	625	505	419	515	550	548	504	575	745	780
	입 원	281	223	225	244	275	270	242	265	293	291
	외 래	344	282	194	271	275	278	262	310	452	489
산 재	합 계	-	-	-	-	-	-	-	-	-	-
	입 원	-	-	-	-	-	-	-	-	-	-
	외 래	-	-	-	-	-	-	-	-	-	-
동 병	합 계	388	399	408	402	414	433	411	403	436	561
	입 원	335	341	341	339	358	363	338	329	326	382
	외 래	53	58	67	63	56	70	73	74	110	179
정 병	합 계	301	312	315	318	315	320	325	332	326	291
	입 원	236	256	268	268	268	263	257	255	239	197
	외 래	65	56	47	50	47	57	68	77	87	94
경 요 병	합 계	171	174	166	165	173	181	181	170	176	178
	입 원	168	172	166	164	173	179	180	169	174	174
	외 래	3	2	-	1	-	2	1	1	2	4

*97. 1. 1부로 장성병원이 태백중앙병원으로 변경

2. 진폐정밀진단 실시 현황(실인원)

(단위: 명)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2,151	1,932	1,850	1,886	2,304	1,941	2,367	2,569	2,789	3,292	3,703	3,941	3,788	4,274	5,404	5,766	6,059
태백중앙병원	716	558	560	620	794	690	1,070	1,125	1,226	1,348	1,264	1,424	1,562	1,527	1,983	2,160	2,340
안산중앙병원	-	-	-	-	-	-	-	-	-	-	-	-	439	686	602	753	1,137
순 천 병 원	147	52	59	56	44	75	76	51	181	391	333	524	207	182	184	204	212
동 해 병 원	580	627	648	632	706	421	452	720	716	807	1,008	1,152	806	961	1,309	915	1,284
정 선 병 원	708	695	583	578	760	755	769	673	666	746	1,038	841	774	918	1,326	1,734	1,086

* '02.05.18. 안산중앙병원 진폐정밀진단기관 지정

3. 진폐진료 현황(입원환자)

(단위: 연명, 명)

구 분	합 계	태백중앙 병 원	안산중앙 병 원	장 성 규폐센터	순천병원	산 재 업 활 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82	75,637	-	-	28,015	-	47,622	-	-
'83	118,304	-	-	28,117	-	23,231	66,956	-
'84	143,602	-	-	26,940	-	17,561	99,101	-
'85	139,368	10,46	-	26,881	-	-	111,441	-
'86	150,701	28,794	-	-	-	-	121,907	-
'87	186,193	37,185	-	-	28,971	-	120,037	-
'88	188,425	41,272	-	-	22,481	-	123,155	1,517
'89	239,703	62,118	-	-	18,430	-	111,732	47,423
'90	289,315	71,410	-	-	18,775	-	103,432	95,698
'91	257,919	70,184	-	-	19,301	-	95,698	72,736
'92	264,963	74,667	-	-	18,204	-	102,160	69,932
'93	249,063	72,484	-	-	16,066	-	97,808	62,705
'94	254,430	78,031	-	-	15,784	-	94,403	66,212
'95	263,428	92,773	-	-	13,444	-	94,374	62,837
'96	810	288	-	-	37	-	288	197
'97	878	310	-	-	33	-	321	214
'98	918	320	-	-	33	-	327	238
'99	968	332	-	-	68	-	322	246
'00	1,010	358	-	-	84	-	321	247
'01	1,067	363	16	-	96	-	338	254
'02	1,147	383	63	-	101	-	352	248
'03	1,304	443	153	-	83	-	376	249
'04	1,251	430	143	-	81	-	340	257
'05	1,164	396	147	-	80	-	312	229
'06	1,768	528	515	-	117	-	355	253

* '95년 이전 단위 : 연명, '96년부터 단위 : 명으로 변경

4. 요양기간별 환자현황

('06.12.31.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6월미만	1년까지	3년까지	5년까지	5년이상
합 계	합	계	3,695	223	260	683	518	2,011
	입원	원	2,138	138	157	450	359	1,034
	외래	래	1,557	85	103	233	159	977
인 천 중 앙 병 원	소	계	1,059	41	33	177	149	659
	입원	원	380	35	24	104	75	142
	외래	래	679	6	9	73	74	517
태 백 중 앙 병 원	소	계	562	43	56	109	88	266
	입원	원	424	29	34	79	70	212
	외래	래	138	14	22	30	18	54
창 원 병 원	소	계	360	43	37	51	36	193
	입원	원	103	14	10	18	17	44
	외래	래	257	29	27	33	19	149
대 전 중 앙 병 원	소	계	397	33	29	68	47	220
	입원	원	200	18	18	46	33	85
	외래	래	197	15	11	22	14	135
안 산 중 앙 병 원	소	계	431	36	59	126	60	150
	입원	원	286	22	36	81	45	102
	외래	래	145	14	23	45	15	48
순 천 병 원	소	계	152	16	10	42	20	64
	입원	원	113	10	3	27	18	55
	외래	래	39	6	7	15	2	9
동 해 병 원	소	계	370	11	26	59	59	215
	입원	원	320	10	24	54	51	181
	외래	래	50	1	2	5	8	34
정 선 병 원	소	계	172	0	5	24	33	110
	입원	원	137	-	4	16	27	90
	외래	래	35	-	1	8	6	20
경 기 요 양	소	계	192	0	5	27	26	134
	입원	원	175	-	4	25	23	123
	외래	래	17	-	1	2	3	11

(’06.12.31.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6월미만	1년까지	3년까지	5년까지	5년이상
합 계	합	계	3,958	314	246	809	677	1,912
	입	원	2,383	208	151	576	438	1,010
	외	래	1,575	106	95	233	239	902
인 천 중 앙 병 원	소	계	1,194	57	64	210	183	680
	입	원	473	40	44	153	85	151
	외	래	721	17	20	57	98	529
태 백 중 앙 병 원	소	계	549	59	35	131	88	236
	입	원	434	46	23	106	65	194
	외	래	115	13	12	25	23	42
창 원 병 원	소	계	507	69	44	116	83	195
	입	원	164	44	16	34	23	47
	외	래	343	25	28	82	60	148
대 전 중 앙 병 원	소	계	352	34	15	72	55	176
	입	원	185	23	8	46	36	72
	외	래	167	11	7	26	19	104
안 산 중 앙 병 원	소	계	395	45	44	98	70	138
	입	원	294	27	28	77	55	107
	외	래	101	18	16	21	15	31
순 천 병 원	소	계	173	27	18	35	39	54
	입	원	128	16	10	27	31	44
	외	래	45	11	8	8	8	10
동 해 병 원	소	계	356	10	13	64	81	188
	입	원	301	6	10	55	71	159
	외	래	55	4	3	9	10	29
정 선 병 원	소	계	248	12	11	51	52	122
	입	원	226	5	10	48	47	116
	외	래	22	7	1	3	5	6
경 기 요 양	소	계	184	1	2	32	26	123
	입	원	178	1	2	30	25	120
	외	래	6	-	-	2	1	3

제7-4표 병원별 연도별 근로자 건강

1. 근로자건강진단

구 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합계	합 계	52,671	69,946	119,328	136,407	140,718	157,028	159,487	190,570	204,723	238,852	302,117	238,246
	일반검진	23,36	35,311	56,509	54,861	51,979	60,150	51,517	69,586	70,442	90,025	154,502	88,751
	특수검진	18,924	25,568	51,762	63,092	74,832	70,004	87,603	102,248	115,826	128,637	124,068	126,517
	신체검사	9,911	9,067	11,057	18,454	13,907	20,874	20,367	18,736	18,455	20,190	23,547	22,978
인천 중앙 병원	소 계	6,036	12,862	33,727	41,836	39,686	43,078	37,021	37,933	38,832	46,937	61,176	45,567
	일반검진	3,530	9,378	15,763	16,747	10,958	12,396	8,640	7,335	6,020	7,619	20,398	9,345
	특수검진	2,115	2,556	16,069	19,893	24,969	26,828	23,585	26,618	29,824	36,569	38,198	33,411
	신체검사	390	928	1,440	5,196	3,759	3,854	4,796	3,980	2,988	2,749	2,580	2,811
태백 중앙 병원	소 계	26,707	31,323	43,437	44,194	49,409	37,193	44,941	45,904	43,044	40,078	52,935	42,540
	일반검진	7,339	7,904	19,706	19,318	21,627	8,479	7,144	7,097	4,147	8,766	23,636	10,169
	특수검진	14,325	18,201	18,252	18,235	21,839	21,030	32,614	33,624	31,540	25,899	23,572	27,907
	신체검사	5,043	5,218	5,479	6,641	5,943	7,684	5,183	5,183	7,357	5,413	5,727	4,464
창원 병원	소 계	19,929	25,761	36,985	39,660	35,115	41,322	47,478	46,729	55,441	56,126	67,131	43,521
	일반검진	12,967	18,029	17,643	14,387	9,931	13,618	14,309	15,733	22,841	18,457	37,613	13,104
	특수검진	2,484	4,811	15,236	20,547	21,943	21,490	22,167	25,031	29,531	30,683	22,587	24,861
	신체검사	4,478	2,291	4,106	4,726	3,241	6,214	6,002	5,965	3,069	6,985	6,931	5,556
대전 중앙 병원	소 계	-	-	-	-	-	-	-	-	-	-	945	6,637
	일반검진	-	-	-	-	-	-	-	-	-	-	542	5,259
	특수검진	-	-	-	-	-	-	-	-	-	-	-	-
	신체검사	-	-	-	-	-	-	-	-	-	-	403	1,378
안산 중앙 병원	소 계	-	-	-	-	-	4,644	9,892	22,212	36,285	53,225	62,134	44,090
	일반검진	-	-	-	-	-	3,520	7,273	14,678	21,275	32,375	41,915	20,100
	특수검진	-	-	-	-	-	841	1,961	6,673	13,632	18,657	16,662	20,553
	신체검사	-	-	-	-	-	294	658	861	1,378	2,293	3,577	3,437
순천 병원	소 계	-	-	-	-	5,503	16,782	14,705	24,064	19,660	27,395	39,992	39,071
	일반검진	-	-	-	-	4,961	15,049	10,377	18,319	11,981	15,448	21,270	21,712
	특수검진	-	-	-	-	67	713	1,945	3,812	5,874	10,117	15,200	13,885
	신체검사	-	-	-	-	475	1,020	2,383	1,933	1,805	1,830	3,522	3,474
동해 병원	소 계	-	-	5,634	10,171	11,055	13,998	10,450	13,728	11,461	14,992	17,804	16,820
	일반검진	-	-	3,397	4,409	4,502	7,088	3,774	6,424	4,178	7,360	9,128	9,062
	특수검진	-	-	2,205	4,417	6,014	5,102	5,331	6,490	5,425	6,712	7,849	5,900
	신체검사	-	-	32	1,891	489	1,808	1,345	814	1,858	920	827	1,858
정선 병원	소 계	-	-	-	-	-	-	-	-	-	-	-	-
	일반검진	-	-	-	-	-	-	-	-	-	-	-	-
	특수검진	-	-	-	-	-	-	-	-	-	-	-	-
	신체검사	-	-	-	-	-	-	-	-	-	-	-	-

*95년부터는 일반검진에 종합검진실적 포함된 자료임.

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단위: 연명)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221,518	235,526	230,715	270,914	274,643	306,184	268,916	269,672	243,613	238,146	281,766	288,308	297,733	347,379
83,536	92,170	94,770	135,357	130,414	174,096	152,730	169,351	161,229	143,461	174,731	168,124	180,993	225,156
110,643	115,185	105,205	101,794	114,670	103,743	85,485	70,702	56,429	64,672	65,490	72,152	70,184	80,024
27,339	28,171	30,740	33,763	29,559	28,345	30,701	29,619	25,955	30,013	41,545	48,032	46,556	42,199
31,526	27,198	29,861	33,739	35,683	32,894	32,886	37,097	31,135	28,246	34,442	34,875	32,612	36,800
8,357	7,115	7,941	18,198	18,939	19,614	17,299	24,364	21,850	20,405	23,079	19,614	19,512	26,229
20,108	16,812	18,811	11,658	13,094	9,325	9,793	8,427	7,196	5,542	5,853	7,740	7,977	6,756
3,061	3,271	3,109	3,883	3,651	3,955	5,794	4,306	2,089	2,299	5,510	7,521	5,123	3,815
38,925	35,680	29,616	42,960	41,165	41,468	35,049	31,488	35,019	35,913	28,808	28,637	33,199	33,394
6,659	9,047	10,614	20,077	27,276	22,865	19,946	18,243	19,247	20,484	15,528	16,121	20,978	21,660
24,671	23,257	15,026	18,474	17,928	15,913	13,052	11,005	13,553	12,234	10,015	6,983	7,036	6,323
7,595	3,376	3,976	4,409	1,961	2,690	2,051	2,240	2,219	3,195	3,265	5,533	5,185	5,411
48,95	41,896	55,918	52,128	47,150	65,507	55,677	49,728	36,585	41,590	49,788	51,329	52,250	89,072
15,708	12,142	21,569	18,081	10,516	28,450	24,336	26,174	19,346	22,365	27,221	25,832	26,544	41,753
26,312	21,357	10,353	23,087	26,761	32,147	26,168	18,139	11,643	13,319	16,837	18,536	18,149	32,726
6,075	8,397	23,996	10,960	9,873	4,910	5,173	5,415	5,596	5,906	5,730	6,961	7,557	14,593
14,624	19,743	21,538	21,862	21,304	22,442	23,054	30,949	31,643	32,940	41,691	42,575	44,394	57,347
10,429	12,709	12,860	13,078	12,234	13,831	14,279	19,522	19,798	22,887	24,574	24,287	28,371	42,545
2,030	2,543	2,945	4,459	4,214	4,923	5,641	5,302	4,508	4,225	4,904	6,170	6,522	7,076
2,183	4,491	5,733	4,325	4,856	3,688	3,134	6,125	7,337	5,828	12,213	12,118	9,501	7,726
39,459	49,758	50,054	59,079	55,940	51,571	49,242	44,401	36,085	36,758	38,296	39,231	40,083	44,179
19,881	23,068	23,861	26,541	24,719	31,354	34,245	31,076	26,515	22,968	25,080	23,943	24,279	32,974
16,300	23,637	23,237	28,929	28,096	18,056	12,486	9,906	6,426	7,966	6,635	7,102	6,012	6,968
3,278	3,053	2,956	3,609	3,125	2,161	2,511	3,419	3,144	5,824	6,581	8,186	9,792	4,237
32,531	41,496	24,495	39,046	50,938	47,899	28,844	30,173	31,433	34,623	57,341	55,156	54,791	52,425
13,400	16,459	6,635	25,526	28,878	29,357	15,458	14,467	19,532	18,249	39,735	37,806	35,940	35,224
15,122	20,070	14,931	7,990	16,612	15,919	9,445	9,335	7,220	11,270	13,361	13,487	14,832	13,821
4,009	4,967	2,929	5,530	5,448	2,623	3,941	6,371	4,681	5,104	4,245	3,863	4,019	3,380
16,820	19,755	19,223	22,100	20,894	35,938	36,547	38,495	34,757	24,905	26,294	32,106	34,117	29,222
9,062	11,630	11,290	13,856	12,284	27,455	26,257	28,271	28,177	13,288	16,770	17,718	20,719	22,036
5,900	7,509	6,259	7,197	7,965	7,460	8,900	8,588	5,883	10,116	7,885	12,134	9,656	6,354
1,858	616	1,684	1,047	645	1,023	1,390	1,636	697	1,501	1,639	2,254	2,959	832
-	-	-	-	1,569	8,465	7,617	7,341	6,956	3,171	5,106	4,399	7,070	4,940
-	-	-	-	1,569	1,170	910	7,234	6,764	2,815	2,744	2,803	4,650	2,735
-	-	-	-	-	-	-	-	-	-	-	-	-	-
-	-	-	-	-	7,295	6,707	107	192	356	2,362	1,596	2,420	2,205

2. 작업환경 측정

(단위: 개소)

구 분	계	인 중 병	천 양 원	태 중 병	백 양 원	창 원 병 원	대 중 전 양 원	안 산 중 양 원	순 천 병 원	동 해 병 원
'81	86	33		16		37	-	-	-	-
'82	58	31		5		22	-	-	-	-
'83	348	173		20		155	-	-	-	-
'84	448	194		32		217	-	-	-	5
'85	304	180		34		70	-	-	-	20
'86	395	201		-		120	-	6	10	58
'87	511	162		-		103	-	130	55	61
'88	990	270		-		233	-	335	86	66
'89	1,616	372		40		398	-	649	123	34
'90	2,309	457		95		474	-	1,067	173	43
'91	3,173	679		125		549	-	1,280	401	139
'92	3,195	907		86		565	-	1,084	394	159
'93	3,547	630		-		572	236	1,372	464	273
'94	3,712	665		-		715	321	1,252	506	253
'95	3,763	814		-		660	331	1,209	499	250
'96	3,990	895		-		555	343	1,415	523	259
'97	3,992	1,064		-		593	342	1,141	592	260
'98	3,517	930		-		487	322	968	542	268
'99	3,691	971		-		472	378	1,006	551	313
'00	3,838	1,030		-		495	433	943	601	336
'01	3,849	1,089		-		460	370	954	562	414
'02	4,072	1,021		-		543	412	1,050	570	476
'03	4,062	1,023		-		505	375	988	590	581
'04	4,228	988		-		580	443	1,098	478	641
'05	3,798	978		-		549	522	719	450	580
'06	3,642	906		-		553	490	727	485	481

제 7-5표 연도별 기관별 직업재활훈련사업 현황

1. 치료중 재활적응훈련사업

인천중앙병원

(단위: 명)

구 분	합 계	가 구	목 각	시계수리	봉 제	원 예	인 장	사진인화	R/TV수리	전기용접	인쇄
'79	843	78	67	84	74	114	126	109	95	96	-
'80	932	76	106	88	80	127	113	110	116	84	32
'81	868	69	83	78	73	150	95	91	86	81	62
'82	860	71	94	74	79	142	79	80	81	77	62
'83	818	68	78	67	54	145	79	74-	97	71	60
'84	699	-	-	81	77	121	89	-	103	-	56
'85	688	-	-	52	18	137	78	-	100	-	14
'86	711	-	-	65	-	124	67	-	121	-	-
'87	708	-	-	62	-	127	68	-	127	-	-
'88	666	-	-	57	-	120	69	-	117	-	-
'89	428	-	-	62	-	61	62	-	63	-	-
'90	429	-	-	60	-	61	62	-	63	-	-
'91	426	-	-	71	-	73	80	-	24	-	-
'92	403	-	-	68	-	88	82	-	-	-	-
'93	415	-	-	67	-	83	81	-	-	-	-
'94	444	-	-	62	-	66	72	-	-	-	-
'95	448	-	-	60	-	61	70	-	-	-	-
'96	448	-	-	62	-	65	77	-	-	-	-
'97	454	-	-	62	-	64	70	-	-	-	-
'98	458	-	-	24	-	67	77	-	-	-	-
'99	439	-	-	5	-	56	52	-	-	-	-
'00	444	-	-	51	-	68	50	-	-	-	-
'01	553	-	-	50	-	86	59	-	-	-	-
'02	586	-	-	-	-	78	54	-	-	-	-
'03	546	-	-	-	-	71	-	-	-	-	-
'04	591	-	-	-	-	65	-	-	-	-	-
'05	1,544	-	-	-	-	208	-	-	-	-	-
'06	1,322	-	-	-	-	190	-	-	-	-	-

구 분	의지장구	목조형	귀금속공예	표구	전자	서예	미세기기	전통공예	컴퓨터	회화	멀티미디어
'79	-	-	-	-	-	-	-	-	-	-	-
'80	-	-	-	-	-	-	-	-	-	-	-
'81	-	-	-	-	-	-	-	-	-	-	-
'82	21	-	-	-	-	-	-	-	-	-	-
'83	25	-	-	-	-	-	-	-	-	-	-
'84	43	129	-	-	-	-	-	-	-	-	-
'85	4	129	74	82	-	-	-	-	-	-	-
'86	-	133	75	126	-	-	-	-	-	-	-
'87	-	127	77	120	-	-	-	-	-	-	-
'88	-	126	68	109	-	-	-	-	-	-	-
'89	-	61	61	60	-	-	-	-	-	-	-
'90	-	63	60	60	-	-	-	-	-	-	-
'91	-	74	33	71	-	-	-	-	-	-	-
'92	-	85	80	-	-	-	-	-	-	-	-
'93	-	90	10	73	11	-	-	-	-	-	-
'94	-	64	63	62	55	-	-	-	-	-	-
'95	-	59	62	61	75	-	-	-	-	-	-
'96	-	56	67	61	60	-	-	-	-	-	-
'97	-	45	64	62	87	-	-	-	-	-	-
'98	-	80	55	74	81	-	-	-	-	-	-
'99	-	100	33	75	118	-	-	-	-	-	-
'00	-	85	63	65	62	-	-	-	-	-	-
'01	-	100	58	77	104	19	-	-	-	-	-
'02	-	107	73	82	130	-	62	-	-	-	-
'03	-	93	61	-	-	-	-	65	174	35	47
'04	-	95	50	-	-	-	-	74	153	85	69
'05	-	228	182	-	-	-	-	205	329	209	183
'06	-	195	161	-	-	-	-	204	211	182	179

* '96.2. 13부로 산업재활원이 중앙병원에 흡수 통합

* '02년부터 『재활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 특수재활요법과정으로 운영(공과 ⇒ 교실)

2. 치료종결후 재활훈련사업

가. 안산재활훈련원

(단위 : 명, 원)

연 도	구 분	계	인 쇄 공 과		봉 제 공 과	
'88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66 161,424	31 160,398		35 162,449	
'89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67 205,349	39 205,160		28 205,538	
'90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72 210,000	33 210,000		39 210,000	
'91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70 203,670	38 192,410		32 214,930	
'92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85 195,585	40 199,032		45 192,032	
'93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72 248,480	36 250,980		36 245,980	
'94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47 248,100	21 250,600		26 245,600	
'95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24 185,221	12 202,566		12 167,876	
'96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22 141,263	11 146,587		11 135,938	
'97	입 소 자 수 1인당 월 평 균 소 득	49 -	25 -		24 -	

연 도	구 분	계	인쇄매체 공 과	의 상 디자인공과	광 고 디자인공과	금 속 공예공과
'98	월평균 훈련인원	80	21	32	17	10
'99	"	89	27	22	29	11
'00	"	121	32	33	34	22
'01	"	123	31	36	32	24

연 도	구 분	계	사진공과	전자출판 공 과	의 상 디자인공과	광 고 디자인공과	금 속 공예공과
'02	월평균 훈련인원	119	20	26	26	26	21
'03	월평균 훈련인원	132	29	26	28	24	25
'04	월평균 훈련인원	125	22	27	33	22	20
'05	월평균 훈련인원	141	25	31	31	27	27
'06	월평균 훈련인원	100	19	19	23	21	18

※ '01. 10월부터 인쇄매체과를 인쇄사진과와 전자출판과로 분리·개편, '02. 9월부터 인쇄사진과를 사진과로 개편

나. 광주재활훈련원

(단위 : 명, 원)

연 도	구 분	계	인 쇄 공 과	봉 제 공 과
'94	입 소 자 수	34	17	17
	1인당 월 평 균 소 득	185,888	164,342	207,434
'95	입 소 자 수	19	9	10
	1인당 월 평 균 소 득	151,333	157,091	146,150
'96	입 소 자 수	21	10	11
	1인당 월 평 균 소 득	143,378	141,141	145,616
'97	입 소 자 수	70	35	35
	1인당 월 평 균 소 득	-	-	-

연 도	구 분	계	광 디자 인 공 과	의 디자 인 공 과	산 업 설 비 공 과	정보통신 공 과
'98	월평균 훈련인원	79	38	30	11	
'99	월평균 훈련인원	78	32	24	22	
'00	월평균 훈련인원	94	39	28	27	
'01	월평균 훈련인원	111	29	26	28	28
'02	월평균 훈련인원	109	34	20	23	32
'03	월평균 훈련인원	121	31	30	29	31
'04	월평균 훈련인원	125	33	28	33	31
'05	월평균 훈련인원	117	30	27	34	26
'06	월평균 훈련인원	86	18	23	25	20

※ '97. 3. 1부로 안산·광주재활훈련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관하여 생산납품체제에서 순수직업훈련체제로 전환

※ '00. 11월부터 정보통신공과 개설

제 7-6표 연도별 장학사업 실시현황

1. 연도별 중·고생 장학금 지급대상 현황

구 분	'86	'87	'88 ~ '89	'90	'91 ~
지 급 대 상	사망 1~2급	사망 1~5급	사망 1~3급	사망 1~5급	사망 1~7급

※ '88년도부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포함

2. 연도별 대학학자금 지급대상 현황

구 분	'97 ~ '01	'02 ~
지 급 대 상	사망 1~7급	사망 1~9급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포함

3. 연도별 장학금 지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83~'86	3,300	758	1,373	213	1,918	535	9	10
'87	1,907	554	584	114	1,304	424	19	16
'88	2,160	801	612	214	1,535	574	13	13
'89	2,147	778	548	119	1,586	647	13	12
'90	2,398	907	599	135	1,790	763	9	9
'91	2,858	1,098	860	207	1,991	882	7	9
'92	3,162	1,422	1,126	351	2,032	1,066	4	5
'93	3,940	1,901	1,640	569	2,297	1,327	3	5
'94	4,036	2,099	1,611	582	2,425	1,517	0	0
'95	4,081	2,482	1,552	654	2,529	1,828	0	0
'96	4,165	2,810	1,515	696	2,650	2,114	0	0
'97	4,670	3,444	1,749	800	2,771	2,353	150	291
'98	5,495	4,435	1,784	891	3,175	2,781	536	763
'99	5,750	5,113	1,745	966	3,334	3,199	671	948
'00	5,813	5,790	1,731	998	3,227	3,306	855	1,486
'01	7,075	7,019	2,140	1,219	3,691	3,541	1,244	2,259
'02	6,791	8,133	1,978	1,075	3,448	4,049	1,365	3,009
'03	6,479	8,483	1,558	696	3,424	4,298	1,497	3,489
'04	6,529	8,797	1,394	241	3,571	4,745	1,564	3,811
'05	7,289	9,799	1,770	309	3,736	4,991	1,783	4,499
'06	6,574	10,166	1,086	196	3,815	5,491	1,673	4,479

※ '97년부터 '대학교'는 학자금 대부 실적임

제 7-7표 연도별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현황

1. 연도별 대부대상 현황

구 분	'91 ~ '01	'02
지급대상	사 망 1~7급	사 망 1~9급

※ '89년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14급까지 대부시행

※ '89년도부터 상병보상연금수급자 포함

2. 연도별 대부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담 보		신 용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90 이전	3,348	12,705	1,054	5,842	2,294	6,863
'91	315	2,350	209	2,032	106	318
'92	316	2,400	219	2,109	97	291
'93	427	3,250	312	2,905	115	345
'94	437	3,308	330	2,976	107	332
'95	456	3,501	286	2,702	170	799
'96	599	4,185	282	2,625	317	1,560
'97	875	5,979	362	3,468	513	2,511
'98	748	4,797	252	2,364	496	2,433
'99	751	5,009	280	2,664	471	2,345
'00	812	5,260	278	2,363	534	2,897
'01	987	10,546	652	8,848	335	1,698
'02	1,895	17,655	544	10,927	1,351	6,728
'03	1,309	9,909	195	4,370	1,114	5,539
'04	1,877	9,362	0	0	1,877	9,362
'05	1,917	9,557	0	0	1,917	9,557
'06	1,210	9,986	0	0	1,210	9,986

부 록

I. 산재보험 업종별·규모별 적용확대 현황

업 종 별	연 도 별	규 모 별
광업·제조업	'64. 7. 1	500인 이상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추가	'65. 1. 1	200인 이상
	'66. 1. 1	150인 이상
	'67. 1. 1	• 100인 이상 •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5,000인 이상
건설업, 수도업, 위생시설서비스업, 상업, 통신업, 서비스업 추가	'69. 1. 1	• 50인 이상 •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13,000인 이상
	'69. 7. 14	건설업은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금융, 증권, 보험업 제외	'71. 1. 1	
상업, 서비스업 제외	'72. 7. 1	• 30인 이상 •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8,000인 이상
	'73. 7. 1	• 16인 이상 •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4,200인 이상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76. 1. 1	광업,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제조업은 5인 이상

임업중 별목업 추가	'82. 7. 1	• 10인 이상 •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700인 이상 •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농수산물위탁판매 및 중개업 추가	'83. 8. 6	별목업은 재적량 1,700m ³ 이상
	'86. 9. 1	• 5인 이상(14개 업종) · 베니아판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 ·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제조업 · 수상운수업 · 도금업 · 화물취급업 · 화물자동차운수업 · 중기관리사업 · 향만하역업 · 제재업
	'87. 1. 1	• 5인 이상(20개 업종) · 목제품제조업 · 기계기구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식료품제조업 · 인쇄 또는 제본업 ·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 도자기제조업 · 유리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 금속제조업 · 계량기·광학기계·시계 등의 제조업 ·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 · 목재악기제조업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 기타 제조업 · 자동차여객운수업 · 소형자동차운수업 · 항공운수업 · 창고업
	'88. 1. 1	• 별목업은 재적량 800m³ 이상 • 유기사업은 연간 1,350인 이상 • 5인 이상(16개 업종)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 경인쇄업 · 신문업 또는 출판업 · 화폐 등 제조업 · 전자제품제조업 · 수제품 제조업 · 전기업 · 가스업 · 수도업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통신업 ·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 운수관련서비스업 ·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기타의 각종사업

'91. 7. 1

- 10인 이상
- 기타의 임업
- 해면어업
-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 어류 양식업
- 기타의 어업
- 일반농업
- 기계화 농업
- 기타의 각종사업중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수렵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부동산업

'92. 7. 1

- 5인 이상
- 기타의 임업
- 해면어업
-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 어류 양식업
- 기타의 어업
- 일반농업
- 기계화 농업
- 기타의 각종사업중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수렵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부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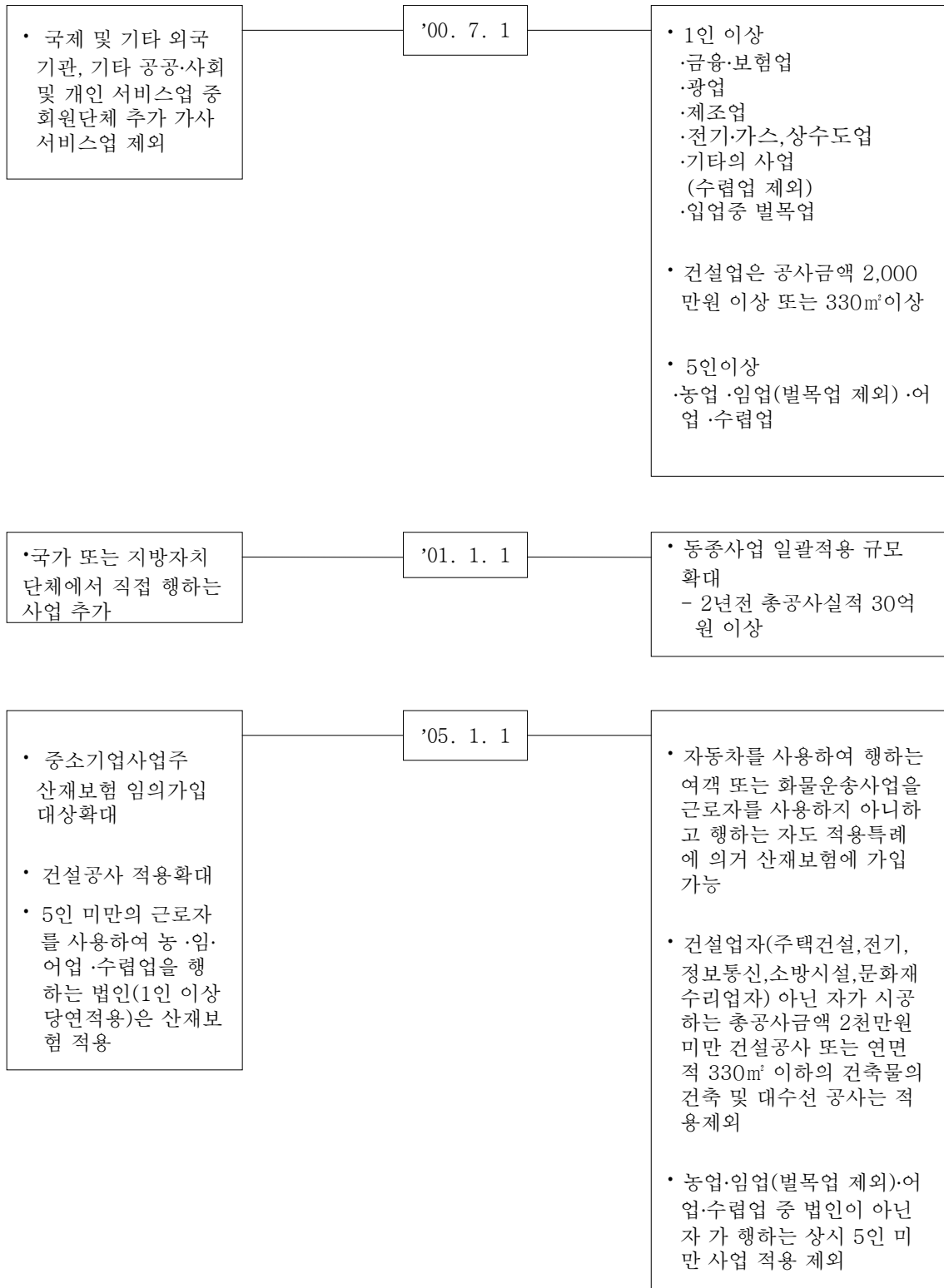
'96. 1. 1

- 5인 이상
- 기타의 각종사업중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연구 및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추가

'98. 7. 1

- 5인 이상



Ⅱ. 산재보험 급여

급 여 별	'64. 7. 1 시행 (법제정 63.11.5)	'71. 1. 1시행 (1차개정 '70.12.31)	'77. 12. 19시행 (4차개정 '77.12.19)
○ 요양급여	업무상재해 지급대상 : 11일이상	지급대상 : 8일이상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60% 지급대상 : 11일이상	지급대상 : 8일이상	
○ 상병보상연금			
○ 장애급여	일시금 최고 : 1급(1,000일분) 최저 : 10급(50일분)	4개 등급추가 최고 : 1급(1,340일분) 최저 : 14급(50일분) 연금제 도입 대상 : 1~3급	
		장애연금 급여수준	장애연금 급여수준인상
		등급	급 여 수 준
		1급	평균임금의 " 240(65.8%)
		2급	" 213(58.3%)
		3급	" 188(51.5%)
		*일시금 또는 연금은 수급권자 선택	

수준 개선 현황

(단위: 원)

'82. 1. 1시행 (5차개정 '81.12.17)		'83. 1.1시행 (6차개정 '82.12.31)		'89. 4. 1시행 (9차개정 '89. 4. 1)			
지급대상 : 4일이상							
지급대상 : 4일이상				휴업급여 수준인상 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제도 신설 지급대상 : 2년이상 요양자 폐질등급 해당자 상질보상연금수준		상병보상연금 수준인상(5%)			
		등 급	급 여 수 준	등 급	급 여 수 준		
		1 급	평균임금의 313일분	1 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 급	” 277일분	2 급	” 291일분		
		3 급	” 245일분	3 급	” 257일분		
장해연금 급여수준 인상 및 4~7급연금신설				장해일시금 수준인상(10%)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1급	1,474일분	8급	495일분
				2급	1,309일분	9급	385일분
				3급	1,155일분	10급	297일분
				4급	1,012일분	11급	220일분
				5급	869일분	12급	154일분
				6급	737일분	13급	99일분
				7급	616일분	14급	55일분
				장해연금 수준인상(5%)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1급	329일분	5급	193일분
				2급	291일분	5급	193일분
				3급	257일분	6급	164일분
				4급	224일분	7급	138일분
				5급	224일분		
등급	급 여 수 준			등급	급여수준	등급	급여수준
1급	313(85.7%)			1급	329일분	5급	193일분
2급	277(75.9%)			2급	291일분	5급	193일분
3급	245(67.1%)			3급	257일분	6급	164일분
4급	213(58.4%)			4급	224일분	7급	138일분
5급	184(50.4%)			5급	224일분		
6급	156(42.7%)						
7급	131(35.9%)						

급 여 별	'64. 7. 1 시행 (법제정 63.11.5)	'71. 1. 1시행 (1차개정 '70.12.31)	'77. 12. 19시행 (4차개정 '77.12.19)
○ 유족급여	평균임금 1,000일본	유족연금제 도입 유족수별 급여수준 (시행령 8차 개정 '71.11.19)	유족연금 수준인상 (시행령 개정 '78.2.13)
		유족	급 여 수 준
		1인	연소득의 30%
		2인	" 35%
		3인	" 40%
		4인	" 45%
		* 일시금 또는 연금은 수급권 자 선택	
○ 장의비	평균임금 90일본		
○ 일시급여	평균임금의 1,000일본	2년 경과후 평균임금의 1,340	
○ 간병급여			

* 업무상 재해인정

○ 당 초 자. '64. 7. 1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지. '81. 12. 31

(단위: 원)

'82. 1. 1시행 (5차개정 '81.12.17)		'83. 1. 1시행 (6차개정 '82.12.31)	'89. 4. 1시행 (9차개정 '89. 4. 1)	'00. 7. 1시행 (16차개정 '99. 12. 31)
연금 수준인상 (시행령 개정 '82.6.14)			유족급여 일시금 수준인상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의무화,예외적으로 일시금 지급(일시금50% , 연금50%)
유족	급 여 수 준			
1인	연소득의 52%			
2인	" 57%			
3인	" 62%			
4인	" 67%			
			장의비 수준인상 평균임금의 120일분	
		폐 지		
				간병급여신설 지급대상 : 치료종결후 수시·상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자

○범위확대 자. '82. 1. 1

지. 현 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개 정 1999. 2. 8. 법률 제5881호
 1999.12.31. 법률 제6100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
 2003.12.31. 법률 제7049호
 2004. 1.29. 법률 제7155호
 2005.12.29. 법률 제7796호
 2007. 4.11. 법률 제8373호
 2007. 5.17. 법률 제84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

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물·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③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0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그 직원은 그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업무의 지도·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①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제68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이입(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나 그 밖에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32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의료 사업 및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민법」의 준용) 공단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37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그 밖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제38(재요양) ①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제40조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받은 자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47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0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⑥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제42조(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급여는 별표 2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면 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애에 향하여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45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경우(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46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제40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47조(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8조(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49조(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38조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0조의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1조(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3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제52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53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54조(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신체 장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57조(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6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이를 제56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58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60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6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장 근로복지사업

제62조(근로복지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제6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③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예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7.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예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 ⑤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운용계획)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

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차입금) ①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1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2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73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72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73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7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제7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③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⑥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
 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73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제77조(심사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43조제1항 또는 제53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
 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
 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제72조 및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79조(시효) ①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말미암아 중단된다.

제81조(보고 등)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수급권자가 사망하면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사업주의 조력)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검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4조(보고와 검사)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담당 의사 등에게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는 제8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5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 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87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54조와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8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0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벌칙

제91조(과태료) ①제3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2항(제7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1조제1항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제81조제1항 또는 제84조에 따른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4826호, 1994.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이 법의 시행일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의 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에 포괄승계된다.

제7조(처분 및 심사청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1995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 장관과 협의하여 199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설립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

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 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영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영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원처분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집행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지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고지)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근로복지공사법 또는

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398호, 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부 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 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

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연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5881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 칙 <제6100호, 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

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 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자원”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⑨생략

⑩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동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본다.

제6조 생략

부 칙 <제7049호, 2003.12.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155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796호, 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내지 <68>생략

부 칙 <제8373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급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6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제42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勞動者の雇傭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

협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條”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별표 1] <개정 1999.12.31>

장 해 급 여 표 (제42조제2항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329일분	1,474일분
제 2급	291일분	1,309일분
제 3급	257일분	1,155일분
제 4급	224일분	1,012일분
제 5급	193일분	869일분
제 6급	164일분	737일분
제 7급	138일분	616일분
제 8급		495일분
제 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별표 2] <신설 1999.12.31>

유족급여 (제43조제2항관련)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 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별표 3] <개정 1999.12.31>

상 병 보 상 연 금 표 (제44조제2항관련)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 1 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 2 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 3 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비고> : 제41조제3항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IV.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3.12.31. 법률 제7047호
개정 2004.12.31. 법률 제7300호
개정 2005.12. 7. 법률 제7706호
개정 2006.12.28. 법률 제8117호
개정 2007. 4.11. 법률 제83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2.28>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기준임금) ①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①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06.12.28]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5.11>

②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4.11>

③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0조 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5.11 >

④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개정200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신설 2006.12.28>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 제5항(제6조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료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④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③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⑤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

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2006.12.28>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감의 신청절차 및 경감여부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4.11>

②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총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총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②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채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채납처분비가 2 이상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채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신설 2006.12.28>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채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채납처분비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3조의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동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채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4.11>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

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개정 2006.12.28>

1.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이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통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상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및 분할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제28조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의 규정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이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①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 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 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30조(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산재보험 관련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 그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의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 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1조(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제42조(시효의 중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4조(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조사) ①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46조(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 제4항·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②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

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4.11>

②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7.5.11>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7]

제6장 과태료

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7047호,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의2,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 및 第9條”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 및 第98條”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300호, 2004.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7706호, 2005.12.7>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
- ③(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8117호, 2006.12.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외국의 사업주가 원수급인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의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징수특례사업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 제5조(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 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부 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73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8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산 재 보 험 사 업 연 보

2007년 10월 일 인쇄

2007년 10월 일 발행

발 행 : 노 동 부

편 집 : 고용정책본부 산재보험혁신팀

인 쇄 : 문중인쇄(주)

☎ 02)503-7764~5
